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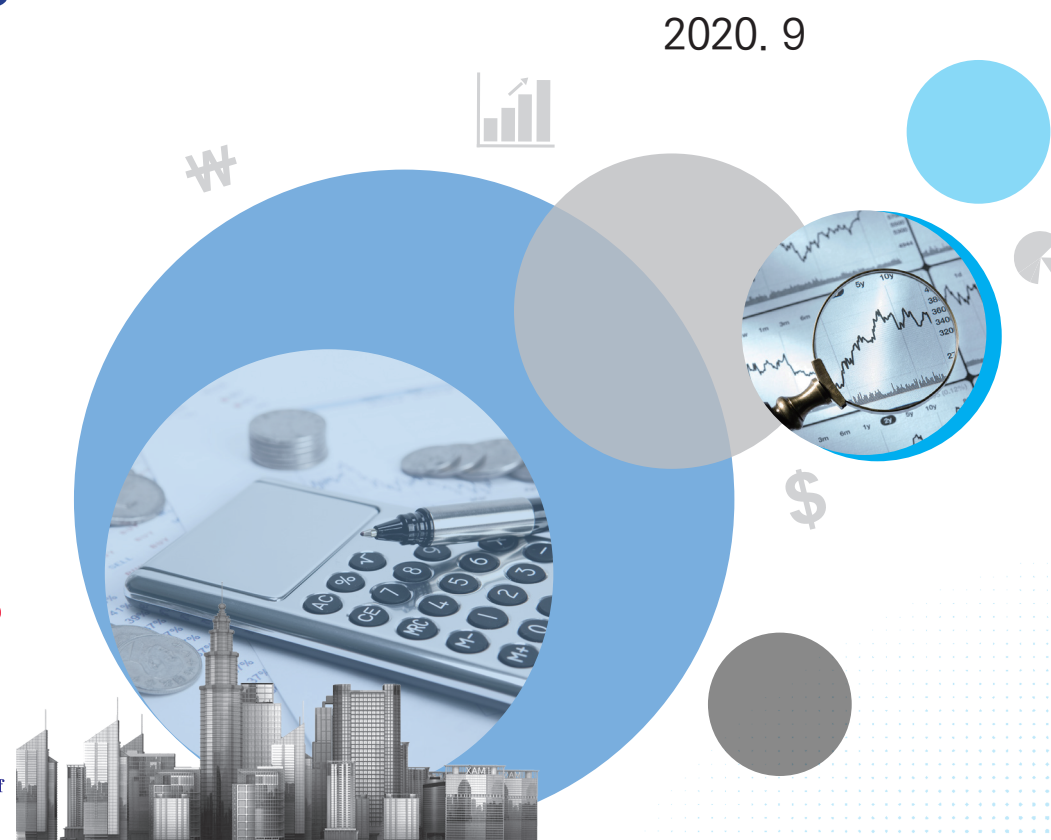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0.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0.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공동연구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수집 및 정리: 서주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종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 요 약

- **(배경)**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사 주식이나 지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임
  - 근로자는 자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을 통해 재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업은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로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함에 따라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며, 근로자의 보유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본소유의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동 제도는 1960년대 말부터 시행되던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법률들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계승하여 2001년에 새롭게 출범한 우리사주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종업원 지주제도를 시행하던 시기에도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있었으나, 현재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의 기본 틀은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함께 정비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제8항)
  -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2항)
  - 우리사주 배정 시 소득세 비과세(제3항, 제4항)
  - 우리사주 조합원의 인출금에 대하여 조건부 비과세(제5항, 제6항)
  - 우리사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9항)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13항)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14항)
- 동 조항의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556억원, 2019년 648억원(전망), 2020년 682억원(전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몰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현황)** 우리사주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은 총 3,184개, 조합원은 약 138만명 정도임
  - 2018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은 약 684개로 전체 법인(3,184개) 중 약 2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96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약 6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은 약 952개로 전체 법인 중 약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13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기타(비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은 약 1,548개로 전체 법인 중 약 4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원 수는 약 28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0.4% 정도임
  - 조합 수는 기타(비상장)법인이 가장 많고, 조합원 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이 가장 많음
-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 수는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감소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2,826개였던 우리사주조합 수가 2013년 3,043개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에는 2,706개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하였음
  -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수는 3,184개로 전년 대비 4.1%, 2010년 대비 12.7% 증가함
  - 2018년에는 기업들의 IPO 활성화에 따라 상장법인 조합 수가 증가하였고, 기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수를 살펴보면 조합 수와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감소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기준, 우리사주조합원 수는 119만 505명에서 2013년 127만 5,923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125만 6,879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음
  - 2014년 이후 우리사주조합원 수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137만 7,164명으로 전년 대비 1.4%, 2010년 대비 15.7% 증가함
  - 우리사주조합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전체 조합원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타당성 분석)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우리사주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가 최근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활성화의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근거함
  - 우리사주 지분율을 보면 EU 회원국(32개국)의 2018년 말 기준 지분율이 3.0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13%로 1.9%p 낮은 수준임
  
-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급여소득 8천만원 이하 계층에 약 38%, 그 초과 계층에 약 62%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8천만원 이하 계층은 약 26%, 초과 계층은 약 74%로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2013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가, 2014~2016년에는 다소 완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으로의 혜택 집중이 뚜렷한 경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는 있음
  -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급여 구간별 귀착효과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급여소득 8천만원 이하 계층이 약 24%, 그 초과 계층이 약 76%이던 것이 2018년 기준으로는 각각 약 22%와 약 78%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급여 구간별 귀착효과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급여 구간별 귀착효과를 분석한 결과, 8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 계층의 혜택 비중이 그 이하 계층의 혜택 비중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세제지원의 경우에는 고소득 계층의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옴
  -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계층별 혜택의 차이가 조세 지원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우리사주조합원제도는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미국, 영국 등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도입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나라마다 지원제도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주식의 현금 대비 위험도, 의무예탁기간 등을 감안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세제 혜택이 없다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유인은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음
- 세제 측면에서 다른 중복 지원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과세특례가 없다면 우리사주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함
- 우리사주조합원제도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유지하는 한, 동 세제 지원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 기업생태계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은 전체 대비 소수에 그치고 있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생태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전체 기업의 수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도 10~20만개에 달하지만, 연간 10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사주조합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기업은 대분류 기준 제조업, 소분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등 2010년대 기준 우량 또는 성장산업 분야에 다수 포진한 것이 확인됨
- 우리사주조합 지원 취지인 종업원의 인센티브 부여 측면에서 일관적이며 긍정적인 산업분포로 볼 수 있음

- 효과성 평가 결과, 최종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투자와 고용 등 중간 산출지표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는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이 더 잘 확인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유의한 정량적 효과는 거의 확인되지 않음
  - 중·단기 수익성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지만,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 생산성이 낮은 것은 해당 시기 우리 경제 공통의 문제로서, 본 제도의 문제만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효과성 검증에서 우리사주조합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더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오므로, 활성화 목표가 일정 수준 달성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제도 운영 결과 평가) 우리사주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를 택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나라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자본조달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할 것인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음
  - 따라서 세계 지원도 주된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사주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세계 지원의 타당성도 인정됨
  - 특히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유지하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이외에 세계 측면에서 다른 중복 지원도 없기 때문에 동 세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유한 기업-산업-일자리 생태계 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들이 유사한 비설립기업에

- 비해 총자산과 고용, 수익성 면에서 거둔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효과성 검증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최종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과를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투자와 고용 등 중간 산출지표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사주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 노사관계의 개선, 직원의 근속 기여도 측면에서 각각 59%, 64%, 69%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 근로자들은 재산 형성 증진, 주인의식 제고, 이직률 저하, 생산성 향상 등의 항목에서 각각 70%, 77%, 60%, 64%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 **결론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인 효용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세계 지원 이외에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여타 지원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평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타당성·효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를 얻음
- **(중기적 정책 제언)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동 특례제도의 폐지나 일몰제도 신설 등을 제안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인 효용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의 정도가 떨어지는 만큼 당분간 동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우리나라는 우리사주의 출연, 취득, 보유, 인출, 배당, 기부, 양도 등 각 단계별로 세계 지원을 하고 있어,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계 지원이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세계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하되, 지분을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재점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효과성 검증에서 우리사주조합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더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오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각 단계별 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분리하여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부 지원의 지속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영국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현금 배당 중 우리사주 추가 매입에 사용된 배당에 한하여 비과세하며,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은 배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한도액을 2006년 5천만원에서 2008년 3천만원으로 축소하였으며, 2010년 1,800만원으로 다시 축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경우, 비과세 한도액의 기준이 액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인별 한도액의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금융세제 일원화 방안의 일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목 차

I. 서론 .....	17
II. 우리사주조합 조세지원 운영 현황 .....	21
1. 우리사주제도 .....	23
가. 도입 목적 .....	23
나. 제도 연혁 .....	24
다. 제도 현황 .....	26
라. 최근 개정 내용 .....	35
마. 제도 효과 .....	39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40
가. 제도 연혁 .....	40
나. 제도 내용 .....	42
다. 조세지출 규모 현황 .....	47
III. 타당성 평가 .....	49
1. 선행연구 .....	51
2. 주요국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 .....	54
3. 우리사주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 .....	60
4. 세제 지원 혜택의 귀착 .....	64
가.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 .....	64
나.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67
다. 우리사주 기부금 추이 .....	70
5. 타당성 평가 요약 .....	71

<b>IV. 효과성 평가</b> .....	<b>73</b>
1. 효과성 평가 개요 .....	75
2. DB 구축 및 기초 통계 .....	75
가. 기업생태계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 결합 .....	75
나.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의 산업별 분포 .....	76
다.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의 기초 통계(전체 및 기업 규모별) .....	82
3. 효과성 정량 평가 .....	84
가. 평가방법론 .....	84
나. 투자평가: 총자산 증분 .....	85
다. 고용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분 .....	87
라. 수익성 평가: 영업이익, 총자산영업이익률, 인당영업이익 .....	89
4. 효과성 평가 요약 .....	95
<b>V. 설문조사</b> .....	<b>97</b>
1. 기업(경영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99
가. 우리사주조합제도 운영 중인 기업(Base: n=127) .....	99
나. 우리사주조합제도 폐지 또는 중단 중인 기업(Base: n=35) .....	109
다. 우리사주조합제도 미설립기업(Base: n=51) .....	111
2.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13
가. 우리사주 취득 현황 .....	113
나.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용 인지도(Base: n=327) .....	115
다.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Base: n=323) .....	116
라.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 달성의 효과성(Base: n=323) .....	118
마. 근로자의 과세특례제도 인지도 및 기여도 .....	119
3.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30
가.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Base: n=142) .....	130
나.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Base: n=287) .....	132

VI. 결론 .....	137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139
2. 중기적 정책 제안 .....	140
참고문헌 .....	143
부 록 .....	145

## 표 목 차

<표 II-1> 우리사주조합 현황 .....	26
<표 II-2> 우리사주조합 신규 설립기업 현황(업종별) .....	29
<표 II-3> 우리사주 예탁조합 .....	30
<표 II-4> 우리사주 예탁조합 및 조합원 비중(2018년 말 기준) .....	31
<표 II-5> 연도별 우리사주 지원대출 현황 .....	32
<표 II-6> 우리사주 취득자금 현황 .....	33
<표 II-7> 우리사주 인출사유별 반환 .....	34
<표 II-8>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 추이 .....	38
<표 II-9> 우리사주제도 관련 세제 지원 연혁 .....	42
<표 II-1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	45
<표 II-1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단계별) .....	46
<표 II-12>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	47
<표 III-1> 주요국 우리사주제도 과세특례 비교 .....	56
<표 III-2>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	60
<표 III-3> 코스닥 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	61
<표 III-4> EU와 우리나라 상장기업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	62
<표 III-5> EU 상장기업 우리사주 지분율 추이 .....	63
<표 III-6> 예탁조합 총발행주식에 대한 조합주식 지분율 현황 .....	63
<표 III-7> 예탁조합 비중 추이 .....	64
<표 III-8>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 .....	65
<표 III-9>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 .....	67
<표 III-10>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귀착 .....	68
<표 III-11>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 .....	69
<표 III-1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추이 .....	70

<표 IV-1> 고용노동부 우리사주 설립기업 자료와 KED데이터 결합 결과 .....	76
<표 IV-2>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	76
<표 IV-3>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중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	77
<표 IV-4>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소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	79
<표 IV-5> KED 병합 후 연도별 우리사주 설립기업 기초 통계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전체) .....	82
<표 IV-6> KED 병합 후 연도별 우리사주 설립기업 기초 통계(대기업-중견기업) ...	83
<표 IV-7> KED 병합 후 연도별 우리사주 설립기업 기초 통계(소기업과 중소기업) ...	84
<표 IV-8>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총자산 변화(고정효과패널) .....	85
<표 IV-9>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총자산 변화(고정효과패널) .....	86
<표 IV-10>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총자산 변화(고정효과패널) ...	87
<표 IV-11>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고용 변화(고정효과패널) .....	88
<표 IV-12>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고용 변화(고정효과패널) .....	88
<표 IV-13>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고용 변화(고정효과패널) .....	89
<표 IV-14>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	90
<표 IV-15>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	91
<표 IV-16>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	91
<표 IV-17>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고정효과패널) .....	92
<표 IV-18>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고정효과패널) .....	92
<표 IV-19>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고정효과패널) .....	93
<표 IV-20>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 (고정효과패널) .....	93
<표 IV-21>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 (고정효과패널) .....	94
<표 IV-22>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 (고정효과패널) .....	94
<표 V-1> 우리사주조합원 수 현황 .....	100

<표 V-2>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현황(평균) .....	101
<표 V-3>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중복 응답) .....	103
<표 V-4> 우리사주 추가 제공 계획 .....	104
<표 V-5>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의 장애요인 .....	104
<표 V-6>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생산성 기여도 .....	105
<표 V-7>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	106
<표 V-8> 우리사주제도의 직원 근속 기여도 .....	108
<표 V-9> 우리사주제도 지속 실시 의향 .....	108
<표 V-10>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사유(중복 응답) .....	110
<표 V-11> 우리사주조합 재도입 의향 .....	110
<표 V-12> 우리사주제도 인지도 .....	111
<표 V-13> 우리사주조합 미설립 사유(중복 응답) .....	112
<표 V-14> 우리사주조합 설립 의향 .....	112
<표 V-15> 우리사주 취득 방법(중복 응답) .....	114
<표 V-16> 우리사주 취득 목적 .....	114
<표 V-17>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 보유기간 .....	115
<표 V-18> 우리사주 취득의 재산 형성 도움 .....	115
<표 V-19>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 .....	117
<표 V-20>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 달성의 효과성 .....	119
<표 V-21>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인지도 및 수혜 경험(Base: n=287) .....	120
<표 V-22>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 .....	120
<표 V-23>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출연 시 소득공제(과세이연) .....	121
<표 V-24>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23
<표 V-25>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우리사주 취득, 배정 시 비과세 .....	124
<표 V-26>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배당소득 비과세 .....	126
<표 V-27>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인출 시 비과세 .....	127
<표 V-28>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	129
<표 V-29>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	131
<표 V-30>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 .....	133
<표 V-31> 과세특례제도 이외 개선 방안 .....	135
<표 V-32>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136

##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	27
[그림 II-2]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원 현황 .....	28
[그림 II-3] 우리사주조합 신규 설립기업 수 추이 .....	30
[그림 II-4] 우리사주 예탁조합 현황 .....	31
[그림 II-5]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 추이 .....	39
[그림 III-1] 상장회사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비교 .....	62
[그림 III-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조세혜택 비중 추이 .....	66
[그림 III-3]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조세혜택 비중 추이 .....	69
[그림 III-4]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규모 추이 .....	70
[그림 III-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비중 추이 .....	71
[그림 IV-1]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	77
[그림 V-1]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중복 응답) .....	102
[그림 V-2]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생산성 기여도 .....	105
[그림 V-3]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	106
[그림 V-4] 우리사주제도의 직원 근속 기여도 .....	107
[그림 V-5]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사유(중복 응답) .....	109
[그림 V-6] 우리사주제도 인지도 .....	111
[그림 V-7] 우리사주 취득 경험 .....	113
[그림 V-8] 우리사주 취득 목적 .....	114
[그림 V-9]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용 인지도 .....	116
[그림 V-1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인지도 .....	119
[그림 V-11]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출연 시 소득공제 .....	122
[그림 V-12]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22

[그림 V-13]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우리사주 취득, 배정 시 비과세 .....	125
[그림 V-14]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배당소득 비과세 .....	125
[그림 V-15]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인출 시 비과세 .....	128
[그림 V-16]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	128
[그림 V-17]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	130
[그림 V-18]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 .....	132
[그림 V-19] 과세특례제도 이외 개선 방안 .....	134

# I. 서론





## I. 서론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사 주식이나 지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임
  - 근로자는 자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 증식을 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업은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로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함에 따라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며 근로자의 보유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향상시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 말에 도입되었음
  - 동 제도는 1960년대 말부터 시행되던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법률들을 2001년에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담아 새롭게 출범한 것임
  - 종업원 지주제도를 시행하던 시기에도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있었으나, 현재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의 기본 틀은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함께 정비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제8항)
  -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2항)
  - 우리사주 배정 시 소득세 비과세(제3항, 제4항)
  - 우리사주 조합원의 인출금에 대하여 조건부 비과세(제5항, 제6항)
  - 우리사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9항)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13항)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14항)
- 동 조항의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556억원, 2019년 648억원(전망), 2020년 682억원(전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몰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동 연구에서는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와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성에 대한 보완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Ⅱ. 우리사주조합 조세지원 운영 현황





## II. 우리사주조합 조세지원 운영 현황<sup>1)</sup>

### 1. 우리사주제도

#### 가. 도입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이나 지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임<sup>2)</sup>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관리하기 위해 동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하며, 우리사주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대의원, 조합장·이사·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및 보유 지원, 조합 규약안 작성 및 변경, 조합 해산 결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함
-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배당소득·자본이득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 동시에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 기업은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로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함에 따라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보유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본소유의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에도 기여함

1) 본 장은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2018), pp. 13~16 및 김학수·구자은(2016), pp. 21~34 내용을 요약 및 업데이트함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 2. 2.

## 나. 제도 연혁

-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개편이 이루어짐)
  - 유상증자 시 신규 발행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법제화함
  
- 1972년 12월 30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으로 일반 공모도 근로자 우선배정을 허용하여 본격적으로 동 제도가 틀을 갖추고 보급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의 기업공개 예정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공개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됨
  - 우리사주제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7월 13일 종업원지주제도 확대 실시 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였으며, 이는 1974년 5월 29일 발표한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 중 하나임
    - 유상증자 시 10% 우선 배정 규정을 비공개법인까지 확대
    - 근로자 취득 주식 관리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 근로자 취득 주식의 의무예탁제도 시행(공개법인은 1년, 비공개법인은 상장 시까지)
    - 저축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저축금액 세액공제제도 도입
  
-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9월 15일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 방안을 마련함
  -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사주 우선배정 비율을 20%로 확대,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15%로 확대함
  - 이후 다음과 같이 의무예탁기간 및 세제 지원 등을 수시로 조정함
    - 1988년 6월, 의무예탁기간을 1년에서 퇴직 시까지, 특별인출의 경우 3년 경과 시까지로 연장

3)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2018), p. 14.

- 1993년 7월, 의무예탁기간을 퇴직 시에서 7년으로, 특별인출의 경우 2년 경과 시까지로 단축
- 1999년 8월, 의무예탁기간을 7년에서 다시 1년으로 단축(단, 1999년 말까지는 3년)

□ 2001년에는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및 공포함(2002년 1월 시행)

○ 2001년 12월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또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sup>4)</sup>를 도입, 동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세제지원제도도 신설함

- 2001년 12월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근로소득공제 및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50% 또는 75%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 2002년 2월 9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기준을 개정함

○ 2005년 10월 1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을 도입함

○ 2010년에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로 확대함

- 또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를 폐지함

○ 2014년 말에는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 2015년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제도<sup>5)</sup> 및 대여제도<sup>6)</sup>를 도입함

○ 또한 2016년에는 비상장법인(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우리사주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함

- 환매수 요건은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이상 보유 및 예탁한 경우에만 의무화함

- 단 정년이나 비자발적 퇴직, 사망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가능

4) 종업원지주제도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라고도 함

5) 우리사주조합이 추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6)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함

#### 다. 제도 현황<sup>7)</sup>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3장 제1절 제32~49조에서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의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표 II -1〉 우리사주조합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유기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기타법인		합계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2010	668 (23.6)	849,887 (71.4)	829 (29.3)	109,871 (9.2)	1,329 (47.0)	230,747 (19.4)	2,826 (100.0)	1,190,505 (100.0)
2011	720 (24.6)	880,876 (72.2)	832 (28.5)	113,002 (9.3)	1,369 (46.9)	226,415 (18.6)	2,921 (100.0)	1,220,293 (100.0)
2012	680 (22.8)	877,385 (70.4)	805 (27.0)	114,040 (9.2)	1,502 (50.3)	254,470 (20.4)	2,987 (100.0)	1,245,895 (100.0)
2013	675 (22.2)	898,533 (70.4)	823 (27.0)	118,491 (9.3)	1,545 (50.8)	258,899 (20.3)	3,043 (100.0)	1,275,923 (100.0)
2014	653 (24.1)	906,717 (72.1)	779 (28.8)	114,444 (9.1)	1,274 (47.1)	235,718 (18.8)	2,706 (100.0)	1,256,879 (100.0)
2015	664 (23.4)	930,067 (71.4)	825 (29.1)	120,228 (9.2)	1,343 (47.4)	251,698 (19.3)	2,832 (100.0)	1,301,993 (100.0)
2016	674 (22.7)	948,148 (70.9)	860 (28.9)	126,135 (9.4)	1,437 (48.4)	263,080 (19.7)	2,971 (100.0)	1,337,363 (100.0)
2017	676 (22.1)	956,323 (70.4)	905 (29.6)	132,737 (9.8)	1,478 (48.3)	269,757 (19.9)	3,059 (100.0)	1,358,817 (100.0)
2018	684 (21.5)	961,944 (69.8)	952 (29.9)	134,653 (9.8)	1,548 (48.6)	280,567 (20.4)	3,184 (100.0)	1,377,164 (100.0)
2019. 1	683 (21.4)	962,003 (69.7)	955 (29.9)	135,360 (9.8)	1,551 (48.6)	282,124 (20.5)	3,189 (100.0)	1,379,487 (100.0)
2019. 2	684 (21.4)	962,081 (70.1)	957 (29.9)	135,602 (9.8)	1,555 (48.7)	282,767 (20.5)	3,196 (100.0)	1,380,450 (100.0)
2019. 3	686 (21.4)	977,773 (70.1)	963 (30.0)	136,855 (9.8)	1,556 (48.5)	280,312 (20.1)	3,205 (100.0)	1,394,940 (100.0)
2019. 4	686 (21.4)	979,501 (70.1)	963 (30.0)	136,811 (9.8)	1,561 (48.6)	281,097 (20.1)	3,210 (100.0)	1,397,409 (100.0)
2019. 5	686 (21.3)	980,123 (70.1)	962 (29.9)	136,152 (9.7)	1,573 (48.8)	282,787 (20.2)	3,221 (100.0)	1,399,062 (100.0)
2019. 6	686 (21.2)	978,761 (70.0)	966 (29.9)	136,314 (9.7)	1,577 (48.8)	283,363 (20.3)	3,229 (100.0)	1,398,438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7)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통계자료 및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함

- 시사주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시사주조합은 총 3,184개, 조합원은 약 138만명 정도임
  - 2018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시사주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은 약 684개로 전체 법인(3,184개) 중 약 2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96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약 6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시사주조합은 약 952개로 전체 법인 중 약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13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기타(비상장)법인 중 시사주조합은 약 1,548개로 전체 법인 중 약 4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원 수는 약 28만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0.4% 정도임
  - 조합 수는 기타(비상장)법인이 가장 많고, 조합원 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이 가장 많음
  
- 연도별 시사주조합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시사주조합 수는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감소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2,826개였던 시사주조합 수가 2013년 3,043개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에는 2,706개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하였음

[그림 II -1] 연도별 시사주조합 설립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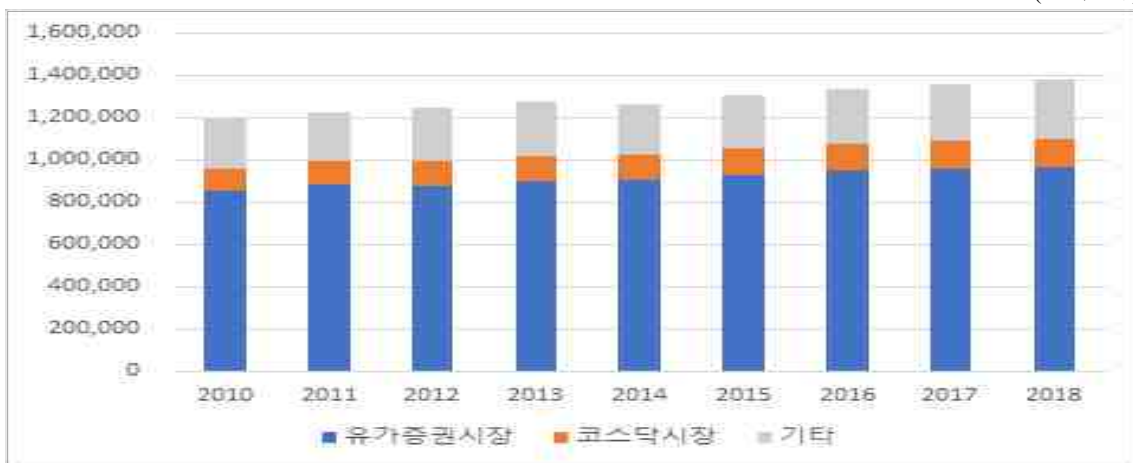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수는 3,184개로 전년 대비 4.1%, 2010년 대비 12.7% 증가함
  - 2018년에는 기업들의 IPO 활성화에 따라 상장법인 조합 수가 증가하였고, 기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sup>8)</sup>
-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수를 살펴보면 조합 수와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감소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기준, 우리사주조합원 수는 119만 505명에서 2013년 127만 5,923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125만 6,879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음
  - 2014년 이후 우리사주조합원 수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137만 7,164명으로 전년 대비 1.4%, 2010년 대비 15.7% 증가함
  - 우리사주조합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전체 조합원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 -2]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원 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 2010~2019년까지 업종별 우리사주조합 신규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음
- [그림 II-3]과 같이 우리사주조합 신규 설립기업 수는 2010년 115개에서 2013년 69개로 감소한 이후 2016년 138개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100개로 감소함

8) 한국증권금융(2019), p. 33.

- 우리사주조합 신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2019년 기준 전체 중 42.0%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다음으로는 2019년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0%), 정보통신업(17.0%), 도매 및 소매업(12.0%) 순임

<표 II -2> 우리사주조합 신규 설립기업 현황(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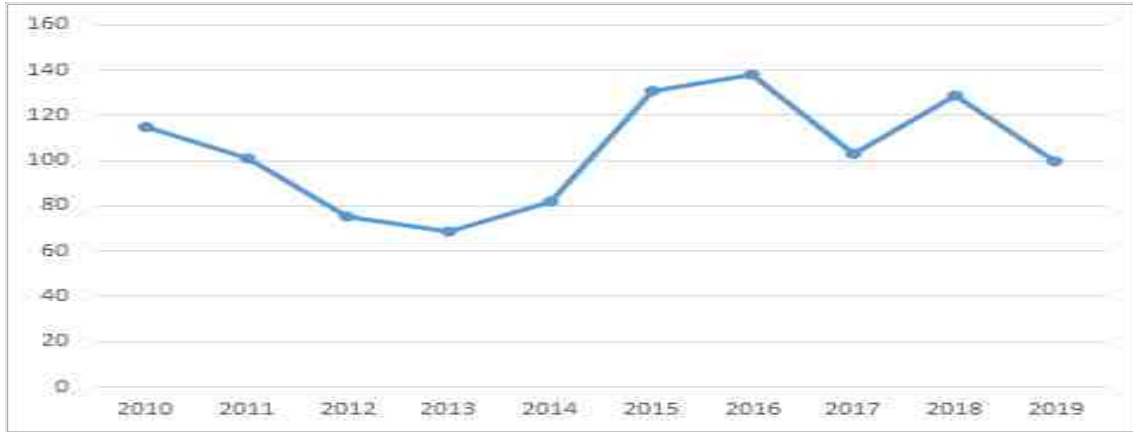
(단위: 개, %)

업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설업	3 (2.6)	3 (3.0)	0 (0.0)	1 (1.4)	3 (3.7)	3 (2.3)	3 (2.2)	1 (1.0)	2 (1.6)	2 (2.0)
교육 서비스업	1 (0.9)	0 (0.0)	1 (1.3)	0 (0.0)	0 (0.0)	0 (0.0)	0 (0.0)	1 (1.0)	0 (0.0)	1 (1.0)
금융 및 보험업	3 (2.6)	3 (3.0)	1 (1.3)	5 (7.2)	3 (3.7)	1 (0.8)	3 (2.2)	1 (1.0)	5 (3.9)	5 (5.0)
농업, 임업 및 어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1 (1.0)
운수 및 창고업	2 (1.7)	1 (1.0)	0 (0.0)	0 (0.0)	2 (2.4)	1 (0.8)	1 (0.7)	1 (1.0)	3 (2.3)	0 (0.0)
도매 및 소매업	8 (7.0)	9 (8.9)	10 (13.3)	7 (10.1)	7 (8.5)	16 (12.2)	15 (10.9)	11 (10.7)	16 (12.4)	12 (12.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1.7)	1 (1.0)	0 (0.0)	1 (1.4)	2 (2.4)	1 (0.8)	2 (1.4)	1 (1.0)	1 (0.8)	1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9)	0 (0.0)	0 (0.0)	0 (0.0)	1 (1.2)	0 (0.0)	0 (0.0)	0 (0.0)	1 (0.8)	1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9.6)	9 (8.9)	4 (5.3)	6 (8.7)	7 (8.5)	21 (16.0)	14 (10.1)	12 (11.7)	17 (13.2)	18 (18.0)
정보통신업	26 (22.6)	8 (7.9)	15 (20.0)	9 (13.0)	15 (18.3)	19 (14.5)	25 (18.1)	17 (16.5)	22 (17.1)	17 (17.0)
제조업	58 (50.4)	66 (65.3)	44 (58.7)	38 (55.1)	41 (50.0)	66 (50.4)	74 (53.6)	57 (55.3)	60 (46.5)	42 (42.0)
숙박 및 음식점업	0 (0.0)	1 (1.0)	0 (0.0)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0.0)	0 (0.0)	0 (0.0)	2 (2.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0.0)	0 (0.0)	0 (0.0)	0 (0.0)	1 (1.2)	1 (0.8)	0 (0.0)	1 (1.0)	2 (1.6)	0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합계	115	101	75	69	82	131	138	103	129	1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I -3] 우리사주조합 신규 설립기업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우리사주 예탁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예탁조합수는 1,247개, 조합원 수는 35만 9,125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327명이 증가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예탁조합 수는 2018년 292개로 전년 대비 13개 증가, 조합원 수는 28만 4,235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600명 증가함

<표 II -3> 우리사주 예탁조합

(단위: 개, 명)

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기타법인		합계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2010	219	245,927	269	18,577	513	56,057	1,001	320,561
2011	238	254,160	264	22,212	522	51,287	1,024	327,659
2012	240	267,930	249	20,027	536	55,920	1,025	343,877
2013	236	271,448	253	20,084	539	54,976	1,028	346,508
2014	246	300,077	271	23,493	474	50,953	991	374,523
2015	257	292,398	295	24,173	499	50,464	1,051	367,035
2016	271	301,705	315	24,625	540	54,072	1,126	380,402
2017	279	269,635	352	25,472	547	52,691	1,178	347,798
2018	292	284,235	385	25,027	570	49,863	1,247	359,125
2019.1	290	279,526	387	25,257	574	51,585	1,251	356,368
2019.2	287	278,556	384	24,874	574	51,682	1,245	355,112
2019.3	289	290,728	385	25,149	572	51,329	1,246	367,206
2019.4	288	289,250	384	24,701	574	51,071	1,246	365,022
2019.5	287	284,979	383	24,595	577	51,015	1,247	360,589
2019.6	285	285,925	385	24,776	578	51,128	1,248	361,829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예탁조합 수는 2018년 385개로 전년 대비 33개 증가, 조합원 수는 2만 5,027명으로 전년 대비 445명 감소함
- 기타법인의 예탁조합 수는 2018년 570개로 전년 대비 23개 증가, 조합원 수는 4만 9,863명으로 전년 대비 2,828명 감소함
- 실제 조합을 운영하는 예탁조합과 해당 조합원 수를 조합 설립 법인 및 해당 조합원 수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법인은 약 40% 수준임

<표 II -4> 우리사주 예탁조합 및 조합원 비중(2018년 말 기준)

(단위: %)

구분	코스피	코스닥	기타(비상장)	합계
예탁조합 <sup>1)</sup>	42.7	40.4	36.8	39.2
예탁조합원 <sup>2)</sup>	29.5	18.6	17.8	26.1

주: 1) 우리사주조합 대비 예탁조합 비중  
 2) 우리사주조합원 대비 예탁조합원 비중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II -4] 우리사주 예탁조합 현황



주: 좌축이 조합 수, 우축이 조합원 수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 연도별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5>와 같음
  -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우리사주를 담보로 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가계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 우리사주 취득자금은 2012년에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17년 하락 후 2018년에는 다시 증가함
- 우리사주 담보대출은 2013년까지 소폭 하락하다가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 -5> 연도별 우리사주 지원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우리사주 취득자금	우리사주 담보대출
2011	13,898	86
2012	11,615	85
2013	13,032	77
2014	17,694	119
2015	20,229	209
2016	21,854	307
2017	18,565	402
2018	22,012	607
2019. 1	22,073	593
2019. 2	22,032	595
2019. 3	22,104	589
2019. 4	21,500	606
2019. 5	20,847	636
2019. 6	20,456	655

자료: 한국증권금융(2020), p. 58.

□ 우리사주 취득자금 현황은 <표 II-6>과 같음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재원은 2014년까지는 자기자금(27.7%)보다는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의존하였으나, 2015년부터 자기자금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함
- 2018년 기준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취득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31억원 증가한 1조 5,441억원으로 조합원 자기자금, 법인대출, 금융기관 대출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조합원 출연기금 중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약 57%는 금융기관 대출(증권금융 및 은행 등 대출금)이고, 조합원의 자기자금 비중은 약 42% 정도임
- 2018년 기준, 금융기관 대출 중 증권금융 대출금은 50.9%, 은행 등 대출금은 5.6%임
- 2014년 기준 금융기관 대출이 약 71%, 자기자금 비중이 약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대출은 줄고, 자기자금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회사차입의 경우 2014년 1.4%에서 2018년 1.9%로 소폭 증가한 수준임

<표 II -6> 우리사주 취득자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조합원 출연기금										회사 대주주 무상 출연	합계
	조합원 자기자금		법인 대출금		증권금융 대출금		은행 등 대출금		소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5,526 (24.5)	25.7	492 (2.2)	2.3	4,132 (18.4)	19.2	11,333 (50.3)	52.8	21,483 (95.4)	100.0	1,031 (4.6)	22,514
2011	4,815 (25.2)	25.2	781 (4.1)	4.1	10,750 (56.3)	56.3	2,752 (14.4)	14.4	19,098 (100.0)	100.0	1 (0.0)	19,099
2012	3,128 (26.1)	28.3	772 (6.4)	7.0	6,609 (55.1)	59.8	538 (4.5)	4.9	11,047 (92.2)	100.0	937 (7.8)	11,984
2013	3,067 (24.2)	25.9	394 (3.1)	3.3	5,847 (46.1)	49.4	2,535 (20.0)	21.4	11,843 (93.4)	100.0	842 (6.6)	12,685
2014	5,100 (26.7)	27.7	264 (1.4)	1.4	9,612 (50.4)	52.2	3,424 (17.9)	18.6	18,400 (96.4)	100.0	685 (3.6)	19,085
2015	5,650 (35.0)	37.6	310 (1.9)	2.1	7,779 (48.1)	51.7	1,304 (8.1)	8.6	15,043 (93.1)	100.0	1,114 (6.9)	16,157
2016	10,531 (43.8)	51.5	665 (2.8)	3.3	7,384 (30.7)	36.1	1,870 (7.8)	9.1	20,450 (85.1)	100.0	3,585 (14.9)	24,035
2017	5,368 (46.1)	49.6	195 (1.7)	1.8	3,785 (32.5)	35.0	1,462 (12.5)	13.5	10,810 (92.7)	100.0	846 (7.3)	11,656
2018	6,415 (39.1)	41.5	301 (1.8)	1.9	7,854 (47.9)	50.9	871 (5.3)	5.6	15,441 (94.1)	100.0	969 (5.9)	16,409

주: (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증권금융(2019), pp. 71~72.

□ 우리사주 인출사유별 반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7>과 같음

- 2018년 기준 예탁주식의 인출은 12만 2,958천주로 전년 대비 8만 8,471천주 감소함
- 인출사유는 기간 만료 78.6%, 퇴직 19.1%, 조합 해산 및 기타(감자, 합병 등) 순임
- 2018년 기준 기간 만료로 인한 반환이 전년 대비 8만 6,664천주 감소, 전체 반환 대비 비중도 8.1%p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에도 즉시 인출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장기보유하는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7> 우리사주 인출사유별 반환

(단위: 천주, %)

연도	인출사유별 주식 수				합계
	기간 만료	퇴직	조합 해산	기타 <sup>1)</sup>	
2011	98,599 (84.5)	16,697 (14.3)	365 (0.3)	1,030 (0.9)	116,691 (100.0)
2012	94,671 (33.2)	188,475 (66.0)	1,526 (0.5)	790 (0.3)	285,462 (100.0)
2013	111,092 (81.5)	24,812 (18.2)	0 (0.0)	385 (0.3)	136,289 (100.0)
2014	104,803 (85.0)	17,634 (14.3)	763 (0.6)	68 (0.1)	123,268 (100.0)
2015	124,783 (84.9)	21,978 (15.0)	0 (0.0)	158 (0.1)	146,919 (100.0)
2016	74,124 (71.8)	25,765 (25.0)	3,018 (2.9)	304 (0.3)	103,211 (100.0)
2017	183,332 (86.7)	23,546 (11.1)	1,514 (0.7)	3,037 (1.4)	211,429 (100.0)
2018	96,668 (78.6)	23,459 (19.1)	2,444 (2.0)	387 (0.3)	122,958 (100.0)

주: 1. ( ) 안은 비중임

1) 기타 항목은 특별사유, 합병, 감자, 주식매수청구, 관리종목지정, 기업분할 등의 경우가 해당함  
 자료: 한국증권금융(2019), p. 71.

## 라. 최근 개정 내용<sup>9)</sup>

- 우리사주제도의 세분화와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법령을 개정함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비상장 우리사주의 환금성 제고 및 우리사주 가입 요건 완화,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제1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우리사주 설립 요건 완화<sup>10)</sup>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건으로 전체 근로자 중 2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2명 이상의 동의로 우리사주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 ②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 시행<sup>11)</sup>
    - 우리사주 취득 중 우선배정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퇴직 등의 중도인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의무예탁기간이 1년 적용되며, 이에 따라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헛지하기 위해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는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sup>12)13)</sup>
    -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sup>14)</sup>
    -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 간 손실보전거래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함

9) 한국증권금융(2019), pp. 27~32.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12) 한국증권금융(2019), p.28.

1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함

14)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제2항

- 손실보전거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
- 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않을 것
- 이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수탁기관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됨

③ 우리사주 대여제도 시행<sup>15)</sup>

- 우리사주 취득 후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예탁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 이에 따른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2015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량이 많은 주식의 경우 연 3~4% 수준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함
-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 조합원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탁된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음
- 대여하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그 외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를 보장할 것
- 대차거래 중개 및 주선업무를 하는 금융회사가 대여 우리사주의 상황을 보장,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 그 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④ 무상출연 우리사주 우선배정 근거 마련<sup>16)</sup>

- 개정 전 기업의 무상출연은 가능하였으나 정기출연을 위한 명시적 근거는 없었는데,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무상출연의 경우 배정 기준<sup>17)</sup>에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함

15)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24조의7

1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17) 과거 우리사주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저소득 또는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요건만 있었음

- 장기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자, 회사의 생산성 및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자가 이에 해당함

□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제2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제도 도입<sup>18)</sup>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 가능한 우선매입제도<sup>19)</sup>와 임의적 환매수 제도<sup>20)21)</sup>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환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미함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개정함
-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이며, 대상 주식은 기업의 환매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매입을 제외한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하며,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이상 보유·예탁한 경우에만 환매수를 의무화함<sup>22)</sup>

② 조합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조합원 자격<sup>23)</sup> 완화

- 우리사주제도를 이용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기업의 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한도를 확대<sup>24)</sup>하고 차입 규제를 완화<sup>25)</sup>함
- 우리사주조합이 총 주식의 30% 이상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권을 확보한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함
  - 우리사주 취득한도는 1인당 총 발행주식의 1%(중소기업 3%) 또는 액면가액이 3억원 미만인 소액주식임
-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차입한도 및 차입기간 요건을 폐지함
  - 단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환요건은 유지<sup>26)</sup>

18)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19)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2항

20)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1) 임의적 환매수는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에 회사와 조합 간 가격 산정방법, 시기, 적용기간 등 필요사항에 대한 합의 후 환매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

22) 단, 정년이나 비자발적 퇴직, 사망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환매수 가능함

23)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25)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③ 실시회사 및 관계회사의 정기적 무상출연 근거 마련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sup>27)</sup>을 추가함

④ 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 업무 신설<sup>28)</sup>

- 우리사주제도 관련 홍보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네 가지 업무를 신설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 지원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 제공
  -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수 및 조합원 수 변화 추이는 <표 II-8>과 <그림 II-5>와 같음

- 우리사주조합 수와 조합원 수는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9% 2.7%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2015년 대비 각각 12.4%, 5.8% 증가함

<표 II -8>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기타법인		합계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 수	조합원 수
2015	664 (23.4)	930,067 (71.4)	825 (29.1)	120,228 (9.2)	1,343 (47.4)	251,698 (19.3)	2,832 (100.0)	1,301,993 (100.0)
2016	674 (22.7)	948,148 (70.9)	860 (28.9)	126,135 (9.4)	1,437 (48.4)	263,080 (19.7)	2,971 (100.0)	1,337,363 (100.0)
2017	676 (22.1)	956,323 (70.4)	905 (29.6)	132,737 (9.8)	1,478 (48.3)	269,757 (19.9)	3,059 (100.0)	1,358,817 (100.0)
2018	684 (21.5)	961,944 (69.8)	952 (29.9)	134,653 (9.8)	1,548 (48.6)	280,567 (20.4)	3,184 (100.0)	1,377,164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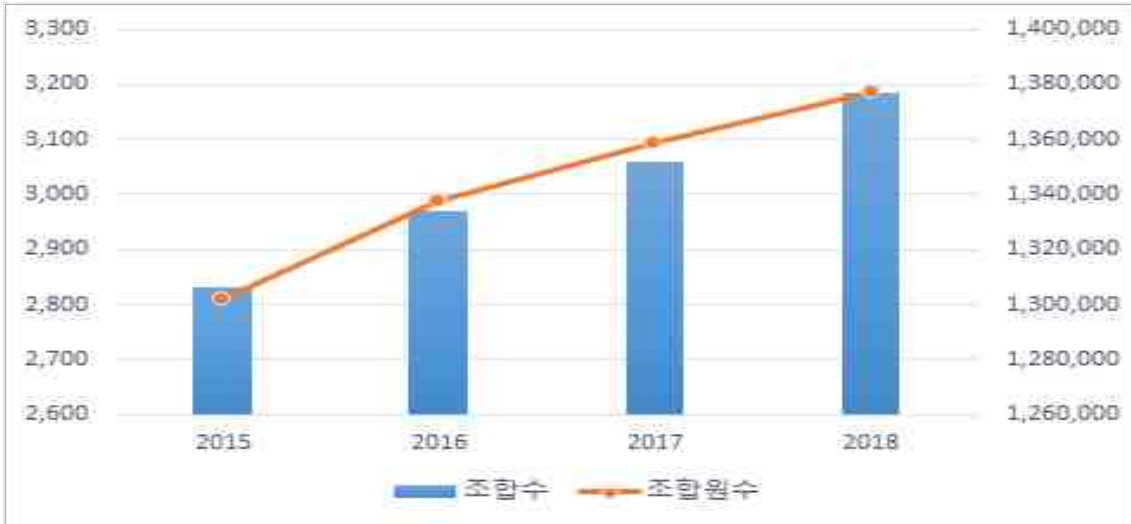
26) 차입한도는 전년도 조합원 급여 총액 이내, 차입기간은 3~7년 이내,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 이상 상환해야 함

27)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

28)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그림 II -5]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주: 좌축은 조합 수, 우축은 조합원 수  
 자료: 한국증권금융 통계자료

**마. 제도 효과<sup>29)</sup>**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 도모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자)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지급받음으로써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가 가능함
    -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금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해 과세이연 및 인출시 일부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영이 곤란해질 경우 구조조정 이외 임금조정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어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업) 근로자의 애사심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우리사주를 지급함으로써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등 노사협력을 증진할 수 있음

29)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https://esop.ksfc.co.kr/index.jsp#EITG0020&q=q1586326680002>, 검색일자: 2020. 4. 7.

-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 선택 폭이 확대되며,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 또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장부가액 및 금품은 전액 손비 인정, 우리사주 운영비 지원 시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됨
- (주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비상장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기타) 기타 제도 효과를 살펴보면, 소유 분산 촉진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
  - 노사간 협력관계 촉진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효과

##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sup>30)</sup>

### 가. 제도 연혁

-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하고자 2001년 8월 14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
  - 이에 2002년부터 새로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
- 2004년에는 우리사주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및 동조 제12항 신설)

30) 김학수·구자은(2016), pp. 25~33과 한국증권금융(2018), pp. 77~81 내용을 정리 및 업데이트함

- 2003년 12월에는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하며,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도록 제도를 신설함
    - 이를 통해 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함
  - 2005년에는 법 제정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함
  - 또한 2004년 7월 26일 이후 퇴직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함
    - 우리사주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유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한 종업원이 인출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시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
      - 보유한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 2006년 이후 인출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유기간을 1년 단축함
- 기존 보유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으로 단축함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할 경우 인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함
-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 시 100%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함
- 2017년 12월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
-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표 II -9〉 우리사주제도 관련 세제 지원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4년 4월	· 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 취득 시 소득세 세액공제(15%) 신설
1988년 12월	· 우리사주 배당소득 저율과세(5%) 신설
2000년 12월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2001년 12월	·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 도입(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2003년 12월	·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004년 12월	·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신설
2005년 12월	· 과세인출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3~5년: 50%, 5년 이상: 75% 비과세)
2006년 12월	· 과세인출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4년: 50%, 4년 이상: 75% 비과세)
2014년 12월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
2015년 12월	· 중소기업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세 감면 우대적용 신설(2~4년: 50% 4~6년: 75%, 6년 이상: 100%)
2017년 12월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정: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나. 제도 내용

-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회사에는 손비 인정 등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 시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후 인출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 시 자사주 장부가액·금품은 전액 손비 인정, 우리사주 운영비 지원 시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하고 있음
  - <표 II-10>은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한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제8항(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는 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이익, 즉 우리사주 취득 시 시가의 70%(단,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시가의 70%와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와 취득가액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우리사주조합기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제4항(우리사주 배정 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단, 회사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출연금에 의한 매입 포함)가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 여기서 일정 한도는 조합원이 해당 회사에서 직전 연도에 받은 연간 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함
    -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된 우리사주의 경우 매입가액 또는 시가의 70% 가액에 대해 배정 당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제6항(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sup>31)</sup>에 대한 인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31) 소득공제를 받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회사 출연 주식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우리사주 등이 이에 해당됨

- 2년 미만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과세 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함
- 과세 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함
- 2015년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과세 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를 비과세하도록 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배당소득 과세특례)

-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제함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sup>32)</sup>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30%
- 손금산입 적용 시 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 × 30%

32)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2010년 1,800만원으로 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양도소득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단, 3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표 II -1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

종류		지원 내용	근거 규정
출연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 4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 →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과세이연)</li> <li>① 2년 미만 보유: 100% 과세</li> <li>② 2년~4년 미만 보유: 50% 비과세</li> <li>③ 4년 이상 보유: 75% 비과세</li> <li>④ 6년 이상 보유: 100% 비과세(「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li> <li>※ 기간은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경과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 「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li> <li>· 인출시점 과세: 「조특법」 제88조의4 제5항, 제6항</li> </ul>
무상취득 주식 과세이연	주주 등 출연	· 배정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과세	「조특법」 제88조의4 제3항
	법인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금액은 배정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과세</li> <li>· 일정금액 초과분은 배정시점에 과세</li> <li>※ 일정금액: 배정주식의 매입가액 등 기준으로 조합원별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li> </ul>	「조특법」 제88조의4 제4항, 제5항
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에 예탁 중으로 액면가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동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6항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li> <li>· 출자금액이 400만원 초과: 초과분은 취득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li> <li>※ 기준가액: 시가의 70% 또는 액면가액(우선 배정의 경우 해당)</li> </ul>	「조특법」 제88조의4 제8항, 동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예탁한 주식을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액면가 1,800만원까지 양도소득 비과세</li> <li>→ 양도차액 3천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액 양도소득 과세</li> </ul>	「조특법」 제88조의4 제14항
대주주·법인의 조합 기부금 소득공제		· 대주주 및 법인이 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손급)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우리사주조합 비과세		· 기금이나 보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88조의4 제2항

자료: 한국증권금융(2018), pp. 77~78 내용을 일부 발췌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
-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 일 것
-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표 II -1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단계별)

단계	내용	
출연 및 출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출자분: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4 제1항)</li> <li>· 법인 출연분: 전액 손비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li> <li>· 대주주 등 출연분: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li> <li>· 출연받은 우리사주조합: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li> </ul>	
운용 시 지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보유 자사주 또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과세하고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li> </ul>	
배정 시 처리 단계 (「조특법」 제88조의4 제3항, 제8항)	조합원 출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분: 배정 시 과세이연</li> <li>· 미공제분: (시가의 70% - 취득원가)를 과세</li> </ul>
	법인 출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이내: 과세이연</li> <li>· 한도 초과: (매입가액 - 한도액(전년도 총급여액의 20%, 최대 500만원))를 과세</li> </ul>
인출 시 처리 단계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정 시 과세이연분: 근로소득세 과세</li> <li>·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후 인출: 50% 상당액 비과세</li> <li>· 4년 이상 보유 후 인출: 75% 상당액 비과세</li> <li>· 6년 이상 보유 후 인출: 100% 상당액 비과세(2016년 시행,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한함)</li> </ul>	
배당 시 처리 단계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 후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액면가액 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li> </ul>	
양도 시 처리 단계 (「조특법」 제88조의4 제1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 등을 사유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할 경우 그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양도차익 3천만원 한도)</li> </ul>	

자료: 김학수·구자은(2016), p. 28

#### 다. 조세지출 규모 현황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는 <표 II-12>와 같음
  -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망치는 약 68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 -12>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p>1)</sup>	2020 <sup>1)</sup>
소득세	408	263	496	598	508	551	556	648	682

주: 1) 전망치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Ⅲ. 타당성 평가





### III. 타당성 평가

#### 1. 선행연구

- 김학수 외(2016)<sup>33)</sup>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적인 정책수단 역할을 수행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준의 조세지원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과세 형평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함
  
- 김동배 외(2007)<sup>34)</sup>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운영 현황 및 선행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
  - 2007년 9월 말 기준 한국증권금융에 등록된 우리사주조합 2,604개 모집단 중 우리사주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기업 335개 및 주식을 예탁하고 있지 않은 기업 169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
    - 동 조사를 토대로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지배구조, 기업의 무상출연 및 스톡옵션형 우리사주, 차입형 우리사주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기여 여부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 회사의 무상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함
  
- 송홍선 외(2014)<sup>35)</sup>에서는 비상장·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유인을 제고할 제도개선 방안 등을 해외 사례를 토대로 조사함

33) 김학수·구자은,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34) 김동배·노용진·강병식·송민수, 『우리사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35) 송홍선·이효섭·장정모, 『비상장·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4.

- 우리나라의 우리사주 도입률은 상장법인의 경우 약 80%, 비상장법인은 0.3%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사주 취득자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금융회사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사례 제시 위주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분석 결과 우리사주제도와 기업승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복지법」과 세법 등의 주요 조항을 개정해야 함
  - 정책금융의 경우 용자와 보증 모두 가능한 방식이지만, 보증 방식이 재원 마련 등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기금 등이 정책금융의 지원 주체가 될 수 있음
  - 또한 비상장 우리사주의 환매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비상장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 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환매수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적정 가격으로 되사는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sup>36)</sup>
- 원인성(2012)<sup>37)</sup>은 2003년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유무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함
- 사업체 패널조사를 통해 산업업종별 고정효과를 포함한 단순선형 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전 사업체, 상장사, 비상장사로 구분함
  -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근로자 소유지분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36)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2016년 12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로 신설됨

37) 원인성, 「우리사주제도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2012, pp. 591~618.

- 반면 비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용진(2001)<sup>38)</sup>은 제조업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보유기간 7~8년째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89~1998년 동안 1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을 생산성 지표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사주제도 실시에 따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액 및 증가율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 노용진 외(2002)<sup>39)</sup>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주식거래가 많지 않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 및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함
- 안병룡(2002)<sup>40)</sup>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총 875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평균 17%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경공업은 3.1%, 비제조업은 25.6% 등 평균 17%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정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또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보다는 비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 향상은 자본 규모가 큰 기업은 자본채화에 의해,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채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함

38)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 패널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1, pp. 557~581.

39) 노용진·문무기·박성찬,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40) 안병룡,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생산성 증가 효과: 제도 실시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1호, 2002, pp. 233~257.

## 2. 주요국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sup>41)</sup>

- 주요국의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하면 <표 III-1>과 같음
  - 우리나라는 단계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 차입, 출연, 저가 취득, 배정, 배당인출, 양도에 걸쳐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에서도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우리사주 취득제도에 참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과세이연 후 실현되는 시점인 인출, 배당, 양도 시점에 과세함
  - 영국은 배당, 인출, 양도 시점에 과세하나, 배당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인출은 5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실질적인 과세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2천파운드 한도까지의 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5만파운드 한도까지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비과세함
  - 캐나다는 무상 혹은 저금리로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과세 대상이지만, 2천캐나다달러까지는 세액공제하며, 배당 및 양도 시에 과세하고 있음
  - 호주는 신설기업, 과세 후 공제, 과세이연 혜택으로 구분하여 취득 시 과세소득에 불포함하거나 과세소득에 포함한 후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
  - 일본은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특별한 과세특례는 없으며, 배당 및 양도 시점에 과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업원이나 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의 배당소득에 대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종업원이 소액주주이면서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
  - 영국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현금 배당 중 우리사주 추가 구입에 사용된 배당에 한하여 비과세함
  -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함

41) 김학수·구자은(2016), pp. 45~50; pp. 113~148을 요약함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에 한한 양도 시 보유기간 1년 이상의 소액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호주는 신설기업 혜택에 따라 양도 시 과세하지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취득 시 할인된 부분은 과세하지 않음
    - 과세 후 공제 혜택은 양도 이전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시 자본이득세의 50%를 감면함
  - 영국은 SIP에서 인출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으며, 인출 후 양도 시에는 과세함
    - 종업원의 저가취득 이익 중 2천파운드, 양도차익 중 5만파운드는 과세하지 않음
  - 일본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혜택이 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함

〈표 Ⅲ-1〉 주요국 우리사주제도 과세특례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취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은 인정 이자가 아니고 회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닌 이자비용은 조합의 비용</li> <li>· 보증수료는 발생할 여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이 차입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 또는 자기차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li> <li>· 이자비용뿐 아니라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사출연금 소득공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지신탁<sup>1)</sup>이 차입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회사비용임</li> <li>· 보증수료는 회사의 수익과 비용으로 상쇄하여 과세소득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또는 저가차입, 이자비용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은 회사가 직접함</li> <li>· 종업원이 무상 또는 저리로 우리사주 취득 자금을 대하며 근로소득으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요건: 신탁이 회사나 회사의 지주회사의보통 주 소유 및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함</li> <li>· 종업원 요건: 종업원이 속한 회사의 업종 제한</li> <li>· 혜택별 요건: 신설기업혜택, 과세 후 공제혜택, 과세이연혜택별 요건이 별도로 규정</li> </ul>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li> <li>· 조합원 소득에서 출연금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소득에서 공제 총 급여액의 25% 한도</li> <li>· 종업원 출연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가 출연하는 부분 없음</li> <li>· 종업원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는 없음</li> <li>· 회사가 보조하여 출연하는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출연금은 손금산입</li> <li>· 종업원은 신탁에 출연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출연 없음</li> <li>· 종업원 출연 없이 직접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출연 없음</li> <li>· 종업원 출연 없이 직접 구매</li> </ul>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우리사주 저가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금 400만원 이하 비과세</li> <li>출연금 400만원 초과 시 저가취득액 (=시가의 70% - 취득가액)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시점에 취득 가능하므로 과세혜택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가취득에 대한 과세 없음</li> <li>종업원 지주회의 저가취득은 평가방식을 세법에서 배당환원방식으로 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상주, 대응주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대가의 지급 없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과세하지 않음</li> <li>파트너십 주식의 취득가액은 급여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li> <li>배당주의 취득가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 시의 공정시장 가치와 부담액의 차이만큼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기업 혜택의 경우 과세 없음</li> <li>과세 후 공제 혜택은 저가로 취득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정액으로 1천호주달러를 공제함</li> <li>과세이연 혜택은 저가로 취득 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시점까지 과세이연함</li> <li>취득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라면 자본이득 과세 규정을 적용</li> </ul>
우리사주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출연분 배정은 과세 하지 않음</li> <li>회사출연분 배정은 일부 과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 초과분 근로소득</li> <li>한도: Min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의 20%, 500만원]</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정 시 과세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업원에게 우리사주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탁이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종업원에게 부여할 때까지 자본이득은 5년 내 배정하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음</li> <li>신탁이 종업원에게 한 주식배정은 과세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한 과세혜택은 없음</li> </ul>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보유주식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li> <li>· 우리사주예탁, 소액주주, 보유주식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li> <li>· 예탁 후 1년 이내 인출 시 인출일에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수취배당은 전체 과세</li> <li>· C형 회사 수취 배당은 합리적인 배당인 경우 전체 공제, 합리적 배당은 ESOP의 차임금 상환, 회사주식 재투자, 종업원에게 전달 되는 배당임</li> <li>· S형 회사의 경우 배당 공제 대상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종업원지주제도의 방식에 따라 다름</li> <li>· 종업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li> <li>· 현금배당 중 우리사주 추가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 시 과세 (특별한 혜택 없음)</li> </ul>	-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출금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가 다름</li> <li>① 2년 미만 근로 소득 과세,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배정시점에 과세된 경우, 잉여금 자본 전입 의제배당은 제외</li> <li>② 2년 이상 기간 따라 50~100% 까지 소득세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출 시 자본 이득으로 과세</li> <li>· 회사주식에 재투자하거나 개인퇴직계정 (IRA)으로 승계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후 인출 시 통상소득으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 종업원 방식은 인출 시 과세</li> <li>· 새로운 방식으로 인출 시 과세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으로 인출 하면서 5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할 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단, 적격 사유가 있음)</li> <li>· 현금이나 현금 대체자산으로 인출 시 근로 소득으로 과세</li> </ul>	-	-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우리스주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시점 과세를 제외하고 과세함</li> <li>· 우리스주조합에 퇴직으로 양도하는 일정 요건의 우리스주는 과세 제외</li> <li>①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예탁, 보유 우리스주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li> <li>②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과세 혜택은 없음</li> <li>· 예외적으로 ESOP에 소유가 집중된 C형 소유주가 양도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li> <li>① 양도 후 ESOP가 30% 이상 소유</li> <li>② 양도자가 3년 이상 보유</li> <li>③ 양도자가 적격자산 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을 보유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리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P<sup>9)</sup>의 보유주식 양도 시 자본 이득세 면제</li> <li>· SIP에서 인출 후 양도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나, ISA나 연금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비과세함</li> <li>· SIP에 한정되는 면세 조치는 아니지만, 종업원 지주인 종업원은 2천파운드까지의 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양도차익 중 5만파운드까지는 자본이득세 비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 시 자본 이득세를 과세</li> <li>· 양도에 대한 과세 혜택은 아니지만, ESOP와 EVCC<sup>9)</sup>를 합하여 주식 취득 가액의 20%(최대 2천달러)를 세액공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기업 혜택의 경우 양도 시점에 과세,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함</li> <li>· 그 외 혜택의 경우 양도 시점에 과세하지만, 과세 후 공제 혜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자본이득세의 50% 감면함</li> </ul>

주: 1) 신탁형 기업이 설정한 신탁

2) 주주에게 주식대금 납입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주는 주식

3) 종업원이 유상으로 매입하면 이에 대응하여 회사가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4) SIP(Share Incentive Plan)은 과세혜택을 주는 제도로 주식보상제도라고 하며, 종업원에게 주식을 배분하기 위한 중간실체로 신탁을 이용하고 주식을 직접 구입하는 제도임

5) EVCC(Employee Venture Capital Corporation)은 종업원벤처캐피털 제도로 종업원 단체에 의해 후원되는 EVCC의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 EVCC가 다시 그들의 종업원 투자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임

자료: 김학수·구자은(2016), pp. 145~148.

### 3. 우리사주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

- 2010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은 86.0%로, 2011년 91.0%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 86.7%로 감소한 이후 2019년까지 84~87%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코스피 상장기업 수는 777개로, 2011년 791개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799개로 증가함
    - 2019년 코스피 상장기업 수는 799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함
  - 2010년 코스피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668개로, 2011년 720개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 2019년에는 686개로 나타남
    - 2019년 코스피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686개로, 전년 대비 2개 증가함

〈표 Ⅲ-2〉 유기증권시장(코스피) 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p>1)</sup>
상장기업 수	777	791	784	777	774	770	779	774	788	799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	668	720	680	675	653	664	674	676	684	686
결성비율	86.0	91.0	86.7	86.9	84.5	86.2	86.5	87.3	86.8	85.9

주: 1)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1. 코스피 및 코스닥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기업 수, 한국증권금융  
 2.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수, 한국거래소

- 2010년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은 80.6%로, 2013년 81.6%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71.1%까지 감소한 이후 2018년 72.0%로 소폭 증가, 2019년 68.8%로 다시 감소함
  - 2010년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1,029개로 2012년 1,005개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9년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1,405개로 전년 대비 82개 증가함
  - 2010년 코스닥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829개에서 2014년 779개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966개로 나타남

- 2019년 코스닥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966개로, 전년 대비 14개 증가함

<표 III-3> 코스닥 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단위: 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up>4)</sup>
상장기업 수	1,029	1,031	1,005	1,009	1,061	1,152	1,209	1,267	1,323	1,405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	829	832	805	823	779	825	860	905	952	966
결성비율	80.6	80.7	80.1	81.6	73.4	71.6	71.1	71.4	72.0	68.8

주: 1)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1. 코스피 및 코스닥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기업 수, 한국증권금융  
 2.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수, 한국거래소

-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9)에 따르면, 32개 유럽 국가들 중 ESOP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 비중은 2010년 80.9%에서 2019년 93.1%로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표 III-4>와 [그림 III-1]과 같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EU 회원국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EU 상장기업 결성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12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하락하면서 2018년 기준 77.5%로 EU 회원국보다 약 15.4%p 낮은 수준임
    - 2013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EU 상장기업 결성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반면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EU 상장기업 결성 비율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2012년부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2018년 기준 72.0%로, EU보다 약 20.9%p 낮은 수준임<sup>42)</sup>

42) 2019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은 68.8%로, EU보다 약 24.3%p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기업의 결성 비율이 2013년 81.6%에서 2014년 73.4%까지 하락한 것은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운영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해산하도록 유도한 바, 이에 따라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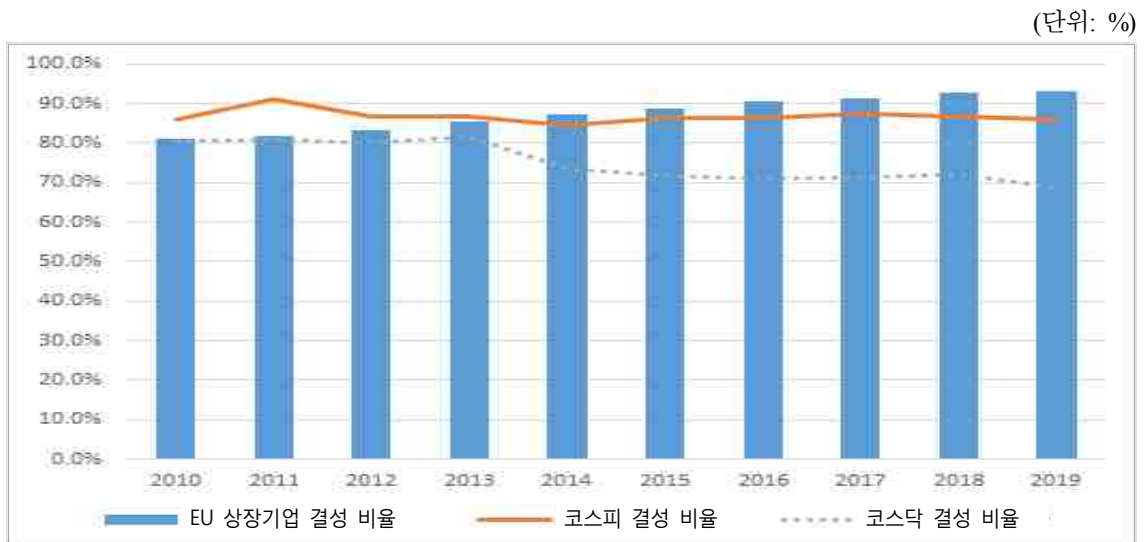
〈표 III-4〉 EU와 우리나라 상장기업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U 회원국	80.9	81.8	83.3	85.5	87.2	88.8	90.4	91.4	92.9	93.1
한국 (코스피)	86.0	91.0	86.7	86.9	84.5	86.2	86.5	87.3	86.8	85.9
한국 (코스닥)	80.6	80.7	80.1	81.6	73.4	71.6	71.1	71.4	72.0	68.8
한국 (상장기업)	82.9	85.2	83.0	83.9	78.1	77.5	77.2	77.5	77.5	75.0

주: 1. EU 상장기업 결성 비율은 우리사주제도를 보유한 상장기업들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냄  
 2.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자료가 6월 말 기준임  
 자료: 1.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9)  
 2. 코스피 및 코스닥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기업 수, 한국증권금융  
 3.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수, 한국거래소

[그림 III-1] 상장회사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 비교



자료: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9)

43) 법정 해산 사유에 따라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우리사주조합 해산 신청을 하여 해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절차임

- 우리사주의 지분율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우리사주 지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EU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 지분율은 2019년 평균 2.85% 수준임
  -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9)에서는 32개 EU 상장기업들의 평균 우리사주 지분율이 2016년 3.19%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2.85%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힘
  -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예탁조합 총 발행주식에 대한 조합주식의 평균 지분율은 1.13%로 전년 대비 약 0.08%p 증가함
    - 2018년 말 기준 1,247개 조합 중 조합주식 지분율이 5% 이상인 조합은 202개로 전체의 약 16.2%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0.8%p 감소한 수준임
  - 우리나라와 EU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 지분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EU 상장기업들의 평균 우리사주 지분율 3.03%보다 우리나라가 1.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I-5〉 EU 상장기업 우리사주 지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분율	2.84	2.95	2.84	3.08	3.08	3.13	3.19	3.18	3.03	2.85

자료: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9)

〈표 III-6〉 예탁조합 총발행주식에 대한 조합주식 지분율 현황

(단위: 개, %)

구분	20% 이상	10% 이상~ 20% 미만	5% 이상~ 10% 미만	1% 이상~ 5% 미만	1% 미만	합계	평균 지분율
2017년 기업 수	22 (1.9)	54 (4.6)	124 (10.5)	401 (34.0)	577 (49.0)	1,178 (100.0)	1.05
2018년 기업 수	24 (1.9)	52 (4.2)	126 (10.1)	430 (34.5)	615 (49.3)	1,247 (100.0)	1.13

주: 1. ( )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증권금융(2019), p. 33.

-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은 EU 상장기업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사주 지분율은 EU 상장기업들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반드시 예탁해야 함<sup>44)</sup>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대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예탁조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이 되었다더라도 실제 운영되지 않는 조합이 60% 이상이고 실제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도 70% 이상임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속적인 정책목표로 추구한다면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표 III-7> 예탁조합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합 수	35.4	35.1	34.3	33.8	36.6	37.1	37.9	38.5	39.2
조합원 수	26.9	26.9	27.6	27.2	29.8	28.2	28.4	25.6	26.1

주: 1.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대비 예탁조합 비중  
 자료: 한국증권금융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 4. 세제 지원 혜택의 귀착

### 가.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

- 소득구간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을 살펴보면 <표 III-8>과 같음<sup>45)</sup>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인원 수 비중은 2010년 63.0%에서 2018년 40.4%로 22.6%p 감소하였으며, 출연금 비중은 2018년 기준 36.9% 수준으로 나타남

4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45) 국세청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총 급여 구간별 과세대상 출연금,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이용, 구간별 산출세액 기준 실효세율을 계산함. 출연금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의 경우 출연금과 과세표준 합산액으로 계산, 이에 구간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출연금 소득공제 전 산출세액을 계산함. 국세청 내부자료상 산출세액과 출연금 소득공제 전 산출세액의 차이를 조세혜택으로 보고, 구간별 비중(총 조세혜택 대비 구간별 귀착 비중)을 계산함

<표 III-8>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

(단위: %)

구분	총 급여 구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수 비중	2천만원 이하	1.4	0.9	0.6	0.4	1.0	1.1	0.8	0.7	0.8
	4천만원 이하	16.4	13.9	11.5	6.6	7.5	7.4	6.5	4.7	4.3
	8천만원 이하	45.1	48.1	46.0	33.4	42.4	41.6	41.0	32.4	35.4
	8천만원 이하 합계	63.0	63.0	58.1	40.4	50.9	50.0	48.3	37.8	40.4
	1억원 이하	19.4	15.6	15.6	29.1	19.8	19.9	17.3	17.7	17.0
	2억원 이하	16.8	20.3	25.6	29.8	28.7	29.1	33.6	43.3	41.4
	2억원 초과	0.9	1.1	0.7	0.6	0.6	0.9	0.8	1.2	1.3
	8천만원 초과 합계	37.0	37.0	41.9	59.6	49.1	50.0	51.7	62.2	59.6
출연금 비중	2천만원 이하	0.6	0.5	0.3	0.1	0.6	0.5	0.3	0.3	0.3
	4천만원 이하	11.8	12.4	10.3	4.3	5.8	5.7	5.3	3.6	3.5
	8천만원 이하	44.7	48.6	41.8	31.0	41.9	40.5	41.3	29.3	33.1
	8천만원 이하 합계	57.1	61.5	52.4	35.4	48.3	46.7	46.9	33.2	36.9
	1억원 이하	21.0	15.5	16.0	31.2	20.3	20.5	17.2	17.6	17.0
	2억원 이하	20.8	21.8	30.8	32.8	30.8	31.7	35.0	47.7	44.6
	2억원 초과	1.1	1.2	0.8	0.6	0.6	1.1	0.9	1.5	1.6
	8천만원 초과 합계	42.9	38.5	47.6	64.6	51.7	53.3	53.1	66.8	63.1
조세 혜택 비중	2천만원 이하	0.3	0.3	0.1	0.1	0.2	0.2	0.1	0.1	0.1
	4천만원 이하	6.4	6.8	5.3	2.1	3.2	3.0	2.8	1.7	1.6
	8천만원 이하	38.7	41.9	34.8	25.4	34.5	32.6	33.0	21.6	24.5
	8천만원 이하 합계	45.3	49.0	40.2	27.6	37.9	35.8	35.9	23.3	26.3
	1억원 이하	22.7	16.9	16.8	30.9	21.1	20.8	17.2	16.1	15.7
	2억원 이하	29.4	31.3	41.2	40.2	39.7	41.1	45.1	57.9	55.0
	2억원 초과	2.6	2.9	1.9	1.3	1.3	2.3	1.8	2.7	3.0
	8천만원 초과 합계	54.7	51.0	59.8	72.4	62.1	64.2	64.1	76.7	73.7

주: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학수·구자은(2016), p. 65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새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인원 비중은 2013년 40.4%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 50.9%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37.8%로 감소, 2018년 40.4%로 소폭 증가함
- 출연금 비중은 2010년 57.1%에서 2018년 36.9%로, 20.2%p 감소함
- 총 급여 8천만원 초과 구간의 인원 수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8년 59.6%로 22.6%p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비중도 2018년 기준 63.1% 수준으로 나타남
- 인원 수 비중은 2013년 59.6%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49.1%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까지 증가, 2018년 소폭 감소함
- 출연금 비중은 2010년 42.9%에서 2018년 63.1%로 20.2%p 증가함
- 총 급여 4천만원 이하 구간의 계층에 귀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6.4%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6% 수준에 불과함
- 총 급여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의 계층에 귀착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2018년 기준 24.5%이며, 출연금 비중은 33.1%, 인원 수 비중은 35.4% 수준임
- 조세혜택 비중의 경우 2011년까지는 총 급여구간 8천만원 이하와 초과 계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격차가 벌어지면서 2018년에는 약 3대 7 수준으로 벌어짐

[그림 III-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조세혜택 비중 추이

(단위: %)



주: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학수·구자은(2016), p. 65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새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인원 수 비중과 출연금 비중은 8천만원 초과 합계 구간이 8천만원 이하 합계 구간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세혜택 비중이 큰 이유는 해당 소득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총 급여 구간이 8천만원 이하 합계 구간인 경우 2010~2018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은 8.2%이며, 8천만원 초과 합계 구간의 경우 20.8% 수준임

〈표 III-9〉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8천만원 이하 합계	7.9	7.8	7.8	7.9	8.5	8.5	8.5	8.6	8.5	8.2
8천만원 초과 합계	20.2	19.9	20.2	19.4	21.1	21.5	21.3	21.5	21.7	20.8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나.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 우리사주 보유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귀착을 살펴보면 <표 III-10> 과 같음<sup>46)</sup>
  - 근로소득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합계 구간의 인원 비중의 경우 2010년 66.7%에서 2018년 42.6%로 24.1%p 감소한 반면, 8천만원 초과 합계 구간의 경우 2010년 33.3%에서 2018년 57.4%로 증가함
  - 총 급여 구간의 배당소득이 1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되는 경우, 조세혜택 비중이 배당소득 비중과 동일하게 됨
    - 2010년 총 급여 8천만원 초과 합계 구간에 귀착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비중은 46.3%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8년 68.1%까지 증가함
  - 근로소득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 귀착 정도를 추정된 결과,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이 되는 경우(배당소득 비중) 보다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3] 참조)<sup>47)</sup>
    - 8천만원 초과 합계 구간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비중은 2010년 56.8%에서 2018년 78.1%까지 증가함

46) 국세청에서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함

47) 이는 배당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해당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조세혜택 규모를 측정한 결과임

-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 혜택 비중보다 고소득 계층(8천만원 초과 합계)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8천만원 초과 합계 구간 기준, 출연금에 대한 조세혜택 비중은 2018년 73.7%이며,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비중은 2018년 78.1%로 추정됨

〈표 III -10〉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귀착

(단위: %)

구분	총 급여 구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비중	2천만원 이하	1.7	3.2	3.7	3.5	3.3	2.7	2.6	2.0	2.7
	4천만원 이하	10.2	13.8	12.2	8.8	7.5	5.6	6.2	4.1	4.5
	8천만원 이하	54.9	51.2	34.5	33.7	40.4	39.7	39.8	38.6	35.4
	8천만원 이하 합계	66.7	68.1	50.4	45.9	51.3	48.1	48.6	44.7	42.6
	1억원 이하	19.9	13.6	22.4	18.8	16.9	19.6	17.0	19.5	19.0
	2억원 이하	11.4	17.5	26.5	34.4	31.2	31.6	33.5	34.6	36.7
	2억원 초과	2.0	0.8	0.7	0.9	0.7	0.7	0.8	1.2	1.6
	8천만원 초과 합계	33.3	31.9	49.6	54.1	48.7	51.9	51.4	55.3	57.4
배당 소득 비중	2천만원 이하	1.1	1.5	1.7	1.7	1.7	1.5	1.9	1.2	0.9
	4천만원 이하	4.2	4.7	3.8	4.1	4.0	3.7	4.1	2.9	2.3
	8천만원 이하	48.4	39.9	29.7	30.9	28.1	32.0	36.2	32.5	28.7
	8천만원 이하 합계	53.7	46.0	35.2	36.7	33.9	37.2	42.2	36.5	31.9
	1억원 이하	25.1	15.9	17.8	16.5	17.5	17.6	17.2	18.5	20.0
	2억원 이하	17.5	33.8	44.4	43.8	46.1	41.6	37.3	38.6	40.2
	2억원 초과	3.8	4.2	2.6	3.0	2.5	3.6	3.2	6.4	7.9
	8천만원 초과 합계	46.3	54.0	64.8	63.3	66.1	62.8	57.8	63.5	68.1
조세 혜택 비중	2천만원 이하	0.5	0.6	0.7	0.7	0.7	0.6	0.7	0.4	0.3
	4천만원 이하	2.2	2.3	1.8	2.0	2.0	1.9	2.1	1.4	1.0
	8천만원 이하	40.5	30.1	22.6	23.4	21.2	24.4	28.3	23.9	20.5
	8천만원 이하 합계	43.2	33.1	25.1	26.1	23.9	26.8	31.2	25.7	21.9
	1억원 이하	25.2	15.4	16.8	15.5	16.9	16.9	17.0	16.9	17.7
	2억원 이하	23.7	43.1	52.9	52.3	54.5	49.5	45.5	45.5	46.4
	2억원 초과	8.0	8.5	5.3	6.0	4.8	6.7	6.3	11.9	14.0
	8천만원 초과 합계	56.8	66.9	74.9	73.9	76.1	73.2	68.8	74.3	78.1

주: 1. 배당소득 비중은 해당 구간의 배당소득이 1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되는 경우 조세혜택의 비중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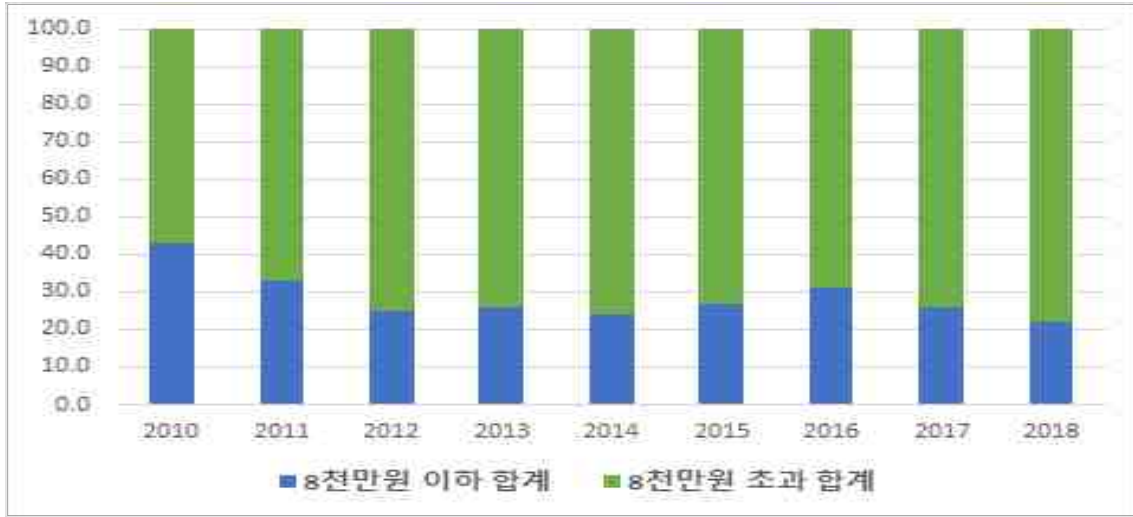
2. 조세혜택 비중은 해당 구간의 산출세액기준 평균 실효세율을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추정치에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과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된 산출세액과의 차이를 해당 구간의 조세혜택 규모로 산정함

3.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학수·구자은(2016), p. 67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새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III-3]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조세혜택 비중 추이

(단위: %)



주: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학수·구자은(2016), p. 67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새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근로소득 총 급여 구간별 인원 수로 각 구간별 배당소득을 나눠서 살펴본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규모는 <표 III-11> 및 [그림 III-4]와 같음
  - 2014~2018년 기간 중 가장 낮은 배당소득 금액은 2018년 총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로 8만 231원임
  - 동 기간 중 가장 높은 배당소득 금액은 2017년 총 급여구간 2억원 초과로 146만 7,337원임
  - 5년 평균 1인당 배당소득 금액을 살펴보면, 총 급여구간 2천만원 이하는 14만 6,706원으로 가장 낮고 2억원 초과 구간은 116만 1,857원으로 가장 높음

<표 III-11>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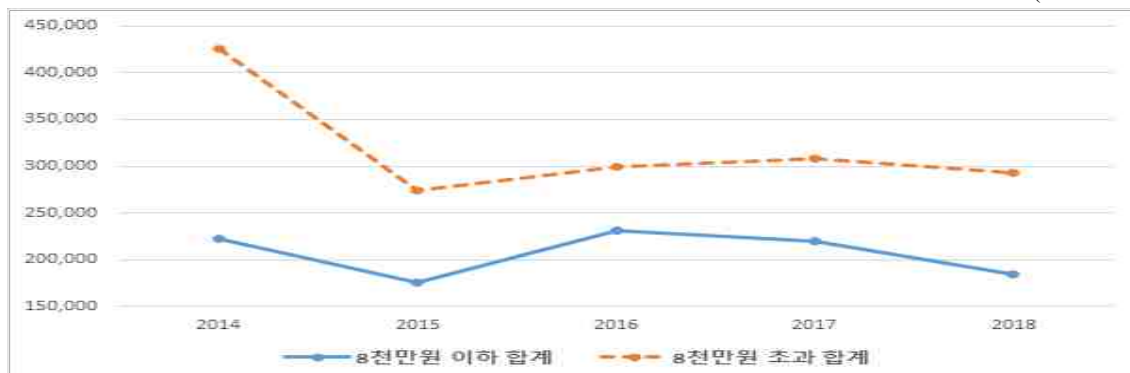
(단위: 원)

총 급여구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2천만원 이하	178,759	123,888	191,709	158,943	80,231	146,706
4천만원 이하	180,362	150,172	178,441	189,015	123,524	164,303
8천만원 이하	233,891	182,917	242,309	225,864	199,756	216,947
8천만원 이하 합계	222,365	175,746	231,446	219,466	184,137	206,632
1억원 이하	314,596	204,741	269,787	254,458	259,283	208,768
2억원 이하	473,323	298,559	296,547	299,544	270,109	327,616
2억원 초과	1,011,404	1,103,836	1,036,973	1,467,337	1,189,733	1,161,857
8천만원 초과 합계	425,344	274,629	299,684	308,497	292,854	320,202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III-4]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규모 추이

(단위: 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다. 우리사주 기부금 추이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변화 추이는 <표 III-12>와 같음

<표 III-1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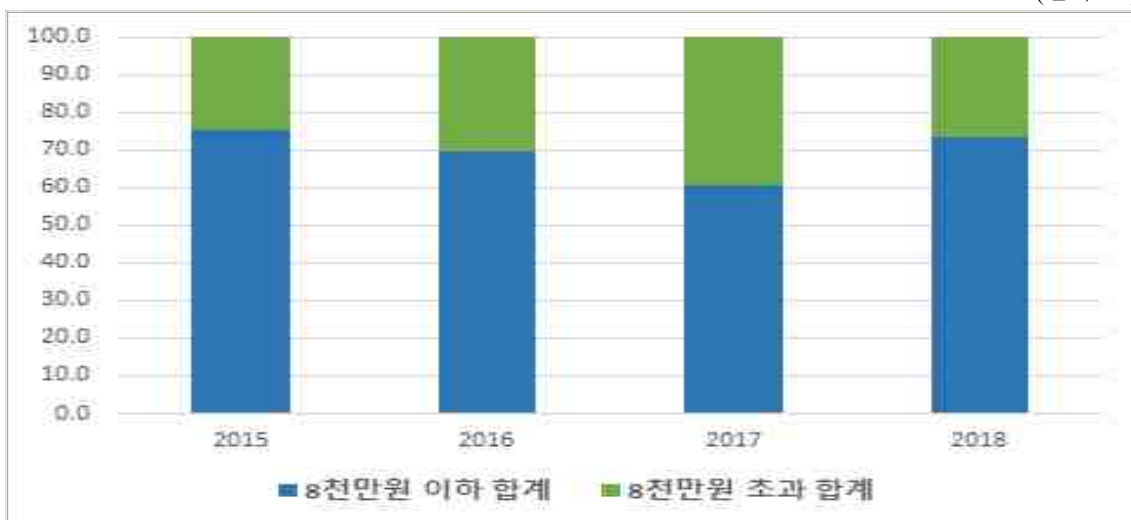
구분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	2015	2016	2017	2018
인원 비중	2천만원 이하	0.8	1.7	0.9	0.6
	4천만원 이하	22.7	30.6	28.6	29.8
	8천만원 이하	63.2	59.5	60.5	60.4
	8천만원 이하 합계	86.7	91.7	89.9	90.7
	1억원 이하	6.8	4.4	6.4	5.8
	2억원 이하	6.0	3.6	3.6	3.4
	2억원 초과	0.5	0.3	0.1	0.1
	8천만원 초과 합계	13.3	8.3	10.1	9.3
기부금 비중	2천만원 이하	0.4	0.8	0.3	0.2
	4천만원 이하	20.7	20.2	15.8	18.1
	8천만원 이하	54.7	50.3	49.8	57.9
	8천만원 이하 합계	75.8	71.3	66.0	76.2
	1억원 이하	8.3	10.7	9.0	10.3
	2억원 이하	11.4	15.1	13.0	13.4
	2억원 초과	4.5	2.8	12.0	0.1
	8천만원 초과 합계	24.2	28.7	34.0	23.8
세액공제 비중	2천만원 이하	0.4	0.8	0.3	0.2
	4천만원 이하	20.5	19.7	14.6	17.5
	8천만원 이하	54.3	49.1	45.9	55.8
	8천만원이하 합계	75.2	69.6	60.8	73.4
	1억원 이하	8.2	10.5	8.3	10.5
	2억원 이하	11.3	16.8	13.3	15.9
	2억원 초과	5.2	3.1	17.6	0.1
	8천만원 초과 합계	24.8	30.4	39.2	26.6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인원 비중의 경우 8천만원 이하 합계 구간 인원이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8천만원 이하 합계 구간의 기부금 비중은 2015년 75.8%에서 2018년 76.2%로 0.4%p 증가함
- 8천만원 이하 합계 구간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비중은 2015년 75.2%에서 2018년 73.4%로 1.8%p 감소함

[그림 III-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5. 타당성 평가 요약

-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우리사주조합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가 최근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사주조합원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활성화의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근거함
  - 우리사주 지분율을 보면 EU 회원국(32개국)의 2018년 말 기준 지분율이 3.0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13%로 1.9%p 낮은 수준임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추구한다면, 세계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효과는 2014년 기준 급여소득 8천만원 이하 계층에서 약 38%, 그 초과 계층에서 약 62%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8천만원 이하 계층은 26%, 초과 계층은 74%로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증가함
  - 이러한 결과는 2013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가, 2014~2016년에는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으로의 혜택 집중이 뚜렷한 경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는 있음
  -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급여 구간별 귀착효과의 경우, 2014년 기준 급여소득 8천만원 이하 계층이 약 24%, 그 초과 계층이 약 76%이던 것이 2018년 기준으로는 각각 약 22%와 약 78%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급여 구간별 귀착효과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급여 구간별 귀착효과를 분석한 결과, 8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계층의 혜택 비중이 그 이하 계층의 혜택 비중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 세제 지원의 경우 고소득 계층의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옴
  -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원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계층별 혜택의 차이가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우리사주조합원제도는 자본주의의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를 보유한 나라에서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미국, 영국 등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동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입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나라마다 지원제도 등이 다소 차이남
  - 주식의 현금 대비 위험도, 의무예탁기간 등을 감안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세제 지원이 없다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유인은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음
  
- 세제 측면에서 다른 중복 지원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과세특례가 없다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함
  - 우리사주조합원제도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유지하는 한, 동 세제 지원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IV. 효과성 평가





## IV. 효과성 평가

### 1. 효과성 평가 개요

- 제Ⅳ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유사기업에 비해 투자, 고용, 수익성 측면에서 거둔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바, 기업들이 실제 투자와 고용을 늘려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임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유한 기업-산업-일자리 생태계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들이 총자산과 고용, 수익성 측면에서 거둔 성과를 유사한 비설립기업과 비교해 정량적으로 평가함

### 2. DB 구축 및 기초 통계

#### 가. 기업생태계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 결합

- 본 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유한 한국기업데이터(KED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 등 기업 생태계자료와 연계하여 효과성 평가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 통계를 도출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우리사주 설립기업 목록을 한국기업데이터와 결합한 결과 전체 704개 기업 중 591개 기업의 자료가 확인되어, 84%의 결합률을 보임
  - 최신 한국기업데이터 자료가 2018년 자료이며, 효과성 평가에 있어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2016년 자료를 활용함

<표 IV-1> 고용노동부 우리사주 설립기업 자료와 KED데이터 결합 결과

(단위: 개, %)

연도	고용노동부 자료	병합 성공	병합 성공률
2010	114	90	78.95
2011	100	82	82.00
2012	74	56	75.68
2013	68	58	85.29
2014	81	72	88.89
2015	130	116	89.23
2016	137	117	85.40
합계	704	591	83.9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의 산업별 분포

- 제9차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우리사주 설립기업은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 주로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자료 병합 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확인되는 591개의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중 359개 기업이 제조업에 속하며, 91개 기업이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 분포함

<표 IV-2>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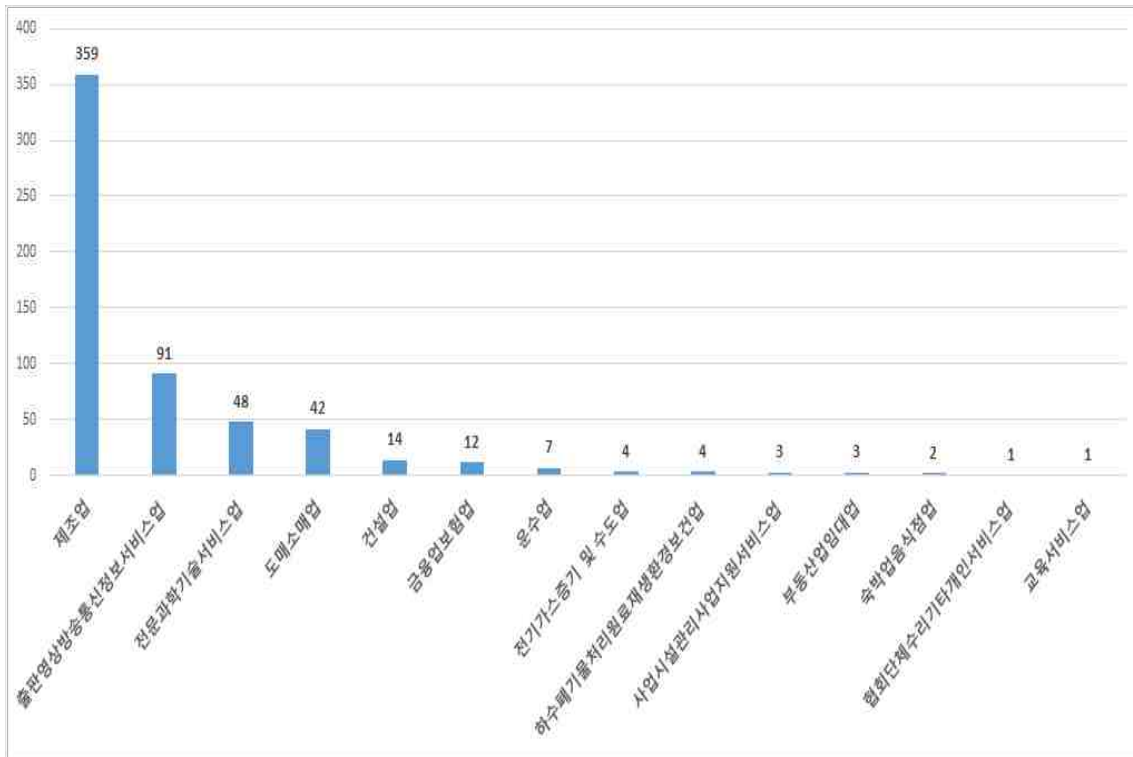
(단위: 개)

산업명(대분류)	우리사주 설립기업 수
제조업	35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9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8
도매소매업	42
건설업	14
금융업보험업	12
운수업	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활환경보전업	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3
부동산업임대업	3
숙박업음식점업	2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1
교육서비스업	1
합계	59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단위: 개)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기업데이터에 담긴 세부 산업정보를 활용하여, 중분류와 소분류 분포를 도출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소분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등에서 우리사주 조합이 활발하게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게임산업이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화장품산업이 포함되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 2010년대의 우량성장 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음이 확인됨

<표 IV-3>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중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단위: 개)

산업명(중분류)	우리사주 설립기업 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4
출판업	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3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

<표 IV-3>의 계속

산업명(중분류)	우리사주 설립기업 수
전기장비 제조업	19
연구개발업	18
1차 금속 제조업	16
전문서비스업	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정보서비스업	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금융업	9
식료품 제조업	9
전문직별 공사업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5
종합 건설업	5
소매업; 자동차 제외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방송업	3
통신업	3
음료 제조업	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
항공 운송업	2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숙박업	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부동산업	2
수상 운송업	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임대업(부동산 제외)	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
수리업	1
가구 제조업	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
교육 서비스업	1
보험 및 연금업	1
합계	59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4> KED 병합 후 우리사주 설립기업 소분류 산업별 분포(2010~2016년)

(단위: 개)

산업명(소분류)	우리사주 설립기업 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6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2
전자부품 제조업	29
자동차 부품 제조업	27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9
반도체 제조업	18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8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6
의료용 기기 제조업	16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4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13
가정용품 도매업	13
의약품 제조업	11
1차 철강 제조업	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광고업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8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8
기타 정보 서비스업	8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7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7
기타 식품 제조업	6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6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5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5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4
1차 비철금속 제조업	4
건물 건설업	4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4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4

<표 IV-4>의 계속

산업명(소분류)	우리사주 설립기업 수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
기타 금융업	4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봉제의복 제조업	3
가정용 기기 제조업	3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3
은행 및 저축기관	3
전기통신업	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3
텔레비전 방송업	3
기타 전문 도매업	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3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2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2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
폐기물 처리업	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무점포 소매업	2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
금융지원 서비스업	2
화학섬유 제조업	2
정기 항공 운송업	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
투자기관	2
숙박시설 운영업	2
알콜음료 제조업	2

<표 IV-4>의 계속

산업명(소분류)	우리사주 설립기업 수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2
가구 제조업	1
토목 건설업	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
고무제품 제조업	1
도로 화물 운송업	1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
전기업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1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
보험업	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1
해상 운송업	1
일반 교습 학원	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
금속 주조업	1
약기 제조업	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
육상 여객 운송업	1
상품 종합 도매업	1
편조의복 제조업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합계	59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의 기초 통계(전체 및 기업 규모별)

- 한국기업데이터 결합 후 전체 DB 중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회사의 수는 소수에 그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는 비중이 높음
  - 한국 기업생태계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해당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높음

<표 IV-5> KED 병합 후 연도별 우리사주 설립기업 기초 통계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전체)

(단위: 개, 백만원, 년, 명)

연도	우리사주 설립 여부	기업 수	평균 매출액	평균 총자산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업력	평균 순수 피보험자 수
2010	×	195,598	14,220.87	19,965.93	899.51	8.84	26.69
2010	○	88	305,125.90	365,423.80	29,975.23	11.80	284.79
2011	×	190,300	16,111.95	20,158.54	855.19	9.13	28.90
2011	○	79	128,931.20	145,794.60	2,121.43	12.68	168.88
2012	×	191,912	16,580.43	22,374.93	801.03	9.50	30.16
2012	○	52	184,700.60	476,893.00	12,033.88	14.77	329.56
2013	×	182,460	17,256.04	21,330.67	816.49	10.09	32.07
2013	○	57	93,241.91	646,041.10	9,303.76	14.81	185.51
2014	×	162,774	19,763.45	27,278.13	890.43	10.88	35.33
2014	○	67	151,069.80	156,731	10,013.97	12.15	274.22
2015	×	125,533	24,572.10	35,023.88	1,275.52	12.17	43.43
2015	○	112	126,439.80	234,843.20	9,394.71	16.06	168.23
2016	×	101,449	29,902.34	44,662.19	1,758.88	13.10	50.34
2016	○	113	135,548.50	275,029.40	6,512.75	14.68	249.28

주: 한국기업데이터 중 소상공인과 기타 기업 제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이질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효과성 평가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접근함
  -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할 경우 우리사주 비설립기업의 평균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는 20~50명인 반면, 우리사주 설립기업의 경우 170~290명에 달하는 등 이질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기초 통계를 도출하면 이질성이 상당 부분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우리사주 비설립기업의 평균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는 350~500명, 우리사주 설립기업의 경우 350~900명 수준
- 중소기업의 경우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평균 고용보험 순수 피보험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이질성이 감소함

<표 IV-6> KED 병합 후 연도별 우리사주 설립기업 기초 통계(대기업-중견기업)

(단위: 개, 백만원, 년, 명)

연도	우리사주 설립 여부	기업 수	평균 매출액	평균 총자산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업력	평균 순수 피보험자 수
2010	×	4,482	403,886	640,922.8	30,159.56	17.85	414.29
2010	○	30	852,555.6	1,019,405	81,495.83	13.03	676.47
2011	×	4,497	449,795.4	603,106.6	26,671.01	18.27	447.73
2011	○	21	400,155.5	462,695.5	-1,249.859	20.90	357.52
2012	×	4,563	463,947.6	685,571.9	24,558.96	18.75	466.49
2012	○	16	506,990.6	384,285.8	12,903.82	18.94	862.63
2013	×	4,675	445,224.6	598,188.2	22,446.79	18.97	466.77
2013	○	14	273,298	2,509,724	23,950.41	21.57	491.69
2014	×	4,752	462,183.3	731,110.9	21,433.64	19.78	484.98
2014	○	18	491,499.8	498,430.8	30,284.66	10.17	826.59
2015	×	4,789	442,141.3	724,756.4	24,303.41	20.27	488.78
2015	○	32	377,768.8	728,812.5	28,105.31	22.97	367.31
2016	×	4,656	455,135.3	777,207.6	28,781.95	21.50	500.96
2016	○	21	573,929.4	1,260,737	24,357.3	14.29	910.19

주: 기타 기업 제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7> KED 병합 후 연도별 우리사주 설립기업 기초 통계(소기업과 중기업)

(단위: 개, 백만원, 년, 명)

연도	우리사주 설립 여부	기업 수	평균 매출액	평균 총자산	평균 영업이익	평균 업력	평균 순수 피보험자 수
2010	×	191,116	5,082.55	5,403.43	213.31	8.62	17.09
2010	○	58	21,972.64	27,157.82	3,326.65	11.16	67.19
2011	×	185,803	5,615.48	6,049.42	230.37	8.91	18.22
2011	○	58	30,729.29	31,054.68	3,342.07	9.71	99.39
2012	×	187,349	5,684.53	6,222.36	222.39	9.27	19.09
2012	○	36	41,460.58	518,051.70	11,647.23	12.92	92.64
2013	×	177,785	6,002.26	6,161.74	247.70	9.85	20.35
2013	○	43	34,619.00	39,260.85	4,535.09	12.60	90.74
2014	×	158,022	6,459.10	6,112.64	272.66	10.61	21.74
2014	○	49	26,013.89	31,208.49	2,567.59	12.88	78.58
2015	×	120,744	8,010.29	7,667.41	362.17	11.85	26.14
2015	○	80	25,908.21	37,255.41	1,910.47	13.30	88.60
2016	×	96,793	9,447.51	9,424.82	459.00	12.69	29.26
2016	○	92	35,483.27	50,031.07	2,439.53	14.77	98.42

주: 소상공인 제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효과성 정량 평가

#### 가. 평가방법론

□ 본 절에서는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사주조합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투자, 고용 등 산출지표와 수익성 관련 결과지표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로 평가함

○ 고정효과패널모형은 개별 기업의 고정적인 효과와 연도의 고정적인 효과를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고정효과패널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의 과거 값이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적패널모형 등에 비해 강건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짐

□ 1기간 분석을 위한 예시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시점을 통제하여 2기간과 3기간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함

$$\Delta y_{i,t} = \alpha + \beta P_{i,t} + x_{i,t-1}\gamma + \nu_i + v_t + \epsilon_{i,t}$$

$\Delta y_{i,t}$ : 기업 i의 t-1연도부터 t연도까지의 성과지표 증분(피설명변수)

$P_{i,t}$ : 기업 i에 대한 t연도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여부

$x_{i,t-1}$ : 기업 i의 t-1연도의 특성

$\nu_i$ : 기업고정효과

$v_t$ : 시간고정효과

#### 나. 투자평가: 총자산 증분

-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투자를 증가시켰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총자산 증분을 성과 지표로 하여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증가가 확인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에 무관하게 총자산이 유의하게 증가함

<표 IV-8>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총자산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1기간 총자산 변화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설명변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우리사주 설립 여부	20,678 (35,743)	3,068** (1,387)	8,101** (3,672)
전기 영업이익	0.561*** (0.0245)	0.597*** (0.0177)	0.559*** (0.00496)
전기 매출액	-0.197*** (0.00549)	-0.103*** (0.00441)	-0.196*** (0.00111)
2012년	-9,663 (7,588)	-65.17 (90.30)	-291.1 (272.5)
2013년	-2,888 (7,589)	-77.34 (94.23)	-47.41 (283.8)
2014년	2,573 (7,568)	-104.9 (97.36)	174.9 (292.7)
2015년	11,808 (7,558)	-45.71 (102.9)	684.6** (308.3)
2016년	7,643 (7,607)	-15.76 (109.4)	638.6* (326.6)
상수	110,309*** (5,801)	1,024*** (71.07)	5,043*** (202.4)
관측치 수	26,900	804,021	830,921
기업 수	5,195	241,315	246,504
결정계수	0.059	0.002	0.053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 영업이익과 매출액, 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패널모형 분석 결과 중소기업 총자산 증분이 1년간 대조군 기업 대비 30억 6,800만원(유의수준 5%에서 유의), 2년간 30억 4,900만원(유의수준 10%에서 유의), 3년간 36억 9,400만원(유의수준 1%에서 유의) 더 높음
-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유의한 증분이 확인되지 않음

<표 IV-9>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총자산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2기간 총자산 변화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설명변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전기 우리사주 설립 여부	3,912	3,049*	4,389
	(47,269)	(1,808)	(5,469)
2기전 영업이익	0.180***	0.525***	0.177***
	(0.0337)	(0.0263)	(0.00722)
2기전 매출액	-0.289***	-0.291***	-0.287***
	(0.00774)	(0.00665)	(0.00166)
2013년	530.5	77.61	119.9
	(9,128)	(108.3)	(380.7)
2014년	3,528	69.55	271.1
	(9,105)	(112.6)	(395.0)
2015년	16,306*	183.2	982.6**
	(9,121)	(118.6)	(414.3)
2016년	25,030***	361.5***	1,665***
	(9,165)	(125.1)	(435.5)
상수	184,283***	2,873***	9,624***
	(7,109)	(88.24)	(278.8)
관측치 수	21,610	558,436	580,046
기업 수	4,856	184,816	189,667
결정계수	0.090	0.005	0.083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0>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총자산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3기간 총자산 변화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설명변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2기전 우리사주 설립 여부	48,849	3,694***	16,564**
	(57,253)	(910.0)	(6,730)
3기전 영업이익	-0.368***	0.161***	-0.370***
	(0.0382)	(0.0138)	(0.00840)
3기전 매출액	-0.345***	-0.0858***	-0.343***
	(0.00809)	(0.00358)	(0.00178)
2014년	-3,097	-150.4***	-46.87
	(8,732)	(47.06)	(401.4)
2015년	7,456	-127.3**	583.2
	(8,743)	(49.65)	(421.7)
2016년	16,104*	-41.43	1,287***
	(8,815)	(52.40)	(442.6)
상수	256,285***	2,230***	14,866***
	(6,878)	(40.87)	(288.8)
관측치 수	16,819	379,542	396,361
기업 수	4,637	138,255	142,888
결정계수	0.219	0.003	0.216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 다. 고용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분

-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기업 고용영향 평가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분을 성과지표로 하여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증가가 확인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에 무관하게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함
  - 총자산과 매출액, 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패널모형 분석 결과, 우리사주 설립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 제외)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분이 1년간 대조군 기업 대비 4.05명(유의수준 1%에서 유의), 2년간 5.52명(유의수준 1%에서 유의), 3년간 4.26명(유의수준 5%에서 유의) 더 높음
  -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유의한 증분이 확인되지 않음

<표 IV-11>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고용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명)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1기간 고용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우리사주 설립 여부	-13.64 (24.22)	4.047*** (0.941)	-0.587 (2.486)
전기 총자산	-2.27e-05*** (1.92e-06)	-7.51e-07 (8.06e-07)	-2.27e-05*** (3.87e-07)
전기 매출액	2.52e-05*** (3.58e-06)	-3.79e-05*** (2.82e-06)	2.43e-05*** (7.29e-07)
2012년	-10.83** (5.191)	-0.473*** (0.0635)	-0.847*** (0.191)
2013년	-9.239* (5.187)	-0.777*** (0.0660)	-1.137*** (0.198)
2014년	-13.03** (5.172)	-1.149*** (0.0679)	-1.662*** (0.203)
2015년	-19.19*** (5.165)	-1.246*** (0.0714)	-2.047*** (0.213)
2016년	-21.16*** (5.206)	-1.475*** (0.0757)	-2.424*** (0.225)
상수	31.84*** (4.002)	1.704*** (0.0501)	2.508*** (0.142)
관측치 수	25,675	752,925	778,600
기업 수	4,959	222,051	227,004
결정계수	0.008	0.001	0.007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2>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고용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명)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2기간 고용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전기 우리사주 설립 여부	-5.434 (33.46)	5.521*** (1.487)	1.552 (3.905)
2기전 총자산	-3.26e-05*** (3.46e-06)	-5.48e-05*** (3.63e-06)	-3.37e-05*** (7.55e-07)
2기전 매출액	7.27e-05*** (5.18e-06)	-0.000180*** (5.13e-06)	7.11e-05*** (1.13e-06)
2013년	-11.11* (6.494)	-0.575*** (0.0916)	-1.212*** (0.279)
2014년	-14.80** (6.474)	-1.213*** (0.0949)	-2.119*** (0.288)
2015년	-26.76*** (6.482)	-1.595*** (0.0995)	-3.177*** (0.301)
2016년	-35.60*** (6.517)	-1.716*** (0.105)	-3.925*** (0.316)
상수	36.04*** (5.123)	4.058*** (0.0759)	3.657*** (0.205)
관측치 수	20,625	526,950	547,575
기업 수	4,635	172,442	177,072
결정계수	0.015	0.007	0.012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3>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고용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명)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과설명변수: 3기간 고용 변화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설명변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2기전 우리사주 설립 여부	-6.123 (44.34)	4.258** (1.980)	1.872 (5.379)
3기전 총자산	-0.000109*** (9.29e-06)	-0.000197*** (7.20e-06)	-0.000110*** (2.13e-06)
3기전 매출액	6.22e-05*** (7.40e-06)	-0.000351*** (7.23e-06)	6.08e-05*** (1.70e-06)
2014년	-9.492 (6.745)	-0.775*** (0.105)	-1.571*** (0.327)
2015년	-19.76*** (6.746)	-1.315*** (0.110)	-2.823*** (0.342)
2016년	-30.98*** (6.807)	-1.568*** (0.116)	-3.945*** (0.359)
상수	97.29*** (5.947)	7.237*** (0.0988)	7.759*** (0.238)
관측치 수	16,053	359,869	375,922
기업 수	4,428	130,552	134,976
결정계수	0.014	0.019	0.012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 라. 수익성 평가: 영업이익, 총자산영업이익률, 인당영업이익

-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기업 수익성 효과 평가를 위해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확인됨
  -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증분이 감소하는 경우도 확인되며,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총자산과 매출액, 연도고정효과와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패널모형 분석 결과, 우리사주 설립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은 설립 후 영업이익 증분은 1년간 대조군 기업 대비 4억 1,200만원 높게 나타나지만(유의수준 1%에서

유의), 2년간 증분은 오히려 14억 1,700만원 낮으며(유의수준 1%에서 유의), 3년간 증분도 7억 9,900만원 더 낮음(유의수준 1%에서 유의)

- 총자산영업이익률 증분의 경우 우리사주 설립 중소기업의 경우 1년간 대조군 기업 대비 3.22%p(유의수준 5%에서 유의), 2년간 5.86%p(유의수준 1%에서 유의), 3년간 8.12%p 더 낮음(유의수준 1%에서 유의)
- 인당영업이익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음

<표 IV-14>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1기간 영업이익 변화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설명변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우리사주 설립 여부	1,992	411.8***	869.4
	(11,771)	(158.5)	(1,154)
전기 총자산	-0.00462***	-0.0225***	-0.00468***
	(0.000945)	(0.000136)	(0.000181)
전기 매출액	-0.0863***	-0.0966***	-0.0860***
	(0.00176)	(0.000471)	(0.000340)
2012년	3,792	45.87***	160.3*
	(2,498)	(10.31)	(85.67)
2013년	7,489***	87.67***	335.0***
	(2,498)	(10.76)	(89.23)
2014년	7,282***	118.6***	377.4***
	(2,491)	(11.12)	(92.02)
2015년	13,056***	173.9***	672.2***
	(2,488)	(11.75)	(96.94)
2016년	12,890***	263.9***	779.0***
	(2,509)	(12.49)	(102.7)
상수	34,322***	728.1***	1,619***
	(1,923)	(8.096)	(63.64)
관측치 수	26,900	804,021	830,921
기업 수	5,195	241,315	246,504
결정계수	0.124	0.137	0.122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5>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2기간 영업이익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전기 우리사주 설립 여부	-9,111 (17,066)	-1,417*** (163.4)	-3,248* (1,908)
2기전 총자산	-0.0244*** (0.00180)	-0.0185*** (0.000396)	-0.0233*** (0.000372)
2기전 매출액	-0.156*** (0.00269)	-0.143*** (0.000555)	-0.156*** (0.000557)
2013년	10,244*** (3,295)	102.6*** (9.788)	525.9*** (132.8)
2014년	14,511*** (3,285)	145.6*** (10.18)	797.8*** (137.8)
2015년	20,466*** (3,291)	231.5*** (10.72)	1,209*** (144.6)
2016년	28,568*** (3,310)	339.0*** (11.32)	1,779*** (152.0)
상수	70,403*** (2,595)	1,065*** (8.047)	3,649*** (97.32)
관측치 수	21,610	558,436	580,046
기업 수	4,856	184,816	189,667
결정계수	0.241	0.178	0.238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6>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3기간 영업이익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2기전 우리사주 설립 여부	2,094 (20,469)	-798.8*** (216.3)	-740.3 (2,405)
3기전 총자산	-0.121*** (0.00439)	-0.0550*** (0.000773)	-0.118*** (0.000962)
3기전 매출액	-0.103*** (0.00350)	-0.0997*** (0.000773)	-0.104*** (0.000768)
2014년	10,906*** (3,121)	102.4*** (11.19)	635.2*** (143.5)
2015년	20,845*** (3,122)	191.6*** (11.81)	1,291*** (150.7)
2016년	29,636*** (3,151)	302.4*** (12.49)	1,955*** (158.2)
상수	98,605*** (2,745)	1,087*** (10.38)	5,524*** (104.1)
관측치 수	16,819	379,542	396,361
기업 수	4,637	138,255	142,888
결정계수	0.328	0.100	0.322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7>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p)

기업 규모 피설명변수: 1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설명변수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우리사주 설립 여부	0.162 (1.370)	-3.218** (1.630)	-2.627* (1.388)
전기 총자산	5.24e-08 (1.10e-07)	7.39e-06*** (1.40e-06)	2.77e-07 (2.17e-07)
전기 매출액	-6.43e-07*** (2.05e-07)	-0.000168*** (4.84e-06)	-1.80e-06*** (4.09e-07)
2012년	-0.300 (0.291)	-0.547*** (0.106)	-0.637*** (0.103)
2013년	0.250 (0.291)	-0.736*** (0.111)	-0.833*** (0.107)
2014년	0.434 (0.290)	-1.045*** (0.114)	-1.171*** (0.111)
2015년	-0.0316 (0.290)	-1.241*** (0.121)	-1.425*** (0.117)
2016년	0.793*** (0.292)	-1.291*** (0.128)	-1.504*** (0.123)
상수	-0.0874 (0.224)	1.812*** (0.0833)	0.848*** (0.0765)
관측치 수	26,899	803,918	830,817
기업 수	5,195	241,275	246,464
결정계수	0.001	0.003	0.000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8>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p)

기업 규모 피설명변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설명변수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전기 우리사주 설립 여부	-3.005* (1.620)	-5.857*** (1.734)	-5.287*** (1.446)
2기전 총자산	6.51e-08 (1.71e-07)	2.33e-05*** (4.20e-06)	4.65e-07* (2.82e-07)
2기전 매출액	-7.73e-07*** (2.55e-07)	-0.000268*** (5.89e-06)	-2.09e-06*** (4.22e-07)
2013년	0.298 (0.313)	-0.479*** (0.104)	-0.627*** (0.101)
2014년	0.879*** (0.312)	-0.822*** (0.108)	-0.996*** (0.104)
2015년	0.685** (0.312)	-1.085*** (0.114)	-1.347*** (0.110)
2016년	1.406*** (0.314)	-1.184*** (0.120)	-1.500*** (0.115)
상수	-0.578** (0.246)	1.900*** (0.0854)	0.291*** (0.0737)
관측치 수	21,609	558,385	579,994
기업 수	4,855	184,792	189,642
결정계수	0.002	0.006	0.001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9>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p)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3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2기전 우리사주 설립 여부	-3.763* (2.063)	-8.117*** (1.976)	-7.071*** (1.655)
3기전 총자산	5.06e-07 (4.42e-07)	1.70e-05** (7.06e-06)	1.85e-06*** (6.62e-07)
3기전 매출액	-8.52e-07** (3.52e-07)	-0.000283*** (7.06e-06)	-2.31e-06*** (5.28e-07)
2014년	0.356 (0.315)	-0.488*** (0.102)	-0.673*** (0.0987)
2015년	0.659** (0.315)	-0.723*** (0.108)	-0.971*** (0.104)
2016년	1.455*** (0.318)	-0.899*** (0.114)	-1.221*** (0.109)
상수	-0.950*** (0.277)	1.337*** (0.0949)	-0.575*** (0.0716)
관측치 수	16,819	379,515	396,334
기업 수	4,637	138,246	142,879
결정계수	0.003	0.008	0.001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0>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1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p)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1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우리사주 설립 여부	-43.21 (191.6)	-15.51 (26.54)	-28.45 (29.43)
전기 총자산	8.15e-06 (1.52e-05)	1.69e-05 (2.27e-05)	9.15e-06** (4.58e-06)
전기 매출액	-3.36e-05 (2.84e-05)	-0.00362*** (8.03e-05)	-5.64e-05*** (8.65e-06)
2012년	-43.96 (41.52)	2.563 (1.861)	-1.338 (2.343)
2013년	-24.25 (41.54)	2.766 (1.925)	-1.146 (2.420)
2014년	25.57 (41.43)	-0.932 (1.974)	-3.931 (2.478)
2015년	3.276 (41.38)	-0.401 (2.060)	-5.146** (2.580)
2016년	24.79 (41.74)	4.991** (2.180)	-0.503 (2.721)
상수	36.63 (32.04)	27.14*** (1.471)	5.251*** (1.744)
관측치 수	25,061	706,650	731,711
기업 수	4,870	204,654	209,519
결정계수	0.000	0.004	0.000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1>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2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p)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2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전기 우리사주 설립 여부	-131.4 (246.6)	-20.53 (36.57)	-58.42 (40.99)
2기전 총자산	1.85e-05 (2.55e-05)	0.000499*** (9.01e-05)	2.88e-05*** (7.93e-06)
2기전 매출액	-7.11e-05* (3.83e-05)	-0.00671*** (0.000128)	-0.000102*** (1.19e-05)
2013년	-25.38 (48.46)	6.411*** (2.323)	0.580 (3.013)
2014년	38.49 (48.35)	2.630 (2.395)	-1.911 (3.099)
2015년	56.22 (48.44)	1.946 (2.498)	-3.835 (3.221)
2016년	92.88* (48.73)	7.250*** (2.629)	0.931 (3.376)
상수	21.00 (38.22)	47.99*** (1.935)	5.102** (2.216)
관측치 수	20,108	499,820	519,928
기업 수	4,555	160,739	165,290
결정계수	0.001	0.008	0.000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22> 우리사주 설립 이후 기업 규모별 3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고정효과패널)

(단위: 백만원, %p)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피설명변수: 3기간 인당영업이익 변화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2기전 우리사주 설립 여부	-151.8 (306.1)	-9.607 (38.77)	-55.26 (48.03)
3기전 총자산	7.63e-05 (6.44e-05)	-0.000194 (0.000143)	0.000108*** (1.91e-05)
3기전 매출액	-7.60e-05 (5.13e-05)	-0.00754*** (0.000143)	-0.000110*** (1.53e-05)
2014년	5.826 (47.21)	5.181** (2.105)	-1.186 (2.989)
2015년	44.11 (47.25)	4.983** (2.199)	-2.081 (3.108)
2016년	100.1** (47.69)	7.305*** (2.318)	-0.509 (3.254)
상수	-28.74 (41.56)	62.44*** (1.995)	2.512 (2.179)
관측치 수	15,619	344,810	360,429
기업 수	4,333	124,017	128,347
결정계수	0.001	0.013	0.000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 )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한국기업데이터(2020), 고용노동부(2020)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 4. 효과성 평가 요약

- 기업 생태계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은 전체 대비 소수에 그치고 있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생태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전체 기업의 수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도 10~20만개에 달하지만, 연간 10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사주조합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기업은 대분류 기준 제조업, 소분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등 2010년대 기준 우량 또는 성장산업 분야에 다수 포진한 것이 확인됨
  - 우리사주조합 지원 취지인 중업원의 인센티브 부여 측면에서 일관적이며 긍정적인 산업분포로 볼 수 있음
  
- 효과성 평가 결과, 최종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투자와 고용 등 중간 산출지표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는 투자와 고용에서 유의한 영향이 더 잘 확인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유의한 정량적 효과는 거의 확인되지 않음
  - 중·단기 수익성 효과성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지만,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 생산성이 낮은 것은 해당 시기 우리 경제 공통의 문제로서 본 제도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효과성 검증에서 우리사주조합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더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오므로, 활성화 목표가 일정 수준 이상 달성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V. 설문조사





## V. 설문조사

### 1. 기업(경영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총 162개이며, 이 중 현재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27개로 응답한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수 대비 약 7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48)</sup>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중 폐지 및 중단 기업은 총 35개임<sup>49)</sup>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의 대조군으로 조사한 우리사주조합 미설립기업 중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총 51개임<sup>50)</sup>

#### 가. 우리사주조합제도 운영 중인 기업(Base: n=127)

##### 1) 운영 현황

###### 가) 조합원 수

-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조합원 수는 평균 276.7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평균 211.4명으로 나타남(우리사주조합원 수의 약 76.4%)
  - 회사 설립연도, 근로자 수, 업종 등 기업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큰 편임
  
-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우리사주 조합원 수가 평균 7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보유 조합원 수도 평균 712.4명으로 우리사주 조합원 수의 약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48)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특성은 <부표 5> 참조

49)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특성은 <부표 6> 참조

50)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특성은 <부표 7> 참조

- 2000년대 설립한 기업은 평균 우리사주조합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반면, 주식 보유 조합원 수의 비율은 5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우리사주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식 보유 조합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우리사주 조합원 수는 월등히 많으나, 주식 보유 조합원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이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그 이전에 도입한 기업에 비해 우리사주 조합원 수도 많고, 주식 보유 조합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 우리사주 조합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우리사주 조합원 수 (A)		주식 보유 조합원 수 (B)		주식 보유 조합원 수 비율 (B/A)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	276.7	1,159.4	211.4	1,114.4	76.4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22)	785.2	2,590.5	712.4	2,595.4	90.7
	1990년대	(19)	105.0	88.3	80.1	83.7	76.3
	2000년대	(52)	238.9	611.5	131.9	364.1	55.2
	2010년 이후	(34)	101.4	237.5	82.1	204.6	81.0
근로자 수	50인 미만	(24)	19.7	9.9	13.9	7.7	70.6
	50~100인 미만	(32)	44.5	19.1	34.2	24.4	76.9
	100~200인 미만	(31)	75.7	46.2	50.9	40.3	67.2
	200~500인 미만	(23)	167.1	114.2	143.7	108.3	86.0
	500인 이상	(17)	1,591.2	2,902.4	1,208.0	2,920.0	75.9
업종	1차 산업	(1)	54.0	-	54.0	-	100.0
	제조업	(78)	186.2	447.5	123.7	317.0	66.4
	서비스업	(48)	428.4	1,799.2	357.1	1,769.1	83.4
상장 여부	상장	(74)	408.4	1,504.9	312.6	1,452.4	76.5
	비상장	(53)	92.7	134.8	70.0	112.9	75.5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89)	54.7	51.3	41.2	48.6	75.3
	중견기업	(31)	357.0	538.2	196.2	189.4	55.0
	대기업	(7)	2,743.6	4,344.5	2,441.9	4,430.6	89.0
우리사주 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7)	273.4	559.5	116.6	175.3	42.6
	2016~2017년	(41)	148.9	285.5	111.9	201.8	75.2
	2018년 이후	(59)	367.0	1,644.3	324.0	1,622.3	88.3

나) 보유 주식 수

-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수는 평균 32만 6,823.7주이며, 특히 회사 설립연도가 빠를수록, 우리사주제도 도입연도가 최근일수록 조합 보유 주식 수가 많은 경향을 보임
- 조합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평균 약 3.9%이며, 1990년대 이전 설립기업, 근로자수 50인 미만, 비상장기업의 지분율이 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표 V-2>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현황(평균)

(단위: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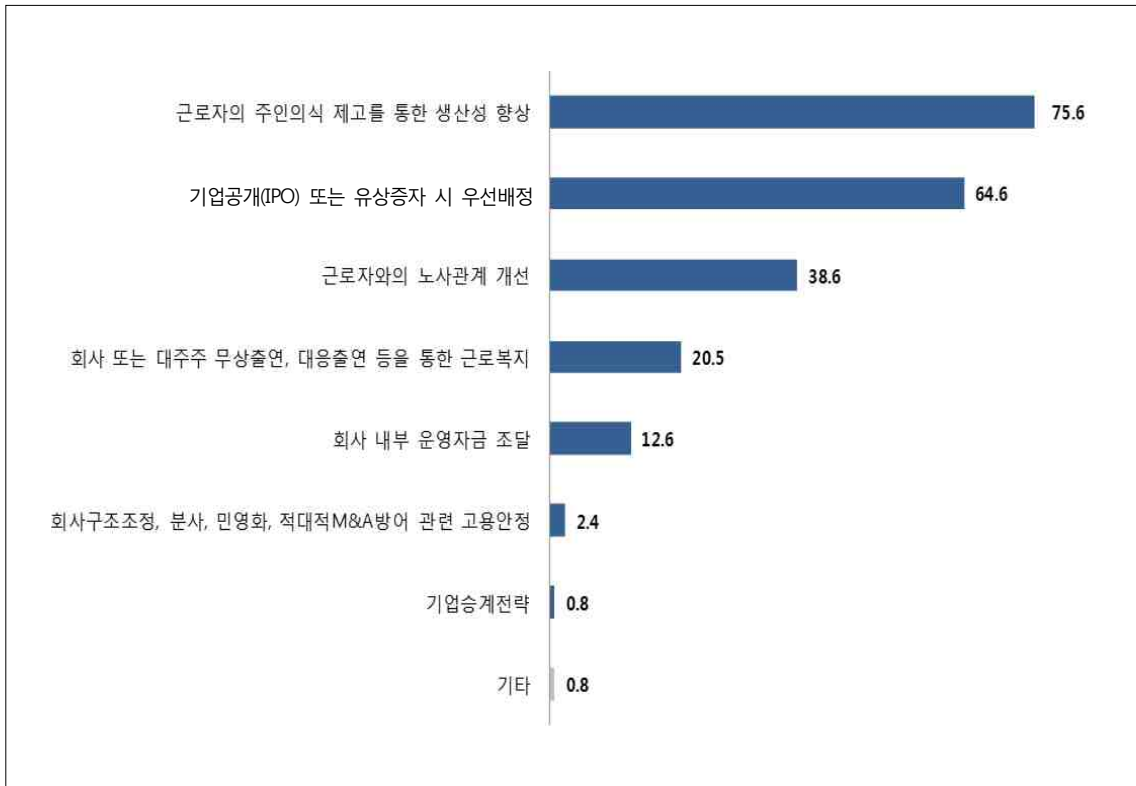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조합 보유 주식 수	조합 보유 주식 지분율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의 비중	우리사주 출연금 중 조합원 출연 자금의 비중	
전체	(127)	326,823.7	3.94	1.35	60.4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22)	506,528.3	5.50	0.68	52.6
	1990년대	(19)	336,193.1	5.16	2.42	61.9
	2000년대	(52)	280,847.7	2.94	1.35	60.2
	2010년 이후	(34)	275,624.8	3.79	1.18	65.1
근로자 수	50인 미만	(24)	54,198.4	5.42	0.38	61.6
	50~100인 미만	(32)	151,575.0	4.34	2.09	58.1
	100~200인 미만	(31)	97,785.2	3.23	2.13	61.6
	200~500인 미만	(23)	381,678.7	3.04	1.13	50.0
	500인 이상	(17)	1,385,029.4	3.65	0.18	75.1
업종	1차 산업	(1)	21,978.0	1.00	0.00	1.0
	제조업	(78)	305,983.0	4.60	1.55	54.9
	서비스업	(48)	367,040.9	2.94	1.04	70.8
상장 여부	상장	(74)	380,507.8	2.36	0.84	61.8
	비상장	(53)	251,868.6	6.15	2.06	58.5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89)	123,062.2	4.34	1.70	56.2
	중견기업	(31)	472,798.3	3.19	0.65	63.7
	대기업	(7)	2,271,047.6	2.29	0.00	100.0
우리사주 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7)	180,547.9	3.26	1.30	48.8
	2016~2017년	(41)	198,431.3	4.61	1.83	56.6
	2018년 이후	(59)	482,985.4	3.80	1.03	68.4

#### 다) 도입 목적

-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대해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음
  -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64.6%), ‘근로자와의 노사관계 개선’(3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 설립연도가 2010년 이후인 경우, 우리사주제도 도입연도가 2016~2017년인 경우가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100~200인 미만인 기업(80.6%)과 상장기업(75.7%)의 경우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V-1]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중복 응답)

(단위: %)



<표 V-3>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중복 응답)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근로자의 주인 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 공개 (IPO) 또는 유상 증자 시 우선 배정	근로자 와의 노사 관계 개선	회사 또는 대주주 무상, 대응출연 등을 통한 근로복지	회사 내부 운영자금 조달	회사 구조 조정, 분사, 민영화, 적대적 M&A 방어 관련 고용 안정	기업 승계 전략	기타	
전체	(127)	75.6	64.6	38.6	20.5	12.6	2.4	0.8	0.8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22)	63.6	54.5	13.6	22.7	22.7	4.5	0.0	0.0
	1990년대	(19)	68.4	57.9	57.9	15.8	15.8	5.3	0.0	0.0
	2000년대	(52)	76.9	71.2	40.4	26.9	9.6	1.9	1.9	1.9
	2010년 이후	(34)	85.3	64.7	41.2	11.8	8.8	0.0	0.0	0.0
근로자 수	50인 미만	(24)	75.0	41.7	37.5	29.2	16.7	0.0	4.2	0.0
	50~100인 미만	(32)	87.5	65.6	37.5	25.0	9.4	3.1	0.0	0.0
	100~200인 미만	(31)	71.0	80.6	45.2	6.5	0.0	0.0	0.0	0.0
	200~500인 미만	(23)	73.9	65.2	43.5	21.7	26.1	4.3	0.0	4.3
	500인 이상	(17)	64.7	64.7	23.5	23.5	17.6	5.9	0.0	0.0
업종	1차 산업	(1)	100.0	0.0	100.0	0.0	100.0	0.0	0.0	0.0
	제조업	(78)	79.5	69.2	39.7	24.4	11.5	3.8	1.3	1.3
	서비스업	(48)	68.8	58.3	35.4	14.6	12.5	0.0	0.0	0.0
상장여부	상장	(74)	73.0	75.7	35.1	14.9	6.8	4.1	0.0	1.4
	비상장	(53)	79.2	49.1	43.4	28.3	20.8	0.0	1.9	0.0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89)	76.4	65.2	38.2	21.3	12.4	2.2	1.1	0.0
	중견기업	(31)	71.0	64.5	38.7	16.1	16.1	3.2	0.0	3.2
	대기업	(7)	85.7	57.1	42.9	28.6	0.0	0.0	0.0	0.0
우리사주 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7)	66.7	51.9	40.7	37.0	11.1	3.7	3.7	0.0
	2016~2017년	(41)	80.5	63.4	43.9	17.1	14.6	2.4	0.0	2.4
	2018년 이후	(59)	76.3	71.2	33.9	15.3	11.9	1.7	0.0	0.0

## 2) 우리사주 추가 제공 계획 및 무상출연 장애요인

- 향후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없음’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기간 내에 제공 예정’은 10.2%, ‘단기간(3년 이내) 제공 예정’은 3.1%로 나타남

<표 V-4> 우리사주 추가 제공 계획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장기간 내에 제공 예정	단기간 (3년 이내) 내에 제공 예정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127)	10.2	3.1	35.4	51.2

-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기업의 자금부족’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17.3%), ‘회사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미미’(12.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V-5>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의 장애요인

(단위: %)

내용	응답비율
기업의 자금부족	36.2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17.3
회사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미미	12.6
근로자의 단기 보유 행태	11.8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용 부담	11.0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담	2.4
기타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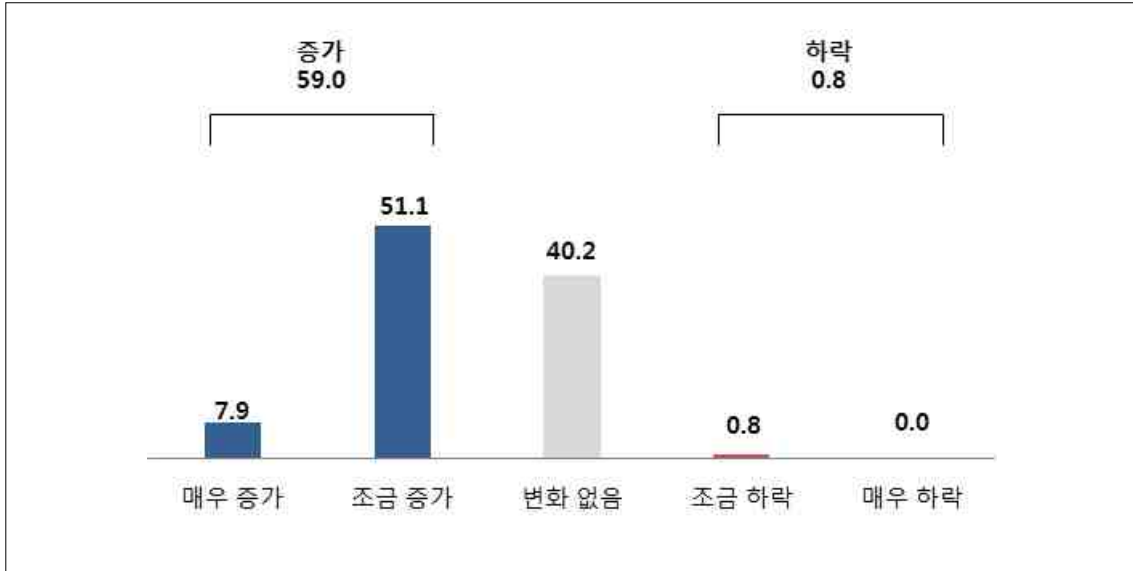
### 3) 우리사주제도 효과성(생산성 기여도 및 노사관계 등)

#### 가) 생산성 기여도

-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변화 없음’이 40.2%, ‘하락’이 0.8% 순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이전에 설립한 기업이 2000년대 이후 설립기업에 비해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인 기업이 200인 이상인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우리사주제도 도입연도가 2017년 이전인 기업이 2018년 이후에 도입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그림 V-2]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생산성 기여도

(단위: %)



<표 V-6>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생산성 기여도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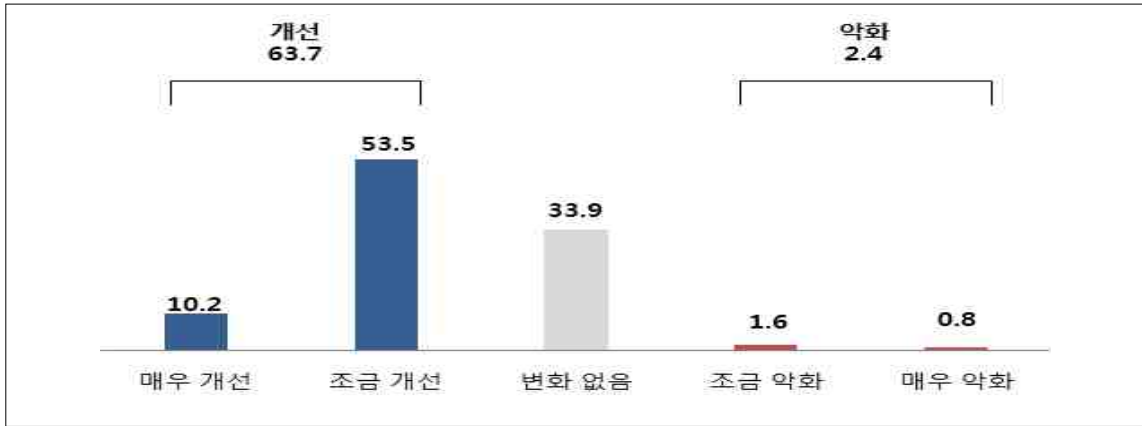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매우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하락	매우 하락	종합		
							증가	하락	
전체	(127)	7.9	51.2	40.2	0.8	0.0	59.0	0.8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22)	0.0	59.1	40.9	0.0	0.0	59.1	0.0
	1990년대	(19)	10.5	57.9	31.6	0.0	0.0	68.4	0.0
	2000년대	(52)	7.7	48.1	42.3	1.9	0.0	55.8	1.9
	2010년 이후	(34)	11.8	47.1	41.2	0.0	0.0	58.8	0.0
근로자 수	50인 미만	(24)	16.7	50.0	33.3	0.0	0.0	66.7	0.0
	50~100인 미만	(32)	6.3	53.1	40.6	0.0	0.0	59.4	0.0
	100~200인 미만	(31)	6.5	61.3	29.0	3.2	0.0	67.8	3.2
	200~500인 미만	(23)	8.7	39.1	52.2	0.0	0.0	47.8	0.0
	500인 이상	(17)	0.0	47.1	52.9	0.0	0.0	47.1	0.0
업종	1차 산업	(1)	0.0	0.0	100.0	0.0	0.0	0.0	0.0
	제조업	(78)	5.1	52.6	42.3	0.0	0.0	57.7	0.0
	서비스업	(48)	12.5	50.0	35.4	2.1	0.0	62.5	2.1
상장 여부	상장	(74)	12.2	48.6	39.2	0.0	0.0	60.8	0.0
	비상장	(53)	1.9	54.7	41.5	1.9	0.0	56.6	1.9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89)	9.0	50.6	39.3	1.1	0.0	59.6	1.1
	중견기업	(31)	6.5	48.4	45.2	0.0	0.0	54.8	0.0
	대기업	(7)	0.0	71.4	28.6	0.0	0.0	71.4	0.0
우리사주 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7)	11.1	48.1	40.7	0.0	0.0	59.3	0.0
	2016~2017년	(41)	2.4	58.5	36.6	2.4	0.0	61.0	2.4
	2018년 이후	(59)	10.2	47.5	42.4	0.0	0.0	57.6	0.0

나)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에 대해 ‘관계 개선’이 63.7%, ‘변화 없음’이 33.9%, ‘관계 악화’ 2.4%의 비율로 나타남

[그림 V-3]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단위: %)



<표 V-7>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매우 개선	조금 개선	변화 없음	조금 악화	매우 악화	종합		
							개선	악화	
전체	(127)	10.2	53.5	33.9	1.6	0.8	63.7	2.4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22)	4.5	50.0	40.9	4.5	0.0	54.5	4.5
	1990년대	(19)	10.5	63.2	26.3	0.0	0.0	73.7	0.0
	2000년대	(52)	9.6	50.0	38.5	1.9	0.0	59.6	1.9
	2010년 이후	(34)	14.7	55.9	26.5	0.0	2.9	70.6	2.9
근로자 수	50인 미만	(24)	16.7	50.0	33.3	0.0	0.0	66.7	0.0
	50~100인 미만	(32)	12.5	62.5	25.0	0.0	0.0	75.0	0.0
	100~200인 미만	(31)	12.9	51.6	32.3	3.2	0.0	64.5	3.2
	200~500인 미만	(23)	4.3	52.2	43.5	0.0	0.0	56.5	0.0
	500인 이상	(17)	0.0	47.1	41.2	5.9	5.9	47.1	11.8
업종	1차 산업	(1)	0.0	0.0	100.0	0.0	0.0	0.0	0.0
	제조업	(78)	6.4	55.1	35.9	1.3	1.3	61.5	2.6
	서비스업	(48)	16.7	52.1	29.2	2.1	0.0	68.8	2.1
상장 여부	상장	(74)	16.2	48.6	32.4	1.4	1.4	64.8	2.8
	비상장	(53)	1.9	60.4	35.8	1.9	0.0	62.3	1.9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89)	12.4	48.3	38.2	1.1	0.0	60.7	1.1
	중견기업	(31)	6.5	64.5	25.8	3.2	0.0	71.0	3.2
	대기업	(7)	0.0	71.4	14.3	0.0	14.3	71.4	14.3
우리사주 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7)	14.8	51.9	33.3	0.0	0.0	66.7	0.0
	2016~2017년	(41)	4.9	65.9	22.0	4.9	2.4	70.7	7.3
	2018년 이후	(59)	11.9	45.8	42.4	0.0	0.0	57.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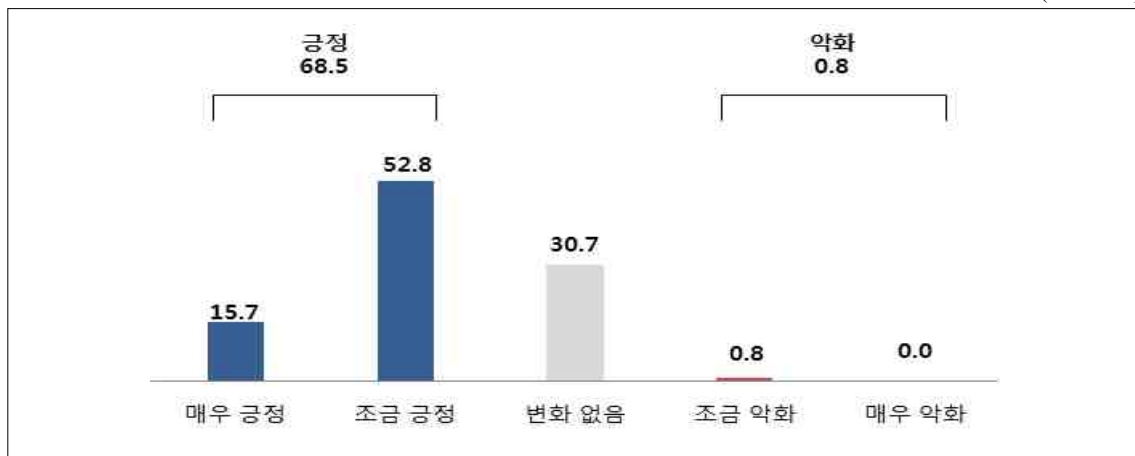
- 근로자 수 50~100인 미만 기업, 서비스업, 중견 및 대기업에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 직원 근속 기여도

- 우리사주제도가 직원 근속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68.5%, ‘변화 없음’ 30.7%,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0.8%로 나타남
  - 회사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제조업(67.9%)에 비해 서비스업(70.8%)이 우리사주제도의 직원 근속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견 및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우리사주제의 직원 근속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사주제도 도입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17년에 도입한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5년 이전에 도입한 기업에 비해 2018년 이후에 도입한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V-4] 우리사주제도의 직원 근속 기여도

(단위: %)



<표 V-8> 우리사주제도의 직원 근속 기여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매우 긍정	조금 긍정	변화 없음	조금 악화	매우 악화	종합		
							긍정	악화	
전체	(127)	15.7	52.8	30.7	0.8	0.0	68.5	0.8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22)	4.5	72.7	22.7	0.0	0.0	77.3	0.0
	1990년대	(19)	21.1	52.6	26.3	0.0	0.0	73.7	0.0
	2000년대	(52)	13.5	50.0	34.6	1.9	0.0	63.5	1.9
	2010년 이후	(34)	23.5	44.1	32.4	0.0	0.0	67.6	0.0
근로자 수	50인 미만	(24)	29.2	37.5	33.3	0.0	0.0	66.7	0.0
	50~100인 미만	(32)	15.6	62.5	21.9	0.0	0.0	78.1	0.0
	100~200인 미만	(31)	16.1	48.4	32.3	3.2	0.0	64.5	3.2
	200~500인 미만	(23)	4.3	60.9	34.8	0.0	0.0	65.2	0.0
업종	500인 이상	(17)	11.8	52.9	35.3	0.0	0.0	64.7	0.0
	1차 산업	(1)	0.0	0.0	100.0	0.0	0.0	0.0	0.0
	제조업	(78)	12.8	55.1	32.1	0.0	0.0	67.9	0.0
	서비스업	(48)	20.8	50.0	27.1	2.1	0.0	70.8	2.1
상장 여부	상장	(74)	18.9	47.3	33.8	0.0	0.0	66.2	0.0
	비상장	(53)	11.3	60.4	26.4	1.9	0.0	71.7	1.9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89)	19.1	48.3	31.5	1.1	0.0	67.4	1.1
	중견기업	(31)	6.5	64.5	29.0	0.0	0.0	71.0	0.0
	대기업	(7)	14.3	57.1	28.6	0.0	0.0	71.4	0.0
우리사주 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7)	14.8	48.1	37.0	0.0	0.0	63.0	0.0
	2016~2017년	(41)	12.2	63.4	22.0	2.4	0.0	75.6	2.4
	2018년 이후	(59)	18.6	47.5	33.9	0.0	0.0	66.1	0.0

4) 우리사주제도 지속 실시 의향

향후 우리사주제도 지속 실시 의향에 대해 ‘장기간 운영 예정’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단기간(3년 이내) 검토 예정’(7.1%), ‘단기간 이내 폐지 예정’(0.8%) 순으로 나타남

<표 V-9> 우리사주제도 지속 실시 의향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장기간 운영 예정	단기간 (3년 이내) 검토 예정	단기간 이내 폐지 예정	잘 모르겠음
전체	(127)	55.1	7.1	0.8	37.0

나. 우리사주조합제도 폐지 또는 중단 중인 기업<sup>51)</sup>(Base: n=35)

1) 현황 및 최초 도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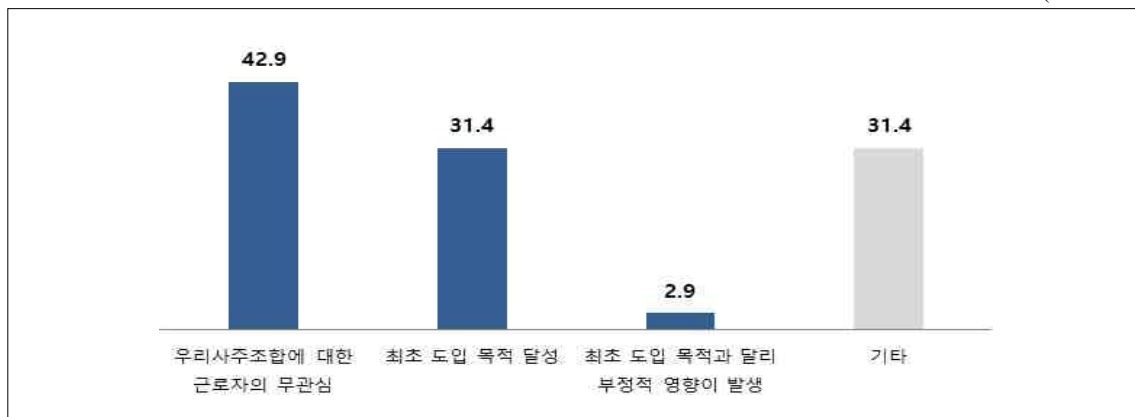
-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기업 3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합을 운영했던 기간은 3년 미만인 기업이 19개(54.3%)로 가장 많았으며, 3~5년이 11개(31.4%), 6~7년이 5개(14.3%)로 나타남
- 우리사주조합을 최초 도입한 목적에 대해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 배정’이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54.3%), ‘근로자와의 노사관계 개선’(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폐지 및 중단 사유

- 우리사주조합을 폐지 및 중단한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무관심’이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최초 도입 목적 달성’ 31.4%, ‘최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발생’ 2.9%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이 31.4%로 나타났는데, ‘IPO 무산’,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을 폐지 및 중단한 것으로 응답함

[그림 V-5]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사유(중복 응답)

(단위: %)



51)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기업은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V-10>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사유(중복 응답)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무관심	최초 도입 목적 달성	최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발생	기타	
전체	(35)	42.9	31.4	2.9	31.4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6)	50.0	33.3	16.7	16.7
	1990년대	(7)	57.1	14.3	0.0	42.9
	2000년대	(17)	35.3	35.3	0.0	35.3
	2010년 이후	(5)	40.0	40.0	0.0	20.0
근로자 수	50인 미만	(9)	33.3	22.2	0.0	44.4
	50~100인 미만	(8)	62.5	37.5	0.0	25.0
	100~200인 미만	(7)	42.9	0.0	0.0	57.1
	200~500인 미만	(8)	50.0	37.5	12.5	12.5
	500인 이상	(3)	0.0	100.0	0.0	0.0
업종	제조업	(25)	44.0	44.0	4.0	16.0
	서비스업	(10)	40.0	0.0	0.0	70.0
상장 여부	상장	(18)	38.9	55.6	0.0	16.7
	비상장	(17)	47.1	5.9	5.9	47.1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6)	42.3	30.8	0.0	34.6
	중견기업	(9)	44.4	33.3	11.1	22.2

### 3) 우리사주조합 재도입 의향

향후 우리사주조합 재도입 의향에 대해 ‘도입 검토 예정 없음’이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11> 우리사주조합 재도입 의향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장기간 내에 검토 예정	단기간 (3년 이내) 검토 예정	도입 검토 예정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35)	11.4	17.1	45.8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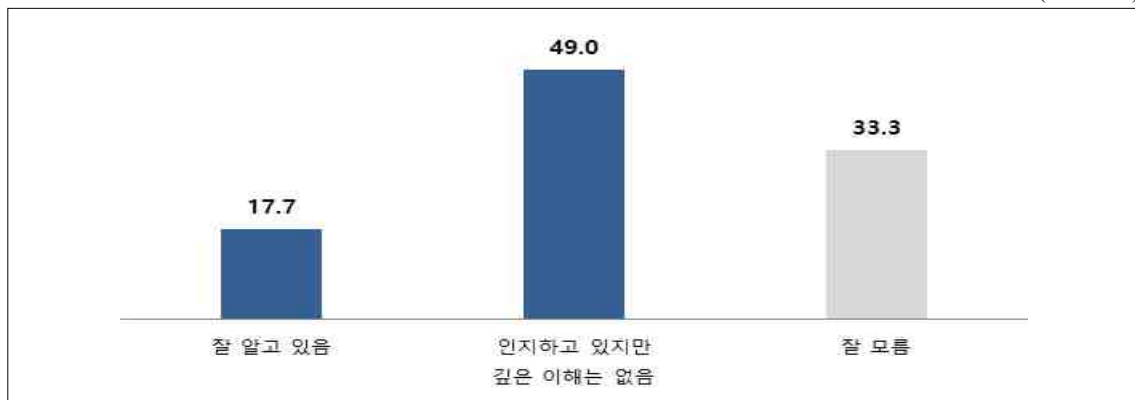
다. 우리사주조합제도 미설립기업(Base: n=51)

1) 제도 인지도

- 우리사주조합 미설립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지만 깊은 이해는 없음’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잘 모름’(33.3%), ‘잘 알고 있음’(1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6] 우리사주제도 인지도

(단위: %)



<표 V-12> 우리사주제도 인지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잘 알고 있음	인지하고 있지만 깊은 이해는 없음	잘 모름	
전체	(51)	17.7	49.0	33.3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10)	20.0	40.0	40.0
	1990년대	(12)	8.3	50.0	41.7
	2000년대	(17)	29.4	47.1	23.5
	2010년 이후	(12)	8.3	58.4	33.3
근로자 수	50인 미만	(26)	19.2	42.3	38.5
	50~100인 미만	(8)	25.0	25.0	50.0
	100~200인 미만	(11)	9.1	63.6	27.3
	200인 이상	(6)	16.7	83.3	0.0
업종	제조업	(16)	18.8	49.9	31.3
	서비스업	(35)	17.1	48.6	34.3
상장 여부	상장	(3)	33.3	66.7	0.0
	비상장	(48)	16.7	47.9	35.4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42)	14.3	50.0	35.7
	중견기업	(4)	25.0	75.0	0.0
	대기업	(5)	40.0	20.0	40.0

## 2) 우리사주조합 미설립 사유 및 도입 의향

- 우리사주조합 미설립 사유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가 낮아서’(33.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경영진의 선호도가 낮아서’(31.4%)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뒤이어 ‘노사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25.5%),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남

<표 V-13> 우리사주조합 미설립 사유(중복 응답)

(단위: %)

내용	응답 비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가 낮아서	33.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경영진의 선호도가 낮아서	31.4
노사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	25.5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	19.6
기업의 자금부족	7.8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용 부담	5.9
회사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미미	5.9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3.9
기타	27.5

- 향후 우리사주조합 설립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립 의향 없음’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14> 우리사주조합 설립 의향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장기간 내에 설립 검토	설립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
전체	(51)	7.8	80.4	11.8

## 2.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근로자 조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기관의 경영진 조사 시 참여한 응답자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총 327명의 근로자가 설문에 응답함<sup>52)</sup>
  - 이 중 우리사주제도 인지자는 총 설문조사 근로자 대상 중 98.8%로 323명이며, 우리사주 취득 경험자는 79.2%인 256명이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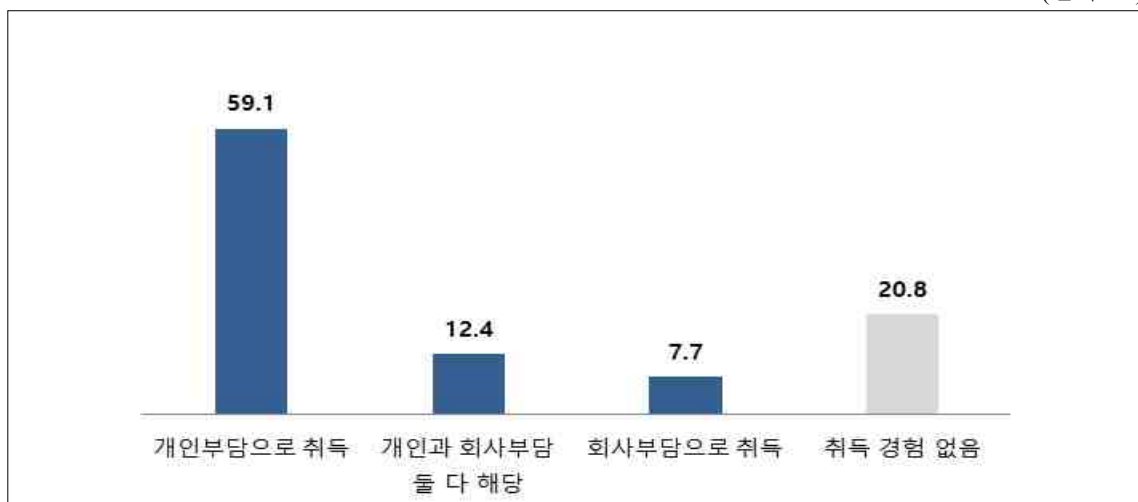
### 가. 우리사주 취득 현황

#### 1) 우리사주 취득 경험(Base: n=323)

- 우리사주 취득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부담으로 취득’이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개인과 회사부담 둘 다 해당’(12.4%), ‘회사부담으로 취득’(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문항 응답자 중 20.8%는 취득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근로자 및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우리사주를 개인부담으로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7] 우리사주 취득 경험

(단위: %)



52) 설문조사에 응답한 근로자 특성은 <부록 표 1-8> 참조

2) 우리사주 취득 방법(Base: n=256)

-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선배정’을 통해 취득했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회사로부터의 매입’(27.7%), ‘회사의 무상출연’(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15> 우리사주 취득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우선배정	회사로부터의 매입	회사의 무상출연	시장매입	퇴직자 주식인수	대주주로부터의 매입
전체	(256)	50.8	27.7	18.0	9.8	5.5	3.9

3) 우리사주 취득 목적(Base: n=256)

- 우리사주를 취득한 목적에 대해 ‘재산 형성’이라는 응답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절세(세제혜택)’(35.2%), ‘경영 참여’(28.9%), ‘일자리 보전’(1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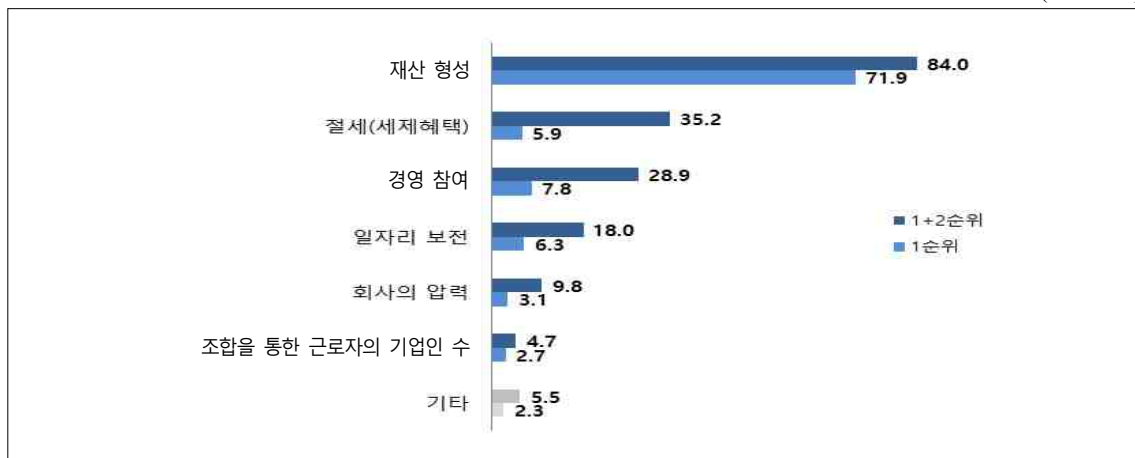
<표 V-16> 우리사주 취득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재산 형성	절세(세제혜택)	경영 참여	일자리 보전	회사의 압력	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인 수	기타
전체 (1순위+2순위)	(256)	84.0	35.2	28.9	18.0	9.8	4.7	5.5
1순위	(256)	71.9	5.9	7.8	6.3	3.1	2.7	2.3

[그림 V-8] 우리사주 취득 목적

(단위: %)



4) **우리사주 평균 보유기간(Base: n=256)**

-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 보유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2~4년 미만’(28.5%), ‘1년 미만’(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우리사주를 2년 미만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7〉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 보유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4년 미만	4~6년 미만	6년 이상
전체	(256)	14.5	45.7	28.5	8.2	3.1

5) **우리사주 취득의 재산 형성 도움(Base: n=256)**

- **우리사주 취득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도움됨’이라는 응답이 38.3%로 ‘도움 안 됨’(36.3%) 대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8〉 **우리사주 취득의 재산 형성 도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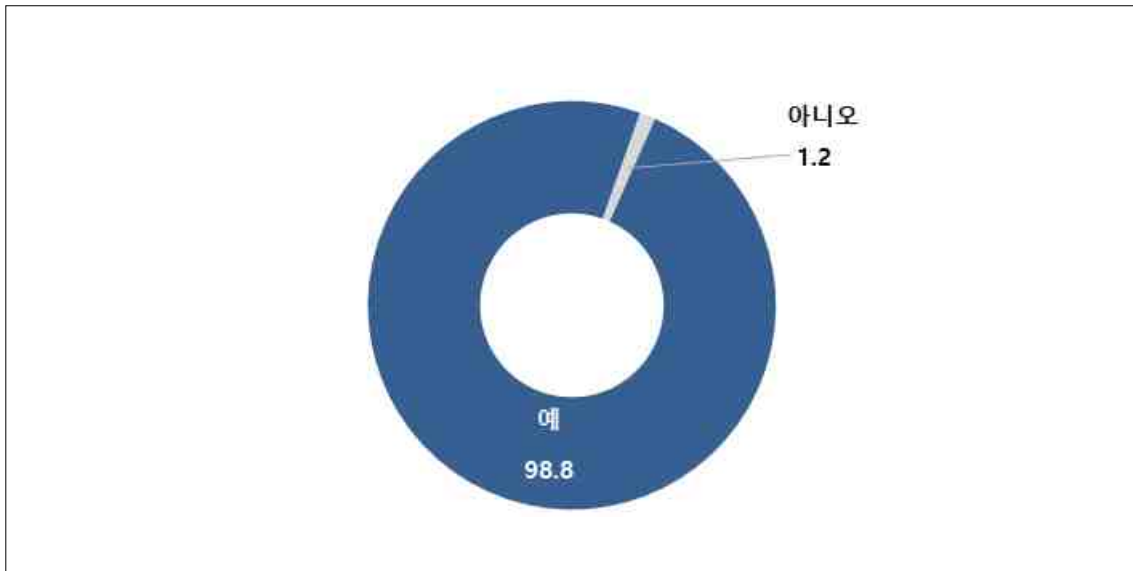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혀 도움이 안 됐음	도움이 안 됐음	유사한 수준	도움이 됐음	크게 도움이 됐음	종합	
							도움 안 됨	도움됨
전체	(256)	12.1	24.2	25.4	28.5	9.8	36.3	38.3

나.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용 인지도(Base: n=327)**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98.8%로, ‘아니오’(1.2%) 대비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룹에서 인지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기타 직무유형(75.0%), 임원(85.7%)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V-9]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용 인지도

(단위: %)



다.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Base: n=323)

- 우리사주제도 인지자(323명)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목적을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이직률 저하, 근로자 생산성 향상, 근로자 경영 참여 기회 제공, 노사협력 제공, 적대적 M&A 방지로 구분하여 조사함
  -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9.5%로, ‘비동의’(8.3%) 대비 높게 나타남
    - 특히 직위 및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6.7%로, ‘비동의’(10.9%) 대비 높게 나타남
    - 특히 50대 및 부장급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및 직원 근로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80%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이직률 저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8.4%로 ‘비동의’(28.8%) 대비 높게 나타남
    - 비상장 및 기업 규모가 작고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2.2%로, ‘비동의’(24.2%) 대비 높게 나타남
  - 비상장 기업 및 임원 근로자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4%로 ‘비동의’(36.3%) 대비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가 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해당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주제도가 노사협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9.3%로, ‘비동의’(27.0%) 대비 높게 나타남
  - 50대 이상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사주제도가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5.4%로, ‘비동의’(28.1%) 대비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해당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

〈표 V-19〉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

(단위: %)

구분	매우 비동의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 하는 편	매우 동의	종합	
					비동의	동의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 <sup>1)</sup>	1.2	7.1	54.5	35.0	8.3	89.5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 <sup>2)</sup>	2.2	8.7	50.5	36.2	10.9	86.7
근로자 이직률 저하 <sup>3)</sup>	2.8	26.0	42.7	25.7	28.8	68.4
근로자 생산성 향상 <sup>4)</sup>	2.8	21.4	50.2	22.0	24.2	72.2
근로자 경영 참여 기회 제공 <sup>5)</sup>	8.4	27.9	41.2	19.2	36.3	60.4
노사협력 제고 <sup>6)</sup>	5.0	22.0	49.8	19.5	27.0	69.3
적대적 M&A 방지 <sup>7)</sup>	4.3	23.8	47.4	18.0	28.1	65.4

- 주: 1) 잘 모름(2.2%)은 제외  
 2) 잘 모름(2.4%)은 제외  
 3) 잘 모름(2.8%)은 제외  
 4) 잘 모름(3.6%)은 제외  
 5) 잘 모름(3.3%)은 제외  
 6) 잘 모름(3.7%)은 제외  
 7) 잘 모름(6.5%)은 제외

## 라.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 달성의 효과성(Base: n=323)

- 우리사주제도 인지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이직률 저하, 근로자 생산성 향상, 근로자 경영 참여 기회 제공, 노사협력 제공, 적대적 M&A 방지로 구분하여 조사함
  - 제도 도입이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7%로, ‘효과 없음’(26.0%)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와 연간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도입이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4%로, ‘효과 없음’(19.2%)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효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제도 도입이 근로자 이직률 저하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3%로, ‘효과 없음’(35.3%) 대비 높게 나타남
    - 규모가 작은 기업의 근로자일수록, 제도가 근로자 이직률 저하에 효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도입이 근로자 생산성 향상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효과 없음’(31.6%)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와 연간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도 도입이 근로자 경영 참여 기회 제공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효과 없음’(41.2%) 대비 약간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 경영 참여 기회 제공에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제도 도입이 노사협력 제고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효과 없음’(31.2%) 대비 높게 나타남
    - 생산 및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효과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도 도입이 적대적 M&A 방지에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1%로, ‘효과 없음’(30.0%) 대비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적대적 M&A 방지에 효과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

〈표 V-20〉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 달성의 효과성

(단위: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종합	
					효과 없음	효과 있음
근로자 재산 형성 증진 <sup>1)</sup>	8.0	18.0	48.6	21.1	26.0	69.7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 <sup>2)</sup>	5.3	13.9	52.9	24.5	19.2	77.4
근로자 이직률 저하 <sup>3)</sup>	7.7	27.6	39.9	20.4	35.3	60.3
근로자 생산성 향상 <sup>4)</sup>	5.6	26.0	47.1	16.4	31.6	63.5
근로자 경영 참여 기회 제공 <sup>5)</sup>	12.7	28.5	38.7	14.2	41.2	52.9
노사협력 제고 <sup>6)</sup>	8.0	23.2	48.3	14.2	31.2	62.5
적대적 M&A 방지 <sup>7)</sup>	8.0	22.0	45.8	13.3	30.0	59.1

- 주: 1) 잘 모름(4.3%)은 제외  
 2) 잘 모름(3.4%)은 제외  
 3) 잘 모름(4.4%)은 제외  
 4) 잘 모름(4.9%)은 제외  
 5) 잘 모름(5.9%)은 제외  
 6) 잘 모름(6.3%)은 제외  
 7) 잘 모름(10.9%)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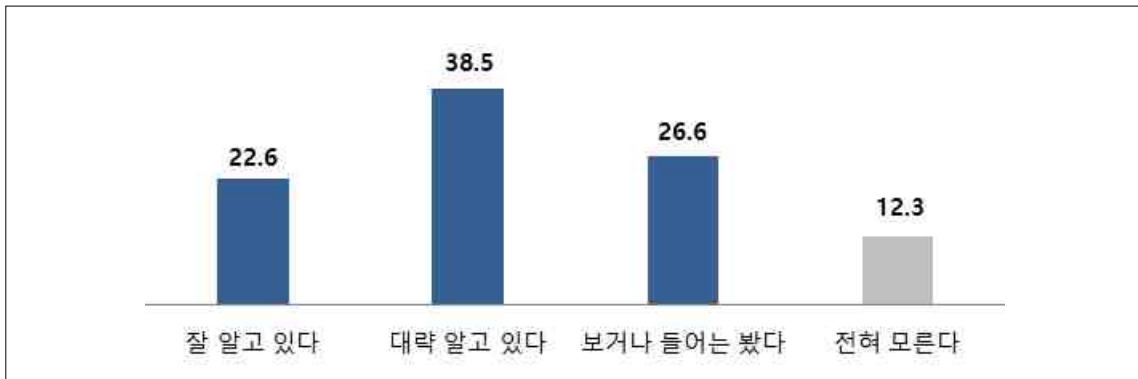
#### 마. 근로자의 과세특례제도 인지도 및 기여도

##### 1) 과세특례제도별 인지도(Base: n=327)

-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략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보거나 들어는 봤다’(26.6%), ‘잘 알고 있다’(22.6%)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약 87.8%가 과세특례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0]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인지도

(단위: %)



- 상장기업 및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직무별로 생산직의 경우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과세특례제도 인지자들을 대상으로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 경험을 파악한 결과, ‘출연 시 소득공제’, ‘우리사주 취득·배정 시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21〉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인지도 및 수혜 경험(Base: n=287)

(단위: %)

구분	과세특례제도 인지도				세제혜택 경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있다	없다
1) 출연 시 소득공제	4.2	24.0	49.8	22.0	34.8	65.2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8.7	33.8	45.0	12.5	20.2	79.8
3) 우리사주 취득·배정 시 비과세	3.1	26.8	56.1	14.0	35.9	64.1
4) 배당소득 비과세	5.6	34.1	46.7	13.6	25.1	74.9
5) 인출 시 비과세	7.3	41.5	40.1	11.1	15.0	85.0
6) 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11.9	49.8	31.0	7.3	7.3	92.7

2)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Base: n=287)

- 과세특례제도 인지자들을 대상으로 과세특례제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악한 결과, 모든 제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중 ‘출연 시 소득공제’, ‘우리사주 취득·배정 시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2〉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

(단위: %)

구분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1) 출연 시 소득공제	4.5	20.6	61.3	13.6	25.1	74.9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5.6	31.4	53.3	9.8	36.9	63.1
3) 우리사주 취득·배정 시 비과세	4.5	23.7	55.7	16.0	28.2	71.8
4) 배당소득 비과세	4.2	24.7	55.7	15.3	28.9	71.1
5) 인출 시 비과세	5.9	26.1	55.1	12.9	32.1	67.9
6) 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7.3	29.3	52.6	10.8	36.6	63.4

가) 출연 시 소득공제(과세이연)

□ 출연 시 소득공제(과세이연) 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74.9%로 ‘기여 못함’(25.1%) 대비 높게 나타남

<표 V-23>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출연 시 소득공제(과세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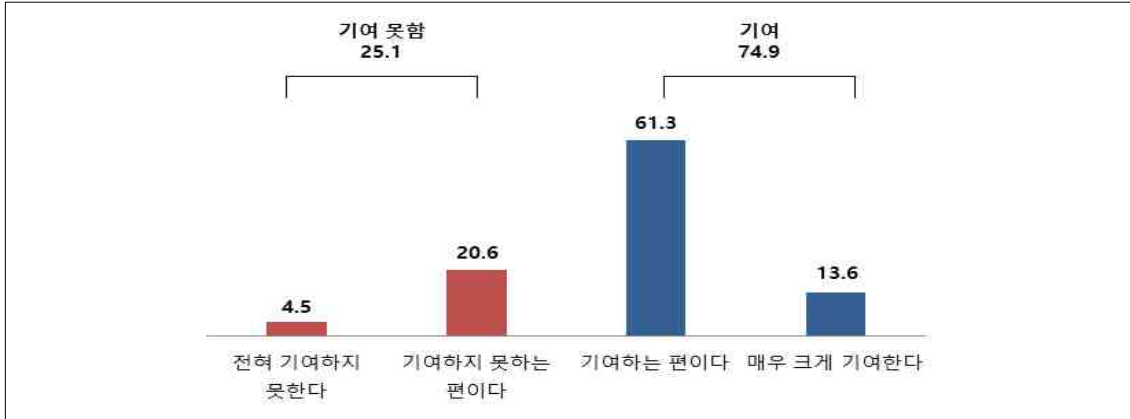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전체	(287)	4.5	20.6	61.3	13.6	25.1	74.9	
업종	1차 산업	(1)	0.0	0.0	100.0	0.0	0.0	100.0
	제조업	(175)	2.9	24.6	59.9	12.6	27.5	72.5
	서비스업	(111)	7.2	14.4	63.1	15.3	21.6	78.4
상장 여부	상장	(158)	3.8	17.1	64.5	14.6	20.9	79.1
	비상장	(129)	5.4	24.8	57.4	12.4	30.2	69.8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5.7	24.1	58.4	11.8	29.8	70.2
	중견기업	(56)	1.8	10.7	67.9	19.6	12.5	87.5
	대기업	(19)	0.0	10.5	73.7	15.8	10.5	89.5
성별	남성	(174)	6.3	20.1	58.1	15.5	26.4	73.6
	여성	(113)	1.8	21.2	66.4	10.6	23.0	77.0
연령대	20대	(35)	0.0	25.7	68.6	5.7	25.7	74.3
	30대	(156)	4.5	17.9	62.9	14.7	22.4	77.6
	40대	(77)	6.5	23.4	57.1	13.0	29.9	70.1
	50대	(19)	5.3	21.1	52.5	21.1	26.4	73.6
직무유형	생산직	(3)	0.0	33.4	33.3	33.3	33.4	66.6
	사무직	(266)	4.5	19.9	62.1	13.5	24.4	75.6
	영업직	(8)	0.0	25.0	62.5	12.5	25.0	75.0
	연구직	(8)	12.5	25.0	50.0	12.5	37.5	62.5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직위	직원	(56)	1.8	25.0	62.5	10.7	26.8	73.2
	대리	(77)	5.2	22.1	57.1	15.6	27.3	72.7
	과장	(95)	4.2	20.0	67.4	8.4	24.2	75.8
	부장	(52)	5.8	15.4	53.8	25.0	21.2	78.8
	임원	(7)	14.3	14.3	71.4	0.0	28.6	71.4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4.6	26.6	59.6	9.2	31.2	68.8
	4천~8천만원 미만	(164)	4.9	17.1	63.4	14.6	22.0	78.0
	8천~1억원 미만	(10)	0.0	20.0	40.0	40.0	20.0	80.0
	1억~2억원 미만	(4)	0.0	0.0	75.0	25.0	0.0	100.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5.1	23.4	58.8	12.7	28.5	71.5
	직접투자	(46)	4.3	13.0	67.5	15.2	17.3	82.7
	간접투자	(10)	0.0	10.0	80.0	10.0	10.0	90.0
	부동산투자	(22)	4.5	4.5	72.8	18.2	9.0	91.0
	기타	(12)	0.0	41.7	41.7	16.6	41.7	58.3

- 기업 규모가 클수록(중견 및 대기업), 연간소득 기준이 높을수록 해당 제도가 기여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1]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출연 시 소득공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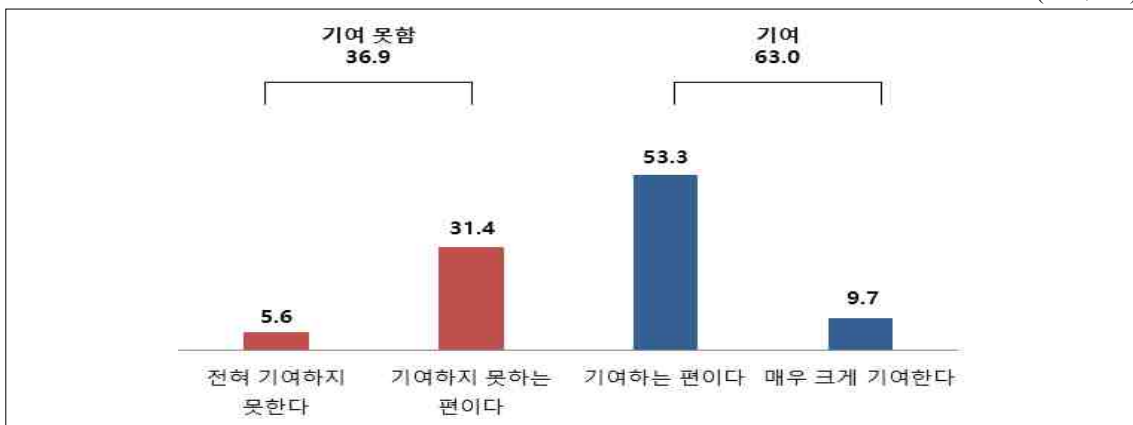


#### 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63.0%로, ‘기여 못함’(37.0%) 대비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가 크고 직위가 낮아질수록 해당 제도가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 재산 형성 수단이 부동산 투자인 경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90.9%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V-12]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



<표 V-24>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전체	(287)	5.6	31.4	53.3	9.8	36.9	63.1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0.0	100.0	0.0
	제조업	(175)	4.6	30.9	55.4	9.1	35.4	64.6
	서비스업	(111)	7.2	31.5	50.5	10.8	38.7	61.3
상장 여부	상장	(158)	4.4	31.6	54.4	9.5	36.1	63.9
	비상장	(129)	7.0	31.0	51.9	10.1	38.0	62.0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6.1	33.0	51.9	9.0	39.2	60.8
	중견기업	(56)	3.6	28.6	57.1	10.7	32.1	67.9
	대기업	(19)	5.3	21.1	57.9	15.8	26.3	73.7
성별	남성	(174)	5.7	30.5	52.9	10.9	36.2	63.8
	여성	(113)	5.3	32.7	54.0	8.0	38.1	61.9
연령대	20대	(35)	5.7	28.6	62.9	2.9	34.3	65.7
	30대	(156)	5.8	27.6	56.4	10.3	33.3	66.7
	40대	(77)	6.5	37.7	45.5	10.4	44.2	55.8
	50대	(19)	0.0	42.1	42.1	15.8	42.1	57.9
직무유형	생산직	(3)	0.0	33.3	33.3	33.3	33.3	66.7
	사무직	(266)	6.0	30.8	53.4	9.8	36.8	63.2
	영업직	(8)	0.0	37.5	62.5	0.0	37.5	62.5
	연구직	(8)	0.0	37.5	50.0	12.5	37.5	62.5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직위	직원	(56)	5.4	30.4	60.7	3.6	35.7	64.3
	대리	(77)	6.5	29.9	51.9	11.7	36.4	63.6
	과장	(95)	4.2	32.6	55.8	7.4	36.8	63.2
	부장	(52)	7.7	30.8	42.3	19.2	38.5	61.5
	임원	(7)	0.0	42.9	57.1	0.0	42.9	57.1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6.4	30.3	56.9	6.4	36.7	63.3
	4천~8천만원 미만	(164)	5.5	32.3	51.2	11.0	37.8	62.2
	8천~1억원 미만	(10)	0.0	30.0	50.0	20.0	30.0	70.0
	1억~2억원 미만	(4)	0.0	25.0	50.0	25.0	25.0	75.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6.1	32.5	52.8	8.6	38.6	61.4
	직접투자	(46)	6.5	30.4	47.8	15.2	37.0	63.0
	간접투자	(10)	0.0	40.0	60.0	0.0	40.0	60.0
	부동산투자	(22)	4.5	4.5	77.3	13.6	9.1	90.9
	기타	(12)	0.0	58.3	33.3	8.3	58.3	41.7

다) 우리사주 취득, 배정 시 비과세

□ 우리사주 취득, 배정 시 비과세 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71.8%로, ‘기여 못함’(28.2%) 대비 높게 나타남

<표 V-25>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우리사주 취득, 배정 시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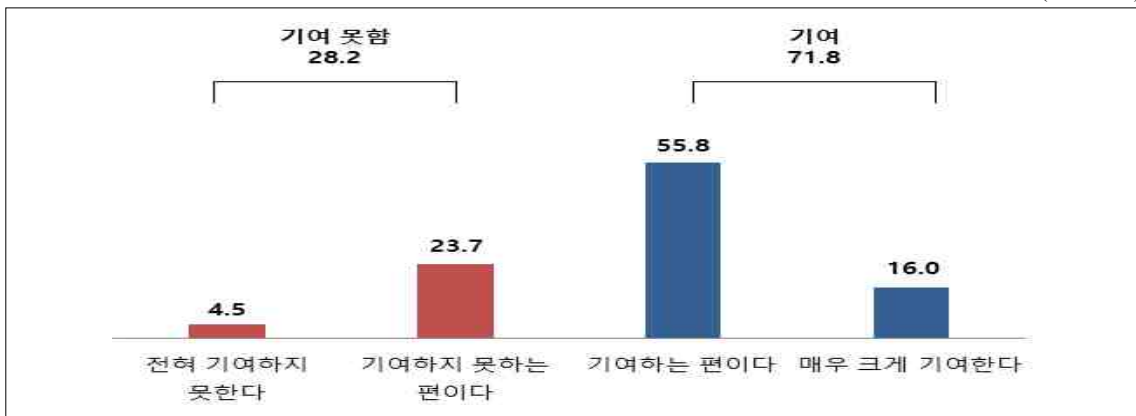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전체	(287)	4.5	23.7	55.8	16.0	28.2	71.8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0.0	100.0	0.0
	제조업	(175)	2.9	25.1	54.9	17.1	28.0	72.0
	서비스업	(111)	7.2	20.7	57.7	14.4	27.9	72.1
상장 여부	상장	(158)	3.8	20.9	58.8	16.5	24.7	75.3
	비상장	(129)	5.4	27.1	52.0	15.5	32.5	67.5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5.2	26.4	51.9	16.5	31.6	68.4
	중견기업	(56)	1.8	17.9	66.0	14.3	19.7	80.3
	대기업	(19)	5.3	10.5	68.4	15.8	15.8	84.2
성별	남성	(174)	5.7	22.4	53.5	18.4	28.1	71.9
	여성	(113)	2.7	25.7	59.2	12.4	28.4	71.6
연령대	20대	(35)	2.9	22.9	62.8	11.4	25.8	74.2
	30대	(156)	4.5	23.7	57.7	14.1	28.2	71.8
	40대	(77)	6.5	23.4	50.6	19.5	29.9	70.1
	50대	(19)	0.0	26.3	47.4	26.3	26.3	73.7
직무유형	생산직	(3)	0.0	33.4	33.3	33.3	33.4	66.6
	사무직	(266)	4.5	22.9	56.8	15.8	27.4	72.6
	영업직	(8)	0.0	37.5	37.5	25.0	37.5	62.5
	연구직	(8)	12.5	25.0	50.0	12.5	37.5	62.5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직위	직원	(56)	3.6	26.8	55.3	14.3	30.4	69.6
	대리	(77)	6.5	27.3	54.5	11.7	33.8	66.2
	과장	(95)	2.1	24.2	59.0	14.7	26.3	73.7
	부장	(52)	7.7	15.4	48.1	28.8	23.1	76.9
	임원	(7)	0.0	14.3	85.7	0.0	14.3	85.7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6.4	27.5	54.2	11.9	33.9	66.1
	4천~8천만원 미만	(164)	3.7	22.0	57.2	17.1	25.7	74.3
	8천~1억원 미만	(10)	0.0	20.0	40.0	40.0	20.0	80.0
	1억~2억원 미만	(4)	0.0	0.0	75.0	25.0	0.0	100.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4.6	23.9	57.8	13.7	28.5	71.5
	직접투자	(46)	6.5	26.1	43.5	23.9	32.6	67.4
	간접투자	(10)	0.0	10.0	70.0	20.0	10.0	90.0
	부동산투자	(22)	4.5	4.5	72.8	18.2	9.0	91.0
	기타	(12)	0.0	58.3	25.0	16.7	58.3	41.7

- 해당 제도 역시 기업 규모가 클수록(중견 및 대기업), 연간소득 기준이 높을수록 해당 제도가 기여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재산 형성 수단이 간접투자 및 부동산 투자인 경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3]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우리사주 취득, 배정 시 비과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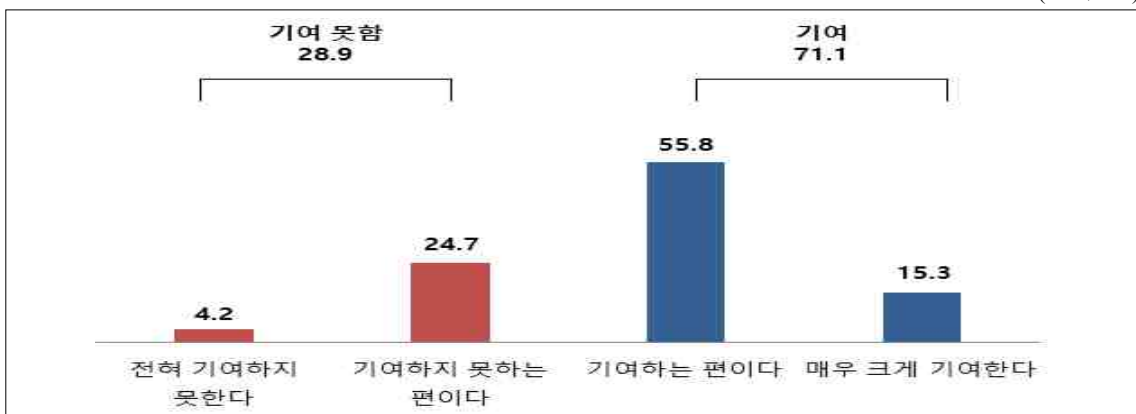


라) 배당소득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71.1%로, ‘기여 못함’(28.9%) 대비 높게 나타남
- 50대 및 임원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가 도입 목적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4]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배당소득 비과세

(단위: %)



○ 특히, 주 재산 형성 수단이 부동산 투자인 경우, 기여한다는 응답이 90.9%로 높게 나타남

<표 V-26>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배당소득 비과세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전체	(287)	4.2	24.7	55.8	15.3	28.9	71.1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0.0	100.0	0.0
	제조업	(175)	1.7	26.9	56.0	15.4	28.6	71.4
	서비스업	(111)	8.1	20.7	55.9	15.3	28.8	71.2
상장 여부	상장	(158)	3.2	24.7	55.6	16.5	27.9	72.1
	비상장	(129)	5.4	24.8	55.8	14.0	30.2	69.8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5.2	25.0	54.7	15.1	30.2	69.8
	중견기업	(56)	1.8	25.0	57.1	16.1	26.8	73.2
	대기업	(19)	0.0	21.1	63.1	15.8	21.1	78.9
성별	남성	(174)	5.2	25.3	54.0	15.5	30.5	69.5
	여성	(113)	2.7	23.9	58.4	15.0	26.6	73.4
연령대	20대	(35)	0.0	20.0	60.0	20.0	20.0	80.0
	30대	(156)	5.1	24.4	58.3	12.2	29.5	70.5
	40대	(77)	5.2	32.5	48.0	14.3	37.7	62.3
	50대	(19)	0.0	5.3	57.9	36.8	5.3	94.7
직무유형	생산직	(3)	0.0	33.4	33.3	33.3	33.4	66.6
	사무직	(266)	4.1	24.4	56.5	15.0	28.5	71.5
	영업직	(8)	0.0	37.5	37.5	25.0	37.5	62.5
	연구직	(8)	12.5	12.5	62.5	12.5	25.0	75.0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직위	직원	(56)	1.8	25.0	58.9	14.3	26.8	73.2
	대리	(77)	6.5	29.9	53.2	10.4	36.4	63.6
	과장	(95)	2.1	22.1	61.1	14.7	24.2	75.8
	부장	(52)	7.7	25.0	46.1	21.2	32.7	67.3
	임원	(7)	0.0	0.0	57.1	42.9	0.0	100.0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5.5	24.8	57.8	11.9	30.3	69.7
	4천~8천만원 미만	(164)	3.0	25.6	53.7	17.7	28.6	71.4
	8천~1억원 미만	(10)	0.0	20.0	70.0	10.0	20.0	80.0
	1억~2억원 미만	(4)	25.0	0.0	50.0	25.0	25.0	75.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4.1	24.9	56.3	14.7	29.0	71.0
	직접투자	(46)	4.3	28.3	52.2	15.2	32.6	67.4
	간접투자	(10)	10.0	20.0	60.0	10.0	30.0	70.0
	부동산투자	(22)	4.5	4.5	68.3	22.7	9.0	91.0
	기타	(12)	0.0	50.0	33.3	16.7	50.0	50.0

마) 인출 시 비과세

□ 인출 시 비과세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67.9%로, ‘기여 못함’(32.1%) 대비 높게 나타남

<표 V-27>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인출 시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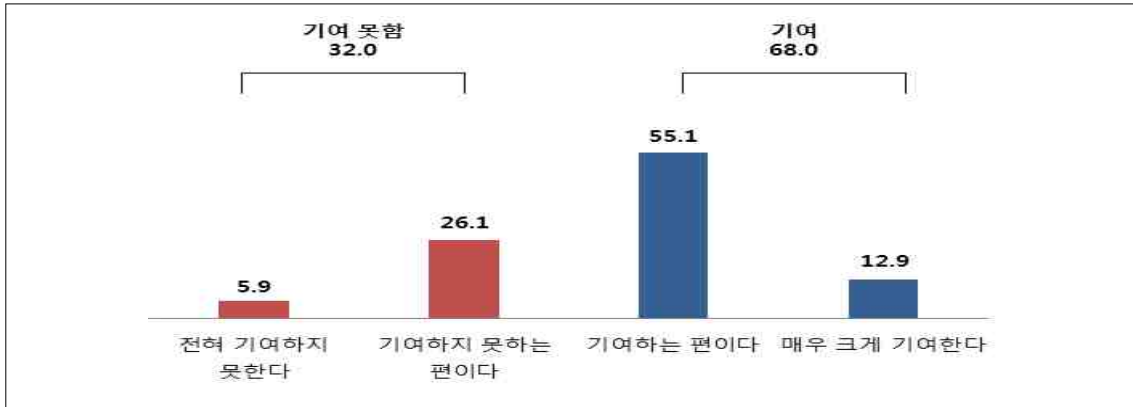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전체	(287)	5.9	26.1	55.1	12.9	32.0	68.0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0.0	100.0	0.0
	제조업	(175)	4.0	26.9	54.8	14.3	30.9	69.1
	서비스업	(111)	9.0	24.3	55.9	10.8	33.3	66.7
상장 여부	상장	(158)	5.7	24.1	56.9	13.3	29.8	70.2
	비상장	(129)	6.2	28.7	52.7	12.4	34.9	65.1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6.1	29.2	52.0	12.7	35.3	64.7
	중견기업	(56)	5.4	19.6	60.7	14.3	25.0	75.0
	대기업	(19)	5.3	10.5	73.7	10.5	15.8	84.2
성별	남성	(174)	7.5	26.4	51.7	14.4	33.9	66.1
	여성	(113)	3.5	25.7	60.2	10.6	29.2	70.8
연령대	20대	(35)	2.9	25.7	62.8	8.6	28.6	71.4
	30대	(156)	7.1	24.4	57.6	10.9	31.5	68.5
	40대	(77)	6.5	29.9	50.6	13.0	36.4	63.6
	50대	(19)	0.0	26.4	36.8	36.8	26.4	73.6
직무유형	생산직	(3)	0.0	33.4	33.3	33.3	33.4	66.6
	사무직	(266)	6.0	25.6	55.6	12.8	31.6	68.4
	영업직	(8)	0.0	50.0	37.5	12.5	50.0	50.0
	연구직	(8)	12.5	12.5	62.5	12.5	25.0	75.0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직위	직원	(56)	3.6	30.4	58.9	7.1	34.0	66.0
	대리	(77)	9.1	31.2	50.6	9.1	40.3	59.7
	과장	(95)	3.2	22.1	61.0	13.7	25.3	74.7
	부장	(52)	9.6	23.1	46.1	21.2	32.7	67.3
	임원	(7)	0.0	14.3	57.1	28.6	14.3	85.7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7.3	31.2	54.2	7.3	38.5	61.5
	4천~8천만원 미만	(164)	4.9	23.2	54.8	17.1	28.1	71.9
	8천~1억원 미만	(10)	0.0	30.0	60.0	10.0	30.0	70.0
	1억~2억원 미만	(4)	25.0	0.0	75.0	0.0	25.0	75.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6.1	25.4	55.8	12.7	31.5	68.5
	직접투자	(46)	6.5	30.4	47.9	15.2	36.9	63.1
	간접투자	(10)	10.0	40.0	50.0	0.0	50.0	50.0
	부동산투자	(22)	4.5	4.5	77.4	13.6	9.0	91.0
	기타	(12)	0.0	50.0	33.3	16.7	50.0	50.0

- 대기업 및 임원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가 기여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영업직 및 주 재산 형성 수단이 간접투자인 경우 기여한다는 응답과 기여 못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V-15]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인출 시 비과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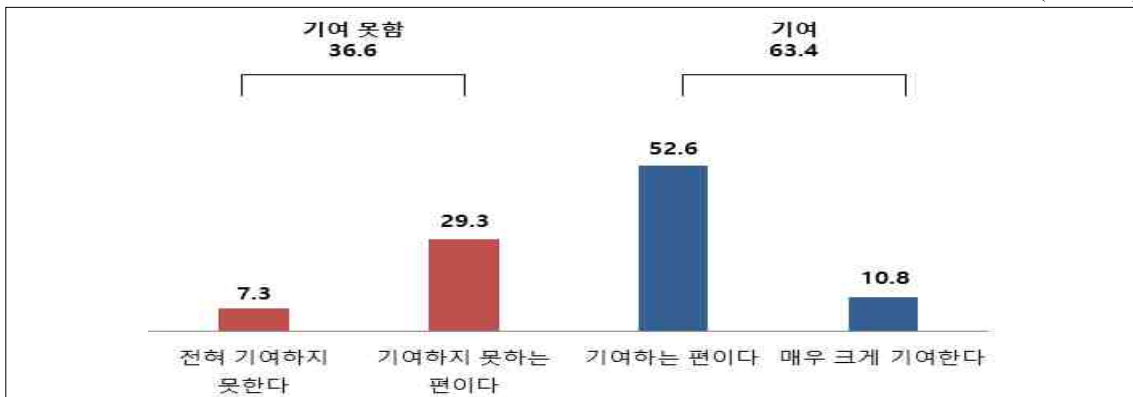


바) 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 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63.4%로, ‘기여 못함’(36.6%) 대비 높게 나타남
- 대기업 및 임원, 직무 유형이 연구직인 경우 해당 제도가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16]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단위: %)



<표 V-28> 세부 과세특례제도별 기여도-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종합		
						기여 못함	기여함	
전체	(287)	7.3	29.3	52.6	10.8	36.6	63.4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0.0	100.0	0.0
	제조업	(175)	5.1	29.1	54.9	10.9	34.2	65.8
	서비스업	(111)	10.8	28.8	49.6	10.8	39.6	60.4
상장 여부	상장	(158)	8.2	30.4	51.9	9.5	38.6	61.4
	비상장	(129)	6.2	27.9	53.5	12.4	34.1	65.9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8.0	29.7	51.9	10.4	37.7	62.3
	중견기업	(56)	5.4	28.6	53.5	12.5	34.0	66.0
	대기업	(19)	5.3	26.3	57.9	10.5	31.6	68.4
성별	남성	(174)	7.5	30.5	49.4	12.6	38.0	62.0
	여성	(113)	7.1	27.4	57.5	8.0	34.5	65.5
연령대	20대	(35)	8.6	28.6	59.9	2.9	37.2	62.8
	30대	(156)	8.3	26.9	54.5	10.3	35.2	64.8
	40대	(77)	6.5	36.4	45.4	11.7	42.9	57.1
	50대	(19)	0.0	21.1	52.6	26.3	21.1	78.9
직무유형	생산직	(3)	0.0	33.4	33.3	33.3	33.4	66.6
	사무직	(266)	7.5	29.3	52.7	10.5	36.8	63.2
	영업직	(8)	0.0	37.5	50.0	12.5	37.5	62.5
	연구직	(8)	12.5	12.5	62.5	12.5	25.0	75.0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직위	직원	(56)	7.1	30.4	57.1	5.4	37.5	62.5
	대리	(77)	7.8	32.5	51.9	7.8	40.3	59.7
	과장	(95)	6.3	29.5	51.6	12.6	35.8	64.2
	부장	(52)	9.6	23.1	50.0	17.3	32.7	67.3
	임원	(7)	0.0	28.6	57.1	14.3	28.6	71.4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9.2	29.4	56.8	4.6	38.6	61.4
	4천~8천만원 미만	(164)	6.1	29.3	50.0	14.6	35.4	64.6
	8천~1억원 미만	(10)	0.0	40.0	50.0	10.0	40.0	60.0
	1억~2억원 미만	(4)	25.0	0.0	50.0	25.0	25.0	75.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8.1	27.9	54.9	9.1	36.0	64.0
	직접투자	(46)	6.5	37.0	41.3	15.2	43.5	56.5
	간접투자	(10)	10.0	30.0	60.0	0.0	40.0	60.0
	부동산투자	(22)	4.5	9.1	68.2	18.2	13.6	86.4
	기타	(12)	0.0	58.3	25.0	16.7	58.3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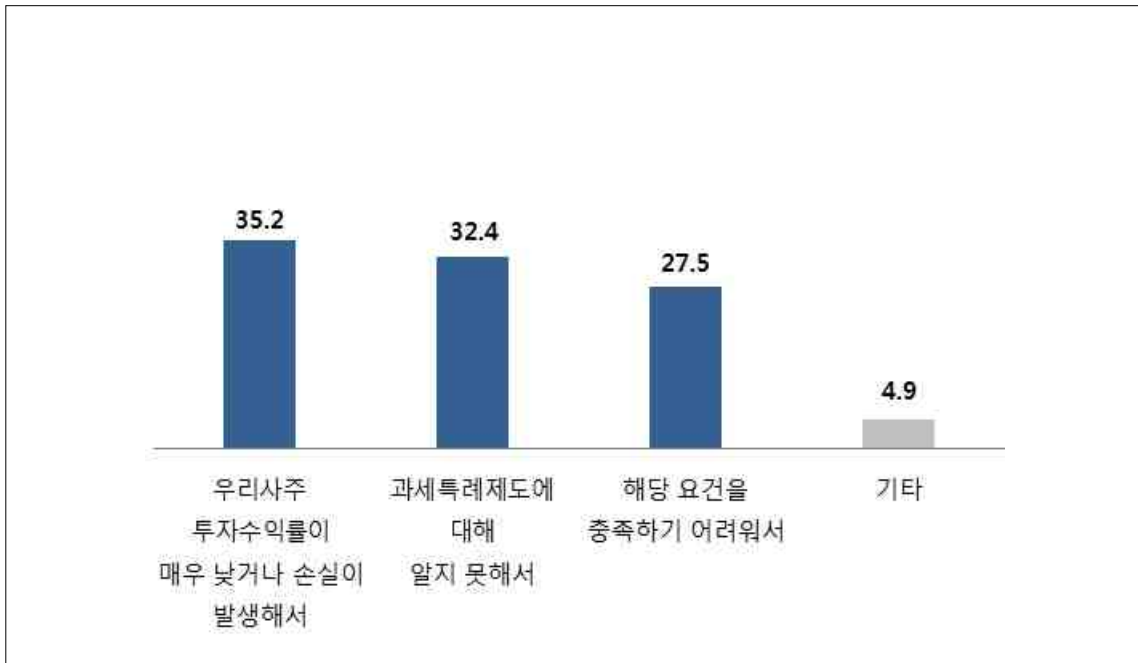
### 3.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가.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Base: n=142)

-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자(142명)를 대상으로 해당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사주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32.4%),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27.5%) 순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 및 과장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가 투자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7]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표 V-29〉 과세특례제도가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우리사주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기타
전체		(142)	35.2	32.4	27.5	4.9
업종	1차 산업	(1)	0.0	0.0	100.0	0.0
	제조업	(82)	35.5	34.1	28.0	2.4
	서비스업	(59)	35.6	30.5	25.4	8.5
상장 여부	상장	(79)	43.0	30.4	25.3	1.3
	비상장	(63)	25.4	34.9	30.2	9.5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111)	36.1	32.4	27.0	4.5
	중견기업	(23)	30.4	34.8	26.1	8.7
	대기업	(8)	37.5	25.0	37.5	0.0
성별	남성	(88)	33.0	31.8	28.4	6.8
	여성	(54)	38.9	33.3	25.9	1.9
연령대	20대	(16)	31.3	49.9	12.5	6.3
	30대	(71)	38.0	32.4	25.4	4.2
	40대	(43)	37.2	20.9	34.9	7.0
	50대	(12)	16.7	50.0	33.3	0.0
직무유형	생산직	(1)	100.0	0.0	0.0	0.0
	사무직	(133)	35.3	31.6	27.8	5.3
	영업직	(4)	25.0	75.0	0.0	0.0
	연구직	(3)	0.0	33.3	66.7	0.0
	기타	(1)	100.0	0.0	0.0	0.0
직위	직원	(25)	20.0	56.0	20.0	4.0
	대리	(37)	35.1	35.1	27.1	2.7
	과장	(46)	45.7	26.1	21.7	6.5
	부장	(29)	37.9	17.3	37.9	6.9
	임원	(5)	0.0	40.0	60.0	0.0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52)	28.8	44.3	23.1	3.8
	4천~8천만원 미만	(83)	39.8	25.3	28.9	6.0
	8천~1억원 미만	(5)	20.0	40.0	40.0	0.0
	1억~2억원 미만	(2)	50.0	0.0	50.0	0.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97)	35.0	30.9	28.9	5.2
	직접투자	(26)	30.8	38.5	26.9	3.8
	간접투자	(7)	42.8	28.6	14.3	14.3
	부동산투자	(4)	75.0	0.0	25.0	0.0
	기타	(8)	25.0	50.0	2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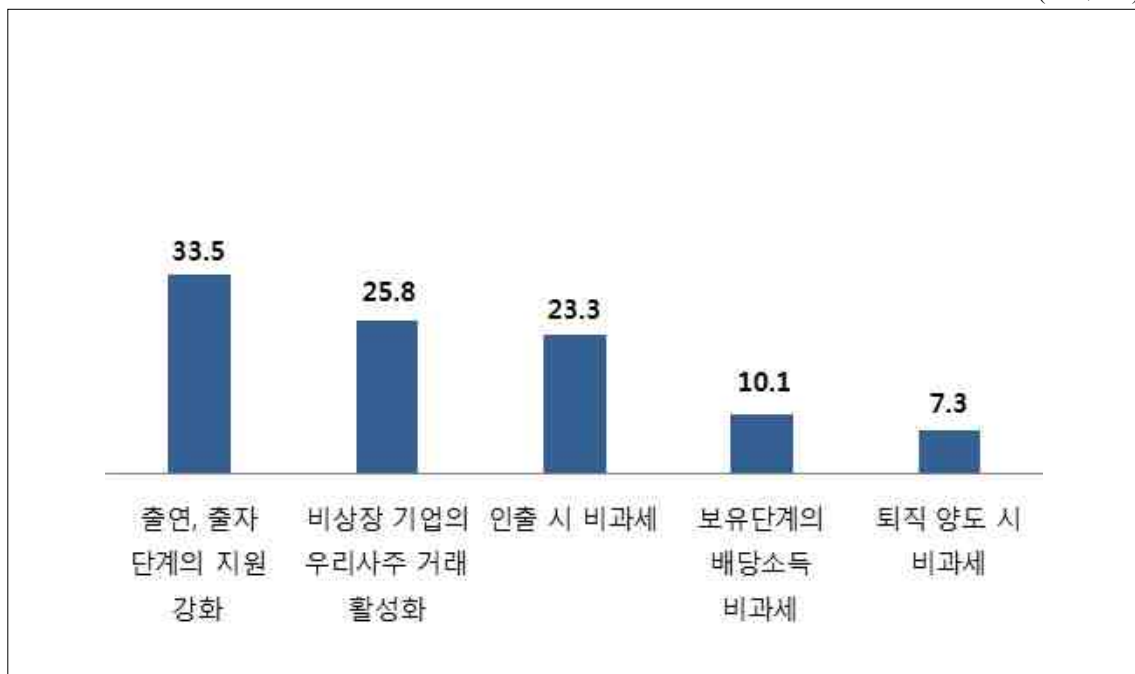
나.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Base: n=287)

1)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 우리사주조합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과세특례제도 인지자(287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들은 ‘출연, 출자 단계의 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거래 활성화’(25.8%), ‘인출 시 비과세’(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위 및 연간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연, 출자 단계의 지원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8]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

(단위: %)



<표 V-30> 과세특례제도 관련 개선 방안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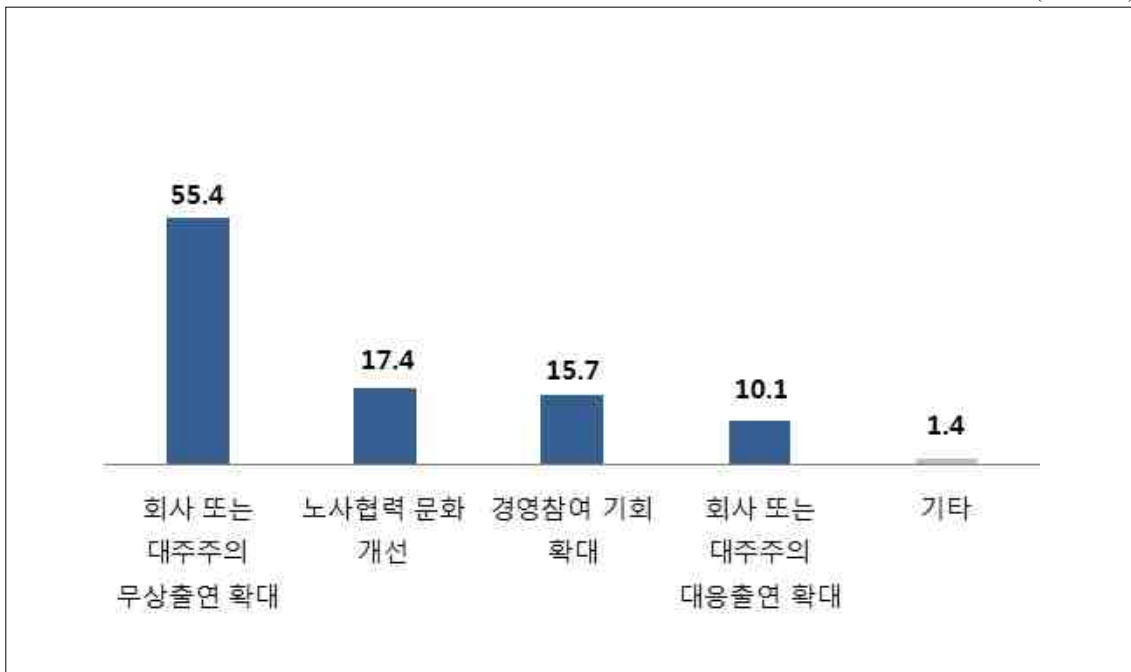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출연, 출자 단계의 지원 강화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거래 활성화	인출 시 비과세	보유단계의 배당소득 비과세	퇴직 양도 시 비과세
전체		(287)	33.5	25.8	23.3	10.1	7.3
업종	1차 산업	(1)	0.0	0.0	0.0	0.0	100.0
	제조업	(175)	30.9	25.1	24.0	13.7	6.3
	서비스업	(111)	37.9	27.0	22.5	4.5	8.1
상장 여부	상장	(158)	38.0	15.8	31.0	11.4	3.8
	비상장	(129)	27.9	38.0	14.0	8.5	11.6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32.2	29.2	21.7	9.4	7.5
	중견기업	(56)	37.5	21.4	19.6	16.1	5.4
	대기업	(19)	36.8	0.0	52.7	0.0	10.5
성별	남성	(174)	38.0	26.4	20.7	8.6	6.3
	여성	(113)	26.5	24.8	27.5	12.4	8.8
연령대	20대	(35)	28.6	17.1	25.7	8.6	20.0
	30대	(156)	34.0	27.6	21.8	11.5	5.1
	40대	(77)	32.4	22.1	28.6	9.1	7.8
	50대	(19)	42.1	42.1	10.5	5.3	0.0
직무유형	생산직	(3)	33.3	0.0	33.3	0.0	33.3
	사무직	(266)	33.6	25.9	24.4	8.6	7.5
	영업직	(8)	50.0	25.0	0.0	25.0	0.0
	연구직	(8)	0.0	37.5	12.5	50.0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직위	직원	(56)	23.2	34.0	19.6	12.5	10.7
	대리	(77)	32.4	29.9	23.4	6.5	7.8
	과장	(95)	34.7	20.0	26.3	11.6	7.4
	부장	(52)	38.5	23.1	23.1	11.5	3.8
	임원	(7)	71.4	14.3	14.3	0.0	0.0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32.1	32.1	13.8	11.9	10.1
	4천~8천만원 미만	(164)	32.8	22.0	29.9	9.8	5.5
	8천~1억원 미만	(10)	50.0	20.0	20.0	0.0	10.0
	1억~2억원 미만	(4)	50.0	25.0	25.0	0.0	0.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31.9	24.4	23.9	11.2	8.6
	직접투자	(46)	28.3	30.4	28.3	6.5	6.5
	간접투자	(10)	40.0	50.0	10.0	0.0	0.0
	부동산투자	(22)	41.0	22.7	22.7	9.1	4.5
	기타	(12)	58.3	16.7	8.3	16.7	0.0

## 2) 과세특례제도 이외 개선 방안

- 과세특례제도 이외의 개선 방안으로는, ‘회사 또는 대주주의 무상출연 확대’가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노사협력 문화 개선’(17.4%), ‘경영 참여 기회 확대’(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대표이사, 임원 및 부서장의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중간관리자 이하 직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상장기업 및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 또는 대주주의 무상출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9] 과세특례제도 이외 개선 방안

(단위: %)



<표 V-31> 과세특례제도 이외 개선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회사 또는 대주주의 무상출연 확대	노사협력 문화 개선	경영 참여 기회 확대	회사 또는 대주주의 대응출연 확대	기타
전체		(287)	55.4	17.4	15.7	10.1	1.4
업종	1차 산업	(1)	100.0	0.0	0.0	0.0	0.0
	제조업	(175)	54.3	16.0	17.7	11.4	0.6
	서비스업	(111)	56.8	19.8	12.6	8.1	2.7
상장 여부	상장	(158)	62.6	12.7	13.3	10.8	0.6
	비상장	(129)	46.5	23.3	18.6	9.3	2.3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12)	54.8	17.9	16.0	10.4	0.9
	중견기업	(56)	58.9	14.3	14.3	10.7	1.8
	대기업	(19)	52.5	21.1	15.8	5.3	5.3
성별	남성	(174)	54.1	17.2	15.5	11.5	1.7
	여성	(113)	57.5	17.7	15.9	8.0	0.9
연령대	20대	(35)	45.7	25.7	22.9	5.7	0.0
	30대	(156)	55.1	17.3	17.3	9.0	1.3
	40대	(77)	62.3	13.0	9.1	13.0	2.6
	50대	(19)	47.3	21.1	15.8	15.8	0.0
직무유형	생산직	(3)	33.3	33.3	33.3	0.0	0.0
	사무직	(266)	57.1	15.8	15.4	10.2	1.5
	영업직	(8)	12.5	50.0	25.0	12.5	0.0
	연구직	(8)	50.0	25.0	12.5	12.5	0.0
	기타	(2)	50.0	50.0	0.0	0.0	0.0
직위	직원	(56)	49.9	26.8	17.9	5.4	0.0
	대리	(77)	59.7	16.9	18.2	3.9	1.3
	과장	(95)	55.8	13.7	14.7	13.7	2.1
	부장	(52)	53.8	17.3	13.5	13.5	1.9
	임원	(7)	57.1	0.0	0.0	42.9	0.0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09)	54.1	21.1	20.2	3.7	0.9
	4천~8천만원 미만	(164)	55.6	15.2	12.8	14.6	1.8
	8천~1억원 미만	(10)	70.0	10.0	10.0	10.0	0.0
	1억~2억원 미만	(4)	50.0	25.0	25.0	0.0	0.0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197)	54.9	19.3	15.2	9.1	1.5
	직접투자	(46)	56.6	13.0	15.2	13.0	2.2
	간접투자	(10)	50.0	20.0	20.0	10.0	0.0
	부동산투자	(22)	63.7	9.1	13.6	13.6	0.0
	기타	(12)	50.0	16.7	25.0	8.3	0.0

〈표 V-32〉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단위: %)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		과세특례제도 이외 제도개선 방안	
내용	응답 비율	내용	응답 비율
출연, 출자 단계의 지원 강화	33.4	회사 또는 대주주의 무상출연 확대	55.4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거래 활성화	25.8	노사협력 문화 개선	17.4
인출 시 비과세	23.3	경영참여기회 확대	15.7
보유단계의 배당소득 비과세	10.1	회사 또는 대주주의 대응출연 확대	10.1
퇴직 양도 시 비과세	7.3	기타	1.4

## VI. 결론





## VI. 결론

###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사주제도는 1960년대 말부터 시행되던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법률들을 2001년에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담아 새롭게 출범한 제도임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종업원 지주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의 기본 틀은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함께 정비되었고, 그 후 수차례 제도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룸
  
-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은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함임
  - 우리사주제도는 자본주의 체제를 택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나라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자본조달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할 것인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음
  - 따라서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주된 목적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을 지라도,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사주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의 타당성도 인정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사주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사주 지분율을 EU 상장 기업들과 비교할 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유지하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이외에 세제 측면에서 다른 중복 지원도 없기 때문에 동 세제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자료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유한 기업-산업-일자리 생태계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들이 유사한 비설립기업에 비해 총자산과 고용, 수익성 측면에서 거둔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효과성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최종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과를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투자와 고용 등 중간 산출지표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사주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 노사관계의 개선, 직원의 근속 기여도 측면에서 각각 59%, 64%, 69%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 근로자들은 재산 형성 증진, 주인의식 제고, 이직률 저하, 생산성 향상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70%, 77%, 60%, 64%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 결론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인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세제 지원 이외에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여타 지원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평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타당성·효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를 얻음

## 2. 중기적 정책 제안

-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동 특례제도의 폐지나 일몰제도 신설 등을 제안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인 효용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만큼 당분간 동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는 출연, 취득, 보유, 인출, 배당, 기부, 양도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각 단계별 세제 지원이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Data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세제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각 단계별 과세특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목적에 기여하였는가를 질문하였음
    - 출연금 소득공제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74.9%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기부금 소득공제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63.1%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우리사주 취득·배정 시 비과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71.8%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배당소득 비과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71.1%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우리사주 인출 시 비과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68.0%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퇴직으로 인한 양도 시 비과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63.4%의 긍정적인 답변 도출
- 우리나라는 우리사주의 출연, 취득, 보유, 인출, 배당, 기부, 양도 등 각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결코 세제 지원이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하되, 지분을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재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효과성 검증에서 우리사주조합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더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각 단계별 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분리하여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일부 지원의 지속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영국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현금 배당 중 우리사주 추가 매입에 사용된 배당에 한하여 비과세하며,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은 배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한도액을 2006년 5천만원에서 2008년 3천만원으로 축소하였으며, 2010년 1,800만원으로 다시 축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비과세 한도액의 기준이 액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 A 계열사의 주식을 1천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액면가액은 500원이나 현재 시가는 1주당 23만 1,500원임.<sup>53)</sup> 이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보유 주식은 50만원이나 시가 기준으로는 2억 3,150만원인데, 액면가 기준으로 1,8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인별 한도액의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금융세제 일원화 방안의 일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53) 2020년 8월 10일 기준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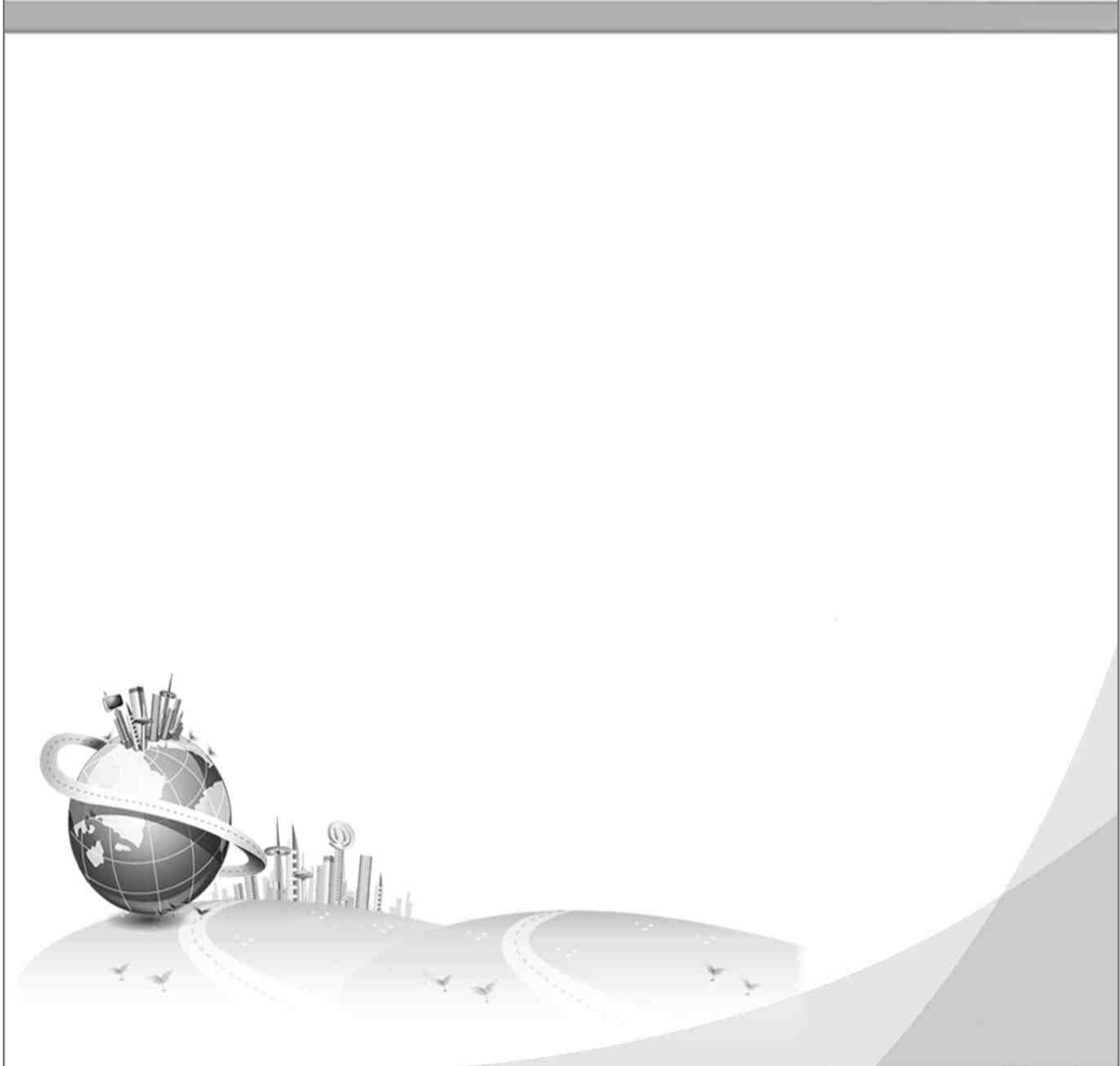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 2. 2.
- 김동배·노용진·강병식·송민수,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7. 12.
- 김학수·구자은,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 패널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1. pp. 557~581.
- 노용진·문무기·박성찬,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송홍선·이효섭·장정모, 『비상장·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용역 보고서, 2014. 11.
- 안병룡,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생산성 증가 효과: 제도 실시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1호, 2002, pp. 233~257.
- 원인성, 「우리사주제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2012. 2, pp. 591~618.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2012. 6.
- \_\_\_\_\_, 『증권금융』, 제344호, 2019. 6. 26.
- \_\_\_\_\_, 『증권금융』, 제345호, 2020. 2. 10.
-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우리사주제도의 이해(2016 법률 반영)』, 2018. 10.
-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 *Annual Economic Survey of Employee Share Ownership in European Countries*, 2019.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sop.ksfc.co.kr/index.jsp#TINT0020>
-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설립기업자료」, 내부자료, 2020.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자료」, 판매자료,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업생태계자료」, 내부자료, 2020.



# 부 록





## <부 록>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지 문항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sup>54)</sup>」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여 및 근로 의욕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1년 12월에 신설
- 2020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의 일부로 동 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우리사주조합 설립 경험이 있는 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제도의 개선점 파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기존 2016년에 동 제도의 심층성과평가 설문조사에서 경영진들은 우리사주제도가 대체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근로자들은 과반수 정도가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타남

###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기업 경영진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부표 1>과 같음

<부표 1> 조사 설계

구분	경영진	근로자
조사 대상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대표 및 재무담당자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내 조합 가입 근로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샘플 수	150명	300명
조사 기간	2020년 5월 7일~5월 19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5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3. 조사 내용

□ 우리사주조합 운영 및 중단한 기업의 경영진 설문조사의 세부 항목은 <부표 2>와 같음

<부표 2> 경영진(조합 운영 및 중단) 설문조사 세부 항목

운영 여부	구분	세부 항목
(공통)	응답 기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설립연도/종사자 수/업종</li> <li>• 자본금/매출액</li> <li>• 상장 여부/법정 기업 규모</li> <li>•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li> </ul>
(운영 중)	우리사주제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연도/목적</li> <li>• 우리사주 조합원 주식보유 현황/지분을</li> <li>• 향후 우리사주 추가 제공 계획</li> <li>• 우리사주 무상출연 억제 요인</li> <li>• 우리사주제도 기여도(생산성, 노사관계, 직원 근속)</li> <li>• 우리사주제도 지속 실시 의향</li> </ul>
	노사관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 결성연도/노조원 수/상급단체</li> <li>•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평가(노동조합, 근로자, 경영자)</li> </ul>
(폐지/중단)	우리사주조합 폐지/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조합 설립/폐지연도</li> <li>• 최초 도입 목적</li> <li>• 폐지/미활동 사유</li> <li>• 향후 재도입 의향</li> </ul>

□ 우리사주제를 도입·운영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 설문조사의 세부 항목은 <부표 3>과 같음

<부표 3> 경영진(조합 미설립)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응답 기업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설립연도/종사자 수/업종</li> <li>• 상장 여부/법정 기업 규모</li> <li>•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li> <li>• 노동조합 여부</li> </ul>
우리사주제 미설립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제도 인지 여부</li> <li>• 우리사주제도 미설립 사유</li> <li>• 향후 우리사주조합 설립 의향</li> </ul>

□ 근로자(조합 가입자) 설문조사의 세부 항목은 <부표 4>와 같음

<부표 4> 근로자(조합 가입자)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업종/규모/상장 여부</li> <li>• 성별/연령대</li> <li>• 직무 유형/직위</li> <li>• 연간소득 수준(세전)</li> <li>• 근로소득 이외 재산 형성 수단</li> </ul>
우리사주조합 설립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조합의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생각</li> <li>• 우리사주 취득 경험/방법/목적</li> <li>•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 보유 기간/장기간 보유 않은 이유</li> <li>• 투자 총 누적 금액</li> <li>• 다른 수단 대비 재산 형성 도움 정도</li> </ul>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세제혜택 경험</li> <li>• 과세특례제도 기여도/기여 억제 요인</li> <li>•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사항</li> <li>•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타 제도 개선 사항</li> </ul>

#### 4. 응답기업 및 응답자 특성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중 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총 162개소이며, 이들 기업의 특성은 <부표 5>와 같음

<부표 5> 응답 기업 특성(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62	100.0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17.3
	1990년대	16.0
	2000년대	42.6
	2010년 이후	24.1
근로자 수	50인 미만	20.4
	50~100인 미만	24.7
	100~200인 미만	23.5
	200~500인 미만	19.1
	500인 이상	12.3
업종	1차산업	0.6
	제조업	63.6
	서비스업	35.8
상장 여부	상장	56.8
	비상장	43.2
법정 기업 규모	중소기업	71.0
	중견기업	24.7
	대기업	4.3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	설립	78.4
	폐지/미활동	21.6
우리사주제도 도입연도	2015년 이전	21.3
	2016~2017년	32.3
	2018년 이후	46.5

-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5개소(71.4%), 서비스업이 10개소(28.6%)로 나타남
  - 응답 기업 중 상장기업은 18개소(51.4%), 비상장기업은 17개소(48.6%)로 나타남
  - 현재 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기업이 조합을 운영했던 기간은 3년 미만이 19개소(54.3%)로 가장 많았으며, 3~5년이 11개소(31.4%), 6~7년이 5개소(14.3%)로 나타남

<부표 6> 응답기업 특성(우리사주조합 폐지 및 중단)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5	100.0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6	17.1
	1990년대	7	20.0
	2000년대	17	48.6
	2010년 이후	5	14.3
근로자 수	50인 미만	9	25.7
	50~100인 미만	8	22.9
	100~200인 미만	7	20.0
	200~500인 미만	8	22.9
	500인 이상	3	8.6
업종	제조업	25	71.4
	서비스업	10	28.6
상장 여부	상장	18	51.4
	비상장	17	48.6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6	74.3
	중견기업	9	25.7
	대기업	0	0.0
우리사주조합 유지 기간	3년 미만	19	54.3
	3~5년	11	31.4
	6~7년	5	14.3

- 우리사주조합 설립기업의 대조군으로 조사한 우리사주조합 미설립기업 중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총 51개소이며, 이들 기업의 특성은 <부표 7>과 같음

<부표 7> 응답 기업 특성(우리사주조합 미설립기업)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1	100.0
회사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10	19.6
	1990년대	12	23.5
	2000년대	17	33.3
	2010년 이후	12	23.5
근로자 수	50인 미만	26	51.0
	50~100인 미만	8	15.7
	100~200인 미만	11	21.6
	200인 이상	6	11.8
업종	제조업	16	31.4
	서비스업	9	17.6
상장 여부	상장	5	9.8
	비상장	5	9.8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	3.9
	중견기업	3	5.9
	대기업	3	5.9
노동조합 여부	있음	8	15.7
	없음	16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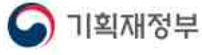
□ 근로자 조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기관의 경영진 조사 시 참여한 응답자를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총 327명의 근로자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들의 특성은 <부표 8>과 같음

<부표 8> 응답자 특성(우리사주조합 가입 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27	100.0
업종	1차 산업	1	0.3
	제조업	205	62.7
	서비스업	121	37.0
상장 여부	상장	174	53.2
	비상장	153	46.8
법정기업 규모	중소기업	247	75.5
	중견기업	59	18.0
	대기업	21	6.4
성별	남성	191	58.4
	여성	136	41.6
연령대	20대	41	12.5
	30대	177	54.1
	40대	85	26.0
	50대	24	7.3
직무유형	생산직	10	3.1
	사무직	294	89.9
	영업직	8	2.4
	연구직	11	3.4
	기타	4	1.2
직위	직원	70	21.4
	대리	88	26.9
	과장	107	32.7
	부장	55	16.8
	임원	7	2.1
연간소득 기준 (세전)	2천~4천만원 미만	129	39.4
	4천~8천만원 미만	183	56.0
	8천~1억원 미만	11	3.4
	1억~2억원 미만	4	1.2
주 재산 형성 수단	저축	222	67.9
	직접투자	50	15.3
	간접투자	12	3.7
	부동산투자	28	8.6
	기타	15	4.6

<부록지: 설문지 문항>



ID 

--	--	--	--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평가를 위한 조사**  
- 경영자 조사용(우리사주조합 운영/폐지) -

안녕하십니까.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출연·출자부터 우리사주의 배정 및 인출, 배당 및 양도 등 각 단계에 걸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귀하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중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 04.

<p>&lt;연구기관&gt;</p>	<p>&lt;조사수행기관&gt;</p> <p>(주)리서치앤리서치</p> <p>문의처: 이재영 선임연구원(☎02-3484-3065)</p>
---------------------	------------------------------------------------------------------------------

**I. 회사 현황**

<b>1. 회사 설립연도</b>	_____ 년	
<b>2. 근로자 수</b>	_____ 명	※ <b>근로자 수</b> : 비정규직 중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참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를 의미함
<b>3. 2015년 대비 2019년 근로자 수 증감</b>	① 증가 ( _____ 명) ② 감소 ( _____ 명)	※ <b>근로자 수 증감</b> : 2015년 이후 설립 회사는 설립연도 기준 응답
<b>4. 업종</b>	① 농어업·축산업·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수도·건설 ④ 도소매·음식·숙박    ⑤ 운수·통신    ⑥ 금융·보험 ⑦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⑧ 보건·오락·문화 ⑨ 기타 서비스	
<b>5. 자본금 규모(2019년 기준)</b>	_____ 억원	<b>6. 연간 매출액 (2019년 기준)</b> _____ 억원
<b>7. 주식의 상장·등록 유형</b>	① 상장 기업(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② 비상장 기업	
<b>8. 법정 기업규모</b>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	
<b>9.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b>	① 설립 운영 중 ② 설립 후 폐지 또는 활동 없음 (☞문26으로 이동)	

## II. 우리사주제 운영 평가

※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현재는 폐지되었거나, 활동이 없다면 'IV(문26)'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0. 우리사주제 도입연도 (우리사주조합 최초설립연도)	_____ 년		
11. 우리사주제 도입목적 (3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② 회사구조조정, 분사, 민영화, 적대적M&A방어 관련 고용안정 ③ 기업승계전략 ④ 회사 내부 운영자금 조달 ⑤ 회사 또는 대주주 무상출연, 대응출연 등을 통한 근로복지 ⑥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⑦ 근로자와의 노사관계 개선 ⑧ 기타( _____ )		
12. 우리사주 조합원 수 (2019년 기준)	_____ 명	13. 실제 주식보유 조합원 수	_____ 명
14. 조합이 보유한 주식 수	_____ 주		
15. 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총 발행주식의 약 _____ %		
16. 조합이 보유한 주식 중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의 비중	약 _____ % ※ 가이드: 문15의 '조합 보유지분율' 보다 클 수 없습니다		
17. 전체 우리사주 출연(매입)금 중 조합원이 출연한 자금 비중	전체 출연금의 약 _____ %		
18. 향후 무상으로 우리사주 추가 제공할 계획	① 장기간 내에 제공 예정    ② 단기간(3년 이내) 제공 예정 ③ 없음    ④ 잘 모르겠음		
19.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을 억제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	① 기업의 자금부족 ② 근로자의 단기보유 행태 ③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담 ④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용부담 ⑥ 회사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미미 ⑦ 기타(기재: _____ )		
20.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생산성 기여	① 생산성 매우 증가    ② 생산성 조금 증가 ③ 변화 없음    ④ 생산성 조금 하락    ⑤ 생산성 매우하락		
21.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개선 기여	① 노사관계 매우 개선    ② 노사관계 조금 개선 ③ 변화 없음    ④ 노사관계 조금 악화    ⑤ 노사관계 매우 악화		
22. 우리사주제도의 직원 근속 기여	① 매우 긍정 기여    ② 조금 긍정 기여 ③ 변화 없음    ④ 조금 악화 기여    ⑤ 매우 악화 기여		
23. 향후 우리사주제도 지속 실시 의향	① 장기간 운영 예정    ② 단기간(3년 이내) 검토 예정 ③ 단기간 이내 폐지 예정    ④ 잘 모르겠음		

### Ⅲ. 노사관계 실태

24. 노동조합여부	① 있다 (☞ 문23-1로 이동)	② 없다 (☞ 문25로 이동)
------------	--------------------	------------------

24-1. 결성년도 : \_\_\_\_\_ 년

24-2. 노조원 수 : \_\_\_\_\_ 명

24-3. 상급단체 : ① 한국노총                      ② 민주노총                      ③ 미가맹

25. 평소 노사분규(노사분쟁, 노사갈등)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평가
----------------------------------------

25-1. 노동조합 : ① 적극적                      ② 보통                      ③ 소극적

25-2. 근로자 : ① 적극적                      ② 보통                      ③ 소극적

25-3. 경영자 : ① 적극적                      ② 보통                      ③ 소극적

※ 아래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현재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 Ⅳ. 우리사주조합 폐지/중단 한 경우

26. 우리사주조합 설립연도	_____ 년	27. 폐지연도	_____ 년
28. 최초 도입목적 (3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② 회사구조조정, 분사, 민영화, 적대적M&A방어 관련 고용안정 ③ 기업승계전략 ④ 회사 내부 운영자금 조달 ⑤ 회사 또는 대주주 무상출연, 대응출연 등을 통한 근로복지 ⑥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⑦ 근로자와의 노사관계 개선 ⑧ 기타 (기재: _____ )		
29. 폐지·미활동 사유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최초 도입 목적 달성 ② 최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발생 (부정적 영향: _____ )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무관심 ④ 기타 (기재: _____ )		
30. 향후 우리사주제도 제도입 의향	① 장기간 내에 도입 검토 예정 ② 단기간(3년 이내) 내에 검토 예정 ③ 도입 검토 예정 없음 ④ 잘 모르겠음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평가를 위한 조사**  
**- 경영자 조사용(우리사주조합 미설립) -**

안녕하십니까.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출연·출자부터 우리사주의 배정 및 인출, 배당 및 양도 등 각 단계에 걸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귀하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 04.

<p>&lt;연구기관&gt;</p> <p><b>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b>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p>	<p>&lt;조사수행기관&gt;</p> <p>(주)리서치앤리서치</p> <p>문의처: 이재영 선임연구원(☎02-3484-3065)</p>
----------------------------------------------------------------------------------------	------------------------------------------------------------------------------

**I. 회사 현황**

<b>1. 회사 설립연도</b>	_____ 년
<b>2. 근로자 수</b>	_____ 명 <small>※ 비정규직 중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를 의미함</small>
<b>3. 업종</b>	① 농어업·축산업·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수도·건설 ④ 도소매·음식·숙박    ⑤ 운수·통신    ⑥ 금융·보험 ⑦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⑧ 보건·오락·문화 ⑨ 기타 서비스
<b>4. 주식의 상장·등록 유형</b>	① 상장 기업(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② 비상장 기업
<b>5. 법정 기업규모</b>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
<b>6.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b>	① 미설립 ② 설립 운영 또는 폐지/중단 (☞우리사주 운영 설문으로 이동)
<b>7. 노동조합여부</b>	① 있음    ② 없음

## II. 우리사주조사 미설립 운영 실태

<b>8. 우리사주제도 인지 여부</b>	① 잘 알고 있음 ② 인지하고 있지만 깊은 이해는 없음 ③ 잘 모름
<b>9. 우리사주조합 미설립 사유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b>	① 기업의 자금부족 ② 주주가치 회식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③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용부담 ④ 회사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미미 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경영진의 선호도가 낮아서 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가 낮아서 ⑦ 노사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⑧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⑨ 기타 (기재: _____ )
<b>10. 향후 우리사주조합 설립 의향</b>	① 장기간 내에 설립 검토 ② 단기간(3년 이내) 내에 설립 검토 ③ 설립 의향 없음 ④ 잘 모르겠음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개인부담으로 취득
- ② 회사부담으로 취득
- ③ 개인과 회사부담 둘 다 해당(근로자, 회사의 공동출연 방식 포함)
- ④ 취득 경험 없음(☞ 문10 으로 이동)

4. 귀하께서 우리사주를 취득하신 방법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회사의 무상출연                      ② 우선배정                      ③ 퇴직자 주식인수
- ④ 회사로부터의 매입                      ⑤ 대주주로부터의 매입                      ⑥ 시장매입

※ 용어설명	
① 회사의 무상출연:	회사가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② 우선배정:	유상증자시 일정 비율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
③ 퇴직자 주식인수: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에 여전히 근무하는 근로자가 인수하는 형태
④ 회사로부터의 매입:	근로자가 회사보유 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주당 가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⑤ 대주주로부터의 매입:	근로자가 대주주보유 지분 중 일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주당 가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⑥ 시장매입:	근로자가 주식 거래시장에서 유상으로 시장가격에 매입하는 경우

5. 귀하께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위응답)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

- ① 재산형성                      ② 경영참여                      ③ 회사의 압력
- ④ 일자리 보전                      ⑤ 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인수                      ⑥ 절세(세제혜택)
- ⑦ 기타(기재: \_\_\_\_\_ )

6.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적인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 문6-1 로 이동)
③ 2~4년 미만    ④ 4~6년 미만    ⑤ 6년 이상	(☞ 문7로 이동)

6-1. 장기간 동안 우리사주를 보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추가불안                      ② 목표 수익률 달성                      ③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낮아서
- ④ 퇴직 또는 이직                      ⑤ 조합 설립연도 또는 입사연도가 2년 미만
- ⑥ 기타(기재: \_\_\_\_\_ )

7. 귀하가 지금까지 우리사주에 투자했던 총 누적 금액은 약 얼마입니까?

※ 100 만원어치 매입 후 매도하고 다시 100 만원어치 매입했다면 누적 금액은 200 만원이 됩니다.

※ 100% 회사부담으로 취득하였으면, "0" 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_\_\_\_\_ ) 만원

8.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가 다른 저축이나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수단에 비해 귀하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됐음                      ② 도움이 안됐음                      ③ 유사한 수준
- ④ 도움이 됐음                              ⑤ 크게 도움이 됐음

9. 귀하는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보거나 들어는 봤다
- ④ 전혀 모른다(☞DQ1로 이동)

10. 귀하는 아래의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의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세제혜택 경험은 제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 주세요.

	과세특례제도 인지도				세제혜택 경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있다	없다
1) 출연시 소득공제(과세이연)	①	②	④	⑤	①	⑤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	④	⑤	①	⑤
3) 우리사주 취득·배정시 비과세	①	②	④	⑤	①	⑤
4) 배당소득 비과세	①	②	④	⑤	①	⑤
5) 인출시 비과세	①	②	④	⑤	①	⑤
6) 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①	②	④	⑤	①	⑤

11. 귀하는 이러한 과세특례제도의 세금 감면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제혜택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과세특례제도 기여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1) 출연시 소득공제(과세이연)	①	②	④	⑤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	④	⑤
3) 우리사주 취득·배정시 비과세	①	②	④	⑤
4) 배당소득 비과세	①	②	④	⑤
5) 인출시 비과세	①	②	④	⑤
6) 퇴직으로 양도 시 비과세	①	②	④	⑤

11-1. (문11에서 하나라도 ① 또는 ②에 답하신 경우)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조합 도입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 ②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 ③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우리사주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 ④ 기타(기재: \_\_\_\_\_ )

12.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연·출자 단계의 지원 강화
- ② 보유단계의 배당소득 비과세
- ③ 인출시 비과세
- ④ 퇴직 양도 시 비과세
- ⑤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거래 활성화
- ⑥ 기타(기재: \_\_\_\_\_ )

13. 그렇다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 이외에 어떠한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회사 또는 대주주의 무상출연 확대
- ② 회사 또는 대주주의 대응출연 확대
- ③ 경영참여기회 확대
- ④ 노사협력 문화 개선
- ⑤ 기타 (기재: \_\_\_\_\_ )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업종	① 농어업·축산업·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수도·건설 ④ 도소매·음식·숙박 ⑤ 운수·통신 ⑥ 금융·보험 ⑦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⑧ 보건·오락·문화 ⑨ 기타 서비스
DQ2. 회사 주식의 상장 등록 유형	① 상장 기업(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② 비상장 기업
DQ3. 기업규모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DQ4.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DQ5.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DQ6. 직무 유형	① 생산직 ② 사무직 ③ 영업직 ④ 연구직 ⑤ 기타
DQ7. 직위	① 직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부장 ⑤ 임원
DQ8. 연간소득수준(세전기준)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4천만원 미만 ③ 4천만원~8천만원 미만 ④ 8천만원~1억원 미만 ⑤ 1억원~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DQ9. 근로소득 이외의 주된 재산형성 수단	① 은행 적금 등 저축 ② 일반 주식·채권 등 직접투자 ③ 펀드 등 간접투자 ④ 부동산 투자 ⑤ 기타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